

월간

재정포럼

2024. November
Vol.341

11



권두칼럼

모두에게 공평한 국민연금 개혁
| 전병목

현안분석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
| 홍병진

특집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업적
| 강신혁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법인 대체 최저한세
(CAMT) 관련 제안 규정 발표 외

Kipf

재정포럼

2024.11. Vol.341

월간 재정포럼 2024년 11월호 통권 제341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 02 모두에게 공평한 국민연금 개혁
| 전병목

현안분석

- 08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
| 홍병진

특집

- 30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업적
| 강신혁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54 미국 - 법인 대체 최저한세(CAMT) 관련 제안 규정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국민연금 개혁



전병목
IBK기업은행
감사

들어가며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고 정부의 개혁방향도 제시되었다. 재정계산 결과는 제도의 재정안정성이 이미 심각히 훼손된 상태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빠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응한 개혁방향의 모색에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재정안정성과 소득보장 중 어느 기능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재정안정성에 중점을 둔 주장은 기여-급여구조 안정화에 중심을 두는 반면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주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정부의 개혁방향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절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에서 특정 기능에 중점을 두기보다, 제도가 추구하여야 할 일반적 원칙들을 바탕으로 그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들에 기반한다면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로의 부담 전가는 줄여야

세대 간 재분배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가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동의도 없이 그들의 부담을 계속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세대의 전반적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빨리 추진하여야 한다. 개혁을 연기함으로써 인한 미래세대의 비용 증가가 상당히 때문이다. 제4차 재

정추계(2018년)와 제5차 재정추계(2023년) 결과에 따르면 2080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¹⁾이 29.5%에서 34.9%로 5.4%p 높아졌다. 개혁을 회피함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높으므로 빨리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연금개혁 연기의 비용이 크게 높아진 현 시점에서 기여-급여 구조의 정상화는 공평성의 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세대 간 부담은 더 공평해져야

세대 간 재분배를 개선하는 방안의 모색에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부담구조도 공평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해 지출을 당해 기여금(또는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는 부과방식 전환은 모든 부담을 미래 근로세대에 넘기는 방안으로, 공평하지 못하다. 공평한 부담구조로의 전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기여-급여구조이다. 즉 근로기간의 기여금액이 은퇴 이후 예상 연금급여와 유사하도록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기여금액 대비 약 2배의 급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급여의 약속은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후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기여-급여 구조의 정상화는 가입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기에 미루어 온 것이다. 연금개혁 연기의 비용이 크게 높아진 현 시점에서 기여-급여 구조의 정상화는 공평성의 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미 제도가 약속한 급여의 조달방법이다.²⁾ 기여-급여구조의 조정은 개혁 이후 가입부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확정된 급여를 공평하게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연히 그 부담은 미래세대만이 아닌 은퇴 세대, 근로세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은퇴세대는 자신의 급여조정을 통해 현 가입자들과 미래세대는 자신의 기여금 또는 다른 부담 증가를 통해 나누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의 책임은 재원조달 측면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국가재정은 결국 특정 세대들에 조세를 부과하여 조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논의하는 것은 세대 간 공평성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어떤 조달 수단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평성 논의를 모호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이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당해 연금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2) 엄밀하게는 미적립부채에 대한 조달방법이다.

저소득자들은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거나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는
그 효과가 낮은
방안이다.

세 번째는 미래 상황 변화에 따른 부담구조의 변화이다. 가장 현실적인 요인들은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이다. 저출산은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약화시키고 평균수명 연장은 미래 지출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우리나라는 진행속도가 빨라 그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연금제도의 기여-급여구조가 세대 간 공평성의 관점에서 구축되었다면 이에 따른 총기여액과 총급여액을 유지하는 개혁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연금급여 자동조정장치는 공평성의 관점에 부합하는 방안이다.

빈곤하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야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능은 소득보장이다. 더이상 근로할 수 없는 은퇴시기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이 기능은 다른 노후소득 수단이 없는 저소득자에 더욱 중요하다. 국민연금제도도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급여산정 시 소득수준에 따른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전체 평균소득보다 낮은 소득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기준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그러나 저소득자들은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거나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³⁾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는 그 효과가 낮은 방안이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자들을 국민연금제도가 잘 조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 소득대체율에 상응하는 기여율⁴⁾을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성 낮은 방안을 위해 더 높은 기여율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확대가 효과적이다. 기초연금제도를 저소득층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 비가입자도 포함하면서 높아지는 빈곤갭⁵⁾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나가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제도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

3) 근로 시 소득 대비 연금급여의 비율

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균형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0%에 19.7%이다 (뉴스스, 「국민연금가입자 수, 올 상반기에만 33만명 줄어.. 개혁 서둘러야», 2024. 10. 3.)

5) 빈곤선과 실제소득의 격차를 의미하며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빈곤갭은 32.3% (2020)에서 35.3%(2022)로 증가 추세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다. 본고에서는 공평성의 관점에서 제도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공평성을 위해서는 시급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며,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 근로세대와 은퇴세대 모두가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또한 수용가능한 부담수준에서 저소득층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중심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무엇이 더 공평한 제도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공평성을 위해서는
시급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며,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 근로세대와
은퇴세대 모두가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현안분석

+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

홍병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bjhong@kipf.re.kr

1. 서론

최근 각국 정부는 자국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기금(國家集成電路產業投資基金)”¹⁾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 제정²⁾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European Chips Act” 승인³⁾ 등 경쟁적으로 투자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면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전쟁과 같다. 이러한 경쟁은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업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는 경제 성장 동력의 유지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이

- 1)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2014년 1기 기금에 1,387억위안(약 25조원)을 조성하였고, 2019년 2기에 2,041억위안(약 37조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 중인 3기에는 3,440억위안(약 63조원) 수준의 기금이 추가로 조성되었다(출처: CNN Business, <https://edition.cnn.com/2024/05/27/tech/china-semiconductor-investment-fund-intl-hnk/index.html>, 검색일자: 2024. 8. 31.).
- 2) 해당 정책을 통하여 미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520억달러를 투입하여 반도체 제조 시설의 건설과 확장을 지원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출처: <https://www.commerce.gov/tags/chips-and-science-act>, 검색일자: 2024. 8. 30.).
- 3) 2023년 7월에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European Chips Act”는 2030년까지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30억유로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할 계획을 밝혔다(출처: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chips-act_en, 검색일자: 2024. 8. 25.).

해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단순히 국내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⁵⁾ 또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효과의 고려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⁶⁾ 이러한 정부 지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⁷⁾

다만,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원 대상과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는 과정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더욱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노력이다.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며, 불필요한 분야에 자원이 쏠리는 것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자원 배분 문제는 국가의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투자 촉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비록 정책 목적이 기업투자 촉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 과거의 연구나 보고서에서는 주로 특정 제도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포괄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경우에도 기업투자 촉진을 정책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만을 살펴봐왔다.⁹⁾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들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지원제도에서 저자가 생각하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며 본고를 마무리한다.

4) Aghion and Howitt(1992); Stiglitz(1996); Rodrik(2008); 김상현(2010); 최현이·조근태(2023) 등
 5) 한 예로, 해운업에서 세계 특례제도라고 볼 수 있는 ‘톤세(Tonnage tax)’가 있다.
 6) Coase(1960); Akerlof(1970); Stiglitz(1989, 1996); 권혁상·황두희(2019); 안준모(2022) 등
 7)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때 이로 인한 피해는 기업의 생산비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8) 일반적으로 지원 방식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직접지원으로 분류하고, 조세 지원을 간접지원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지원제도가 ‘기업투자 증대’를 목표로 삼을 경우, ‘직접적인’ 지원제도로 분류하였으며, 정책 목표에 ‘기업투자 증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연관성이 높은 경우 ‘간접적인’ 지원제도로 분류하였다.
 9)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와 함께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 평가가 있으며,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특정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중복지원에 대한 배제를 위해 유사제도들도 함께 조사하나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번 장에서는 기업투자에 관한 제도들을 살펴본다. 기업투자 촉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비록 정책 목적이 기업투자 촉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II. 기업투자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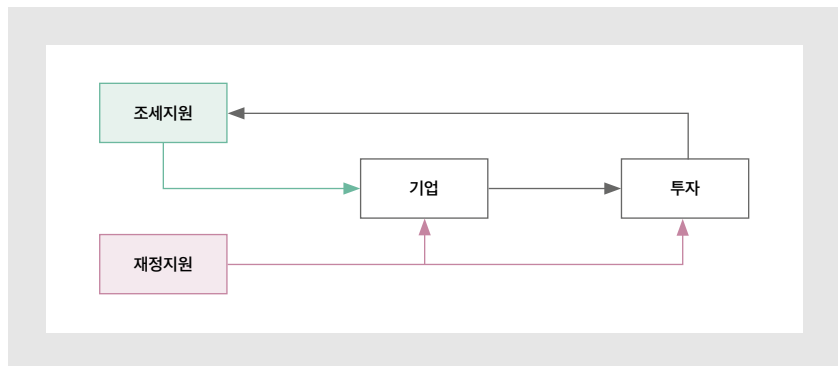
이번 장에서는 기업투자에 관한 제도들을 살펴본다. 기업투자 촉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비록 정책 목적이 기업투자 촉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¹⁰⁾

1. 직접 지원제도

직접 지원제도는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먼저, 조세지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후 일정 기간의 투자 금액 또는 투자 증가분을 근거로 이에 비례한 금액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재정지원은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거나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같은 특정 목표를 가지고 투자할 때 정부에서 해당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을 취한다.

조세지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제도 등이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이다. 가속상각제도는 각종 사업용 자산에 대

[그림 1] 기업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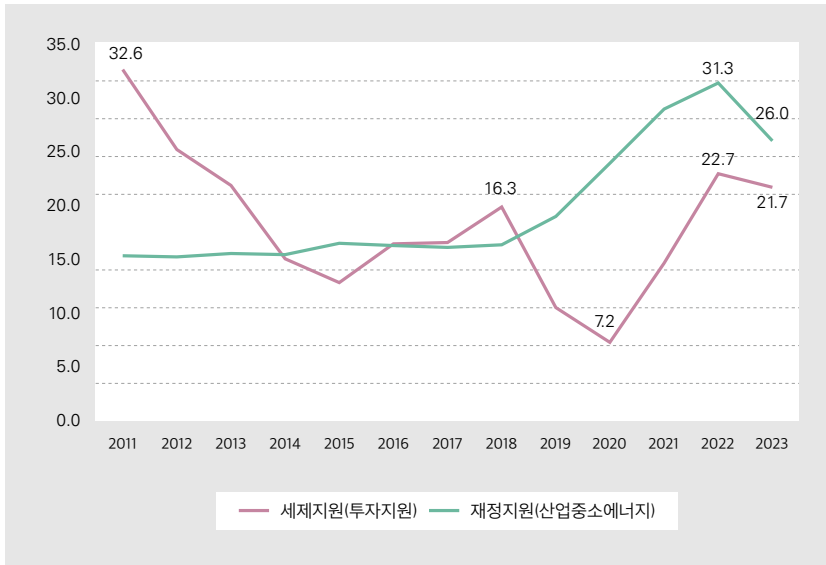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10)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지원방식에 따라 직접지원(재정지원)과 간접지원(세제지원)으로 분류하는 것과 다르게, 정책 목표에 기업투자 증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림 2] 기업투자 생태계 관련 제도 현황

(단위: 조원)



[그림 2]에서는 기업투자에 대한 직접 지원 금액의 추이를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주: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분류에서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속하는 지출의 합이며, 재정지원의 경우 예산상 재원 배분을 기준(12대 분야)으로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기업투자와 가장 관련이 높다고 고려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출처: 국세통계연보 및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해 감가상각 기간을 줄여줌으로써 투자의 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이다.¹¹⁾ 재정지원의 경우, 크게 정책자금, 인프라지원, 서비스지원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자금에는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융자 및 보증 지원 등이 있고, 인프라지원에는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장소 및 장비 지원이 이에 속한다. 서비스지원은 투자와 관련된 행정지원, 법률지원 등이 있다.

[그림 2]에서는 기업투자에 대한 직접지원 금액의 추이를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먼저, 지원 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조세지원은 2011년 32.6조원 수준으로 재정지원 대비 약 2배가 넘는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이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지원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에 재정지원은 완만한 상승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조세지원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파악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에 일몰되었고, 다른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의 경우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세액공제율에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시

11) 즉, 감가상각의 인정 금액을 늘려서 투자에 대한 자금 회수를 보다 빠르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가 기업투자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효과성이 있다고 분석된 생산 및 구매 관련 보조금, 덤핑방지관세, 자본시장 지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에 기업투자의 금액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변화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폐지로 인하여 2011년의 투자분에 대한 이월 세액공제분의 해소에 따른 감소로 이해할 수 있다.¹²⁾ 이후의 변화도 관련 제도들의 세액공제율, 대상요건 등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반면 거시적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이 경제 충격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적 충격 시 재정지원이 먼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¹³⁾

2. 간접 지원제도

기업투자 모형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Q이론에 따르면 기업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빈-q 변수이며, 이는 자본 1단위 증가에 따른 기업의 실질적 가치 변화를 의미한다.¹⁴⁾ 이때 기업의 실질적 가치 변화는 자본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미래 기대 이익과 연관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간접적으로 기업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가 기업투자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효과성이 있다고 분석된 생산 및 구매 관련 보조금, 덤핑방지관세, 자본시장 지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¹⁵⁾ 첫째, 재화의 생산과 구매에 관련된 보조금 정책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시장수준 이하의 가격을 유지시키거나 생산자에게 시장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소비자 혹은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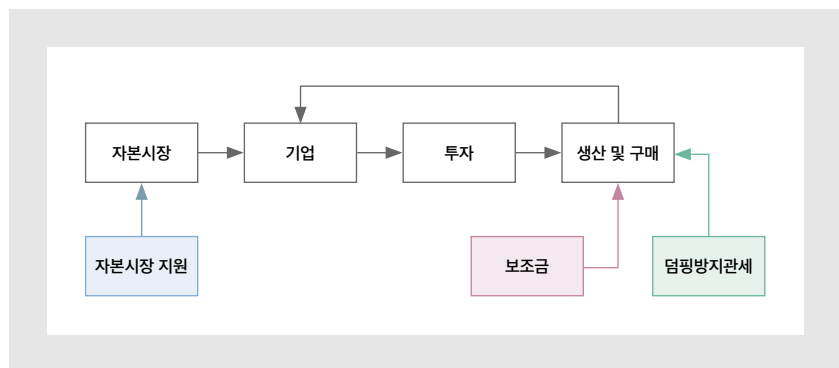
12) 이와 동시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는데 도입 초기에는 사실상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 보다 낮은 수준의 세액공제율과 고용요건의 추가로 수혜 대상을 축소하였다.

13) 이는 조세지원은 투자 이후에 지원을 받는 반면 재정지원은 투자 이전에 지원을 받으며, 조세지원은 투자금액과 비례한 반면 재정지원은 투자금액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4) Hayashi(1982)

15) Bloom, Draca, and Reenen(2016); Avsar and Sevnec(2019); Pierce(2013); Bown(2008); Landsman, Pan and Stubben(2024) 등을 참조

[그림 3] 기업투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제도



출처: 저자 작성

산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지원으로 정의된다.¹⁶⁾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보조금의 예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전기차와 일반 자동차 간 가격 차액 보조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보급이 2017년 2만 5,108대 수준에서 2023년 54만 3,900대 수준으로 7년 사이에 20배를 웃도는 성장을 보였다.¹⁷⁾ 이러한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관련 기업투자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¹⁸⁾

다음으로, 덤핑방지관세 또한 기업의 이익을 보조하는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는 해외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다.¹⁹⁾ 이 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덤핑 여부는 수입물품의 정상가격과 국내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덤핑으로 인한 피해와 그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덤핑 방지 조사는 덤핑 물품의 수입 사실, 국내 동종 산업의 피해 여부, 덤핑 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다.²⁰⁾ 특히,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수입국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여러 지원제도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였는지 검토한다.²¹⁾ 덤핑방지관세는 196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현재 GATT 및 WTO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²²⁾ 1995년에는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업무가 관세청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현재 반덤핑 조사는 총 196건이 있었으며, 이 중 151건(약 77.04%)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다. 화학, 종이/목재, 제철/금속, 기계/전자 순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러한 덤핑방지관세 제도는 국내 산업을 지원 및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운용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어 기업의 자국내 투자를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기업투자를 보조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²³⁾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제도들도 기업의 자본 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이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때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이는 결국 기업에 보다 큰 투자 기회(Investment opportunities)를 확보할 수 있다.²⁴⁾ 이에 대한 예시로 선박투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제도들도 기업의 자본 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려할 수 있다.

16) OECD(2006)
 17)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검색 일자: 2024. 8. 10.
 18) 유연홍·김수민(2024)
 19) 정재호·이재민(2013); 정재호·노영예(2020)
 20) 홍병진·노영예(2024)
 21) 일반적으로 「관세법」에서는 이렇게 발생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특별한 시장 상황’이라고 규정한다.
 22) 1963년 「관세법」 개정시 “부당염매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도 착가격과 부당염매가격과의 차액”을 가산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3년과 1986년에 각각 GATT 반덤핑협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3) Bloom, Draca, and Reenen(2016); Avsar and Sevnice(2019); Pierce(2013); Bown(2008)
 24) Landsman, Pan, and Stubben(2024)

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고위험고수의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벤처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정보 비대칭으로 야기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여 자본시장의 공급자인 기업들의 자본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낮아진 자본 비용을 통해 보다 큰 투자 기회의 확보와 이로 인한 기업투자 증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Ⅲ. 쟁점 및 제안

1. 중복지원의 가능성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한정성과 기회비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복지원²⁵⁾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다른 필요한 분야에 자원이 충분히 할당되지 못하게 하고, 전체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²⁶⁾ 또한, 정책 평가 시 중복지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 효과 식별의 어려움은 정책 평가의 왜곡 및 부정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저해한다.²⁸⁾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은 기업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이중 수혜금지(denial of double benefits)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보조금에 경우에도 수혜 중복(duplication of benefits)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비용 또는 사업에 하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²⁹⁾ 조세지원과 재정지원 사이에도 각각의 법안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항목들을 열거하여 지원 방식 간 중복 지원을 방지한다.³⁰⁾ 일본에 경우에도 지원 방식 내 그리고 지원 방식 간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조항을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³¹⁾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이중 수혜 금지는 단독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³²⁾

우리나라도 이러한 중복 방지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용하고

25) 여기서 중복지원은 조세지원, 재정지원 등이 동시에 패키지로 지원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원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다른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정지원을 받아 특정 자산에 투자를 한 후에 해당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제도의 혜택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지원 수준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정책 대상자와 정책 설계자 모두 투자에 따른 기대 손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

26) 출처: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s://www.gao.gov/products/gao-11-318sp>, 검색일자: 2024. 8. 29.

27) 출처: OECD(2011)

28) VanLandingham, G., Silloway, T., Chang, V., Klein, M., White, D., Hoey, A., & Davies, E.(2014)

29) IRS Section 46-48D

30) IRS § 551· § 946· § 1016,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

31) 출처: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41.htm>, 검색일자: 2024. 8. 30.

32) 영국: Capital Allowances Act 2001 Section 7, 8, 52A, 캐나다: Income Tax Act Subsection 127, 호주: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의 Section 8-10.

있다. 조세지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에서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각 사업의 지원 요건에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중복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주요국의 지원 체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일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³³⁾

가. 조세지원 내 중복 가능성

기업투자 지원제도에는 크게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와 투자자산 금액에 비례한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제24조·제26조의2)로 나눌 수 있다. 현재의 법인세제하에서는 동일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제도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중복지원 배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2항에서 투자 자산 금액에 비례한 세액공제 제도들 사이의 중복 수혜에 대한 방지 조항만 명시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2항, 법률 제19990호

또한, 투자자산 금액에 비례한 세액공제 제도에서도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를 받은 투자자산에 대한 배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에 인정되는 대상 시설에 관한 내용만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1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전히 투자 대상 시설에 대한 정의만 명시되어 있다. 제12항에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한정성과 기회비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복지원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다른 필요한 분야에 자원이 충분히 할당되지 못하게 하고, 전체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33) 물론, 지원의 총합이 적절한 수준이라면 중복지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투입된 지원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지원마다 지원 주체(부처)가 상이해 이들 사이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제도를 배제하지 않는다.

서는 세액공제신청서 의무제출을 언급하고 있고 해당 서류는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제2호의 별지 제1호 서식이며, 이때 함께 작성하는 투자자산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부칙)의 작성방법 8번째 안내사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대한 언급만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제도를 배제하지 않는다.

<p>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p> <p>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7조의2)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과 관련된 내용</p> <p>⑪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p> <p>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법 제2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1))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투자자산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의 작성방법</p> <p>8.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차비용을 지급받거나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차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p>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1항,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경우에도 제24조 내에는 예외 경우에 대해서는 오로지 해당 자산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제3항)만이 언급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및 세액공제액 산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제13항에서 세액공제신청서에 대한 의무사항을 언급하면서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호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소개하고 있고 해당 서식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 항목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서도 결국 제9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를 안내하고 있어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제도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제도들 역시 투자자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의 중복 수혜를 배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과 그와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제도들 역시 투자자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의 중복 수혜를 배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과 그와 관련된 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p> <p>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으로 정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2 중 감가상각의 의제와 관련된 내용</p> <p>⑧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p>
<p>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p> <p>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에 대한 손금산입특례의 적용 시 예외 사항 중 하나로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인 감가상각의 의제를 준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이러한 기업투자 지원에 관한 가속상각제도와 세액공제 사이의 중복 수혜는 주요국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인세에 대한 면제나 감면을 받았을 때 추후 미상각잔액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세법」 제23조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한도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기엔 관련이 없으며, 세액공제 또한 해당 사항이 아니다.^{34), 35)} 이와 같이, 다른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4)에서도 투자자산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의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투자 지원에 관한 가속상각제도와 세액공제 사이의 중복 수혜는 주요국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2024년도 기준 당해연도에 새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2022년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인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만 해당되며, 해당 제도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을 종료하는 것을 제안하였다.³⁶⁾ 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손금산입 특례제도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세액공제와의 중복수혜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34) 이는 감가상각의 손금산입이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제도이다.
 35) 세액공제가 대상이 아닌 것은 법인세 집행기준 23-30-2, 법인22601-40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이에 해당하는 자산은 에너지 절약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정리되어 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보일러, 발전시설, 냉각기, 전력시설, 고효율인증자재,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등), 산·재생에너지보급 시설, 그 밖의 에너지절약 시설을 포함한다.
 37)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의 도입 시기 전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확인하여도 동일하다.

나. 지원 방식 간 중복지원

앞서 살펴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투자를 진행할 때 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총투자자산 금액에서 차감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으로 투자를 진행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상각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³⁷⁾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서 열거하는 재정사업의 범위가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 관련 정책금융을 의미하기에 정책자금을 통해 투자가 발생한 금액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상각 특례제도의 중복 수혜 금액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 역시 2024년도 기준 당해연도에 새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만 해당되며, 해당 제도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해당 제도의 적용을 올해 안에 종료하는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부터는 새로운 정책자금에 따른 중복 수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국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한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 법률 제19990호

다. 소결

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중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배제가 되지만 상각 특례제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서는 상각 특례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간결성과 일관성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해당 제도가 중복 수혜 배제에 고려가 되지 않는 근거가 부재하고,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상각 특례제도들이 새로 도입이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도 해당 제도를 포함을 시켜 앞서 논의된 중복 가능성을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서는 중복 배제의 대상이 되는 제도들을

특히, 해당 제도가 중복 수혜 배제에 고려가 되지 않는 근거가 부재하고,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상각 특례제도들이 새로 도입이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도 해당 제도를 포함을 시켜 앞서 논의된 중복 가능성을 제외하는 것을 제안한다.

정책 대상의 중복으로 인해 제도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이와는 반대로 국내의 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모두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열거주의식 접근은 다른 제도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 대상, 방식 등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세법과 같이 포괄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에서 구체적인 제도를 나열하지 않고 관련된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대상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기대효과 상충(相衝)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을 운용할 때, 제도 간 정책 목표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이 유사하게 설정되어 제도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예시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이와는 반대로 국내의 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투자) 유도 지원제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이 있다.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국내로 복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준다.³⁸⁾ 해당 제도의 업종 요건은 복귀 전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해야 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일부 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해당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보조금 등의 지원도 파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복귀 보조금,³⁹⁾ 고용보조금,⁴⁰⁾ 스마트공장지원,⁴¹⁾ 금융지원,⁴²⁾ 입지지원, 해외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등 국내 복귀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확한 예산은 확인이 어렵지만 국내복귀 보조금에 대해 2024년 기준 1천억원의 예산을 할당하였다.⁴³⁾ 특히, 2024년 5월 7일 산업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 인정 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38) 제도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를 참조
 39) 지원비율은 최소 11%에서 최대 44%까지 가능하고, 이전비(4억원)를 제공하며, 사업장당 국비 최대 300억 원 한도로 지원
 40)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2년간 지원하며, 최대 100명 한도임
 41) 스마트공장 설립 시 보조금 지원
 42) 시설투자금액의 80~90% 대출 지원 및 운영자금 저리 대출 등
 43) 출처: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9327&pageIndex=1&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05-07&endDate=2024-05-07&srchWord=&period=>, 검색일자: 2024. 8. 20.

요건의 완화,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기업이 보조금 수혜 시 해외투자 제한 규정 폐지 등 사실상 해외사업장의 변화 없이 국내투자 증대만 실시하여도 해당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⁴⁴⁾

나.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투자) 지원제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여러 지원제도가 있으나 지원 내용 중에 ‘해외 투자지원’이 포함된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지사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K-Startup 지원사업이 있다.⁴⁵⁾ 특히, 다음에 소개된 사업의 경우 이미 해외 진출 경험과는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해외지사화사업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이다.⁴⁶⁾ 지원 대상은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며, 해외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산업·지식재산권,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 소재부품장비 등과 같은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선정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원 단계는 진입, 발전, 확장의 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는데 발전과 확장의 단계에서 현지법인 설립지원, 해외 액셀러레이팅⁴⁷⁾·인큐베이팅⁴⁸⁾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⁴⁹⁾ 등을 실시한다. 2024년 지원 예산은 약 297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2024년 기준 K-Startup 지원사업은 예비창업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해외 진출을 돕는 총 23개의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예로,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AI 등 미래 디지털 혁신 보유 기업으로 현지에 합작투자법인 형태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컨설팅, 법률지원을 넘어 파트너 매칭 및 사전 검증 지원, 보조금 지원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K-Startup 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약 1,021억원 수준이다.

다. 소결

지원정책이 만들어진 시점이나 소관과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었으나 기존 제도의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경우 앞의 예시와 같이 정책 목표가 상충되는 제도가 유사한 정책 대상에 대해 동시에 운영될 수 있다. 이는 각 제도의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으며, 이를 기업이 악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때 해당 제도가 정부

지원정책이 만들어진 시점이나 소관과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었으나 기존 제도의 면밀한 검토가 없는 경우 앞의 예시와 같이 정책 목표가 상충되는 제도가 유사한 정책 대상에 대해 동시에 운영될 수 있다.

4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2024. 5. 7. 보도자료, 검색일자: 2024. 8. 19.

45)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있으나, 이는 주로 자국의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46) 출처: <https://www.exportvoucher.com/jisahwa>, 검색일자: 2024. 8. 30.

47) 해외 VC와의 연계해 해외 진출 지원

48)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법률, 회계 등을 지원

49) 해외 투자를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지원, M&A 및 합작투자법인 설립 지원 등

앞서 논의한
쟁점사항들은 정책
구상 및 설계 시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성이 있는
제도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료구축이
절실하다.

의 정책 기조와 기존의 정책들과 충돌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면밀한 검토 이후에도 사안의 긴급성이나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면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예시와 같이 해외 투자 기록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 두 제도에 모두 지원하고 수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정책 목표에 충돌이 발생하는 제도들을 동시에 운용할 때 더욱 세심한 대상 설정 및 자격 요건의 제한이 필요하다.

3. 포괄적 자료 구축의 미비(未備)

앞서 논의한 쟁점사항들은 정책 구상 및 설계 시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성이 있는 제도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료구축이 절실하다. 수많은 정책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분류체계하에서는 관련 제도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정책과 해당 정책의 목표 또는 분류를 일대일로 대응시키기 때문에, 분류체계를 제도 연관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관련도가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여러 제도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때, 정보사용자가 매번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재분류하는 과정을 해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제기하였다. 한 예로, 장우현(2023)은 재정사업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복수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들을 하나의 분류로만 강요하는 기존 정책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하원칙에 따른 정책분류체계 방식을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제 사업들의 사례를 통하여 복수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분류의 교집합 처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고의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투자와 관련된 제도는 정책 목표에 기업투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직접적인 제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간접적인 제도들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결국 제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때 해당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식별을 어렵게 한다. 이는 결국 제도의 유지, 보완, 폐지 결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 제도와 수혜 대상의 식별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우현(2023)에서 제시한 것을 확장 적용하여 조세정책, 재정정책, 규제정책 등에 대한 대부분의 국가 정책에 대한 분류체계를 보다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몇몇의 선진국들은 정책 자료에 대해 핵심키워드를 기준으로 태그화(tagging)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과 연방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을 주축으로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을 계획하여 통합적 정책자료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진 미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자료에 대한 태그화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⁵⁰⁾ 이외에도 최근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와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수의 태그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⁵¹⁾ 이러한 태그화는 관련 자료와의 병합, 관련 제도 검색 등에 유용하게 쓰인다.

제도의 복수 성격을 인정하는 정책 자료에 대한 태그화는 기존의 파악하기 힘들었던 관련 제도에 대한 검색을 손쉽게 한다.⁵²⁾ 정책 목표 또는 분류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금융시장 지원, 관세제도, 각종 보조금 정책들과 기업투자와의 연관성을 제도들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기업, 산업, 비용, 수익, 판매 등)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장우현(2023)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정책의 역할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각 육하원칙 요소에 복수의 키워드를 연결해 놓으면 정책 대상자와 정책 수혜자들을 이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존에 놓치고 있었던 여러 정책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할 때에도 주요한 태그들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정책들의 자료를 병합하여 보다 완결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식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예를 들어, 김빛마로·홍병진·홍용기(2023)의 연구에서 기업 재무 자료와 국제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투자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였는데, 가속상각제도의 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할 때에도
주요한 태그들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정책들의
자료를 병합하여
보다 완결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식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0) 출처: <https://strategy.data.gov/proof-points/2019/05/28/improving-data-access-and-data-management-artificial-intelligence-generated-metadata-tags-at-nasa>, 검색일자: 2024. 8. 10.

51) 출처: <https://www.c4isrnet.com/cyber/2024/07/08/pentagon-zero-trust-office-aims-to-start-data-tagging-labeling-in-24>, 검색일자: 2024. 8. 31.

52) 이러한 태그화를 통한 자료의 저장, 병합, 관리 등은 이미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진 논의이다.

53)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태그화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자료가 결합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베이스화가 되어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간결성 제고는
앞서 쟁점사항으로
언급하였던 중복지원의
문제, 정책 대상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기대효과 상충,
포괄적 자료 구축의
부재가 발생하게 된
제도의 복잡성과
파편화를 해소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과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의 효과로 추정된 수준보다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앞서 논의한 중복 가능성이 있는 지원제도들과의 병합이 불가능하여, 해당 효과가 순수한 가속상각 제도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들에 의한 효과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일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행정자료의 태그화를 통해 유관 정책들의 자료 병합이 사용자에게 의해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순효과를 식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추후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설계, 수립, 폐지 등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둔필승총(鈍筆勝聰). 둔한 기록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는 의미이며,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긴 말이다. 무엇인가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기록이 정보가 되고 의미가 있으려면 명확한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한다. 팔만대장경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유도 자료의 방대한 양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의 대장경 가운데 체재와 내용도 중복 없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⁵⁴⁾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정책들을 살펴보면 기록의 측면에서 매우 충실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 지원제도는 최대한 기존의 법과 조항들을 남겨두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과거의 법안 제안자의 기록을 남겨두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 호사유피인사유명(虎死留皮人死留名)이 절로 생각난다.

다만, 이러한 기록이 의미가 있으려면 해당 법과 조항의 이해당사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당 정책 활용 여부의 장단점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투자 지원정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정책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도 용이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간결화는 정책 분석의 측면에서도 특정 제도의 식별이 수월하게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간결성 제고는 앞서 쟁점사항으로 언급하였던 중복지원의 문제, 정책 대상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5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ripitaka_Koreana, 검색일자: 2024. 9. 1.

기대효과와 상충, 포괄적 자료 구축의 부재가 발생하게 된 제도의 복잡성과 파편화를 해소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지원정책들은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업에게 더 많은 선택을 요구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심층평가에서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용의 어려움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의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고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소비되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부담을 적어도 지원정책에서만큼은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고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소비되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부담을 적어도 지원정책에서만큼은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

55) 예를 들어, 홍병진·고지현 (20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정책 대상자들이 해당 제도가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있다고 65.2%가 응답하였으나, 약 80%가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참고문헌

- 김빛마로·홍병진·홍용기,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12.
- 김상헌,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48(3), 2010, pp. 59~82.
- 권혁상·황두희, 「정부 R&D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2(6), 2019, pp. 1107~1137.
- 안준모, 「정부의 기술혁신 재정지원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연구」, 『기술혁신연구』, 30(1), 2022, pp. 57~88.
- 유연홍·김수민, 『[미래차]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성장하는 한국 미래차 산업』, 산업포커스, KOTRA, 2024. 2.
- 장우현,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간 정책분류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12.
- 정재호·노영예, 『주요국의 반덤핑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및 관련 사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최현이·조근태,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의 상호관계 실증분석」, 『기술혁신연구』, 31(2), 2023, pp. 59~82.
- 홍병진·고지현,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7)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홍병진·노영예, 『미국의 최근 무역구제 관련 규정개정 내용 및 우리나라에의 함의(PMS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Aghion, P., & Howitt, P.,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60(2), 1992, pp. 323~351.
- Akerlof, G. A.,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1970, pp. 488~500.
- Avsar, V., & Sevinc, N., "Does antidumping cause investment and R&D?: Evidence from Turkey," *Applied Economics*, 51(52), 2019, pp. 5674~5682.
- Bloom, N., Draca, M., & Van Reenen, J., "Trade induced technical change? The impact of Chinese imports on innovation, IT and productivity,"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3(1), 2016, pp. 87~117.

Bown, C. P., "The WTO and antidumping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s & Politics*, 20(2), 2008, pp. 255~288.

Coase, R.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960, pp. 1~44.

Hayashi, F., "Tobin's marginal q and average q: A neoclassical interpretation,"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982, pp. 213~224.

Landsman, W., Pan, J., & Stubben, S., "Equity market fragmentation and capital investment efficiency," *Management Science*, 70(7), 2024, pp. 4381~4406.

OECD, "Subsidy refor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aspects," 2006.

_____, "Strategies, Tools and Capacities for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Simplification," 2011.

Pierce, J. R., & Aguinis, H., "The too-much-of-a-good-thing effect in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39(2), 2013, pp. 313~338.

Rodrik, D., "Industrial polic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In P. Lin & P. Pleskovic (Eds.),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2005: Lessons of Experience*, Washington, DC: World Bank, 2008, pp. 569~597.

Stiglitz, J. E., "Markets, market failures,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9(2), 1989, pp. 197~203.

Stiglitz, J. E., "Some lessons from the East Asian miracle,"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1(2), 1996, pp. 151~177.

VanLandingham, G., Silloway, T., Chang, V., Klein, M., White, D., Hoey, A., & Davies, E., "Evidence-Based Policymaking A guide for effective government,"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각 연도

_____, 「법인세법 시행령」 각 연도

_____, 「조세특례제한법」 각 연도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각 연도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법인세법 집행기준 23-30-2」, 검색일자: 2024. 11. 4.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각 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2024. 5. 7.
 보도자료, 검색일자: 2024. 8. 19.

조세심판원, 「법인22601-400」, 1990. 2. 7.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검색일자: 2024. 8. 10.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Section 46」, 각 연도

_____, 「Section 47」, 각 연도

_____, 「Section 48」, 각 연도

_____,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 각 연도

미국 상무부, 「CHIPS and Science Act」, 홈페이지: <https://www.commerce.gov/tags/chips-and-science-act>, 검색일자: 2024. 8. 30.

EU 위원회, 「European Chips Act」, 홈페이지: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chips-act_en, 검색일자: 2024. 8. 25.

일본 National Tax Agency, 「No.5441」, 홈페이지: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41.htm>, 검색일자: 2024. 8. 30.

영국 국세청, 「Capital Allowances Act 2001 Section 7, 8, 52A」, 검색일자: 2024. 8. 30.

캐나다 국세청, 「Income Tax Act Subsection 127」, 검색일자: 2024. 8. 30.

호주 국세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검색일자: 2024. 8. 30.

CNN Business, <https://edition.cnn.com/2024/05/27/tech/china-semiconductor-investment-fund-intl-hnk/index.html>, 검색일자: 2024. 8. 31.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ttps://www.gao.gov/products/gao-11-318sp>, 검색일자: 2024. 8. 29.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웹사이트, <https://www.exportvoucher.com/jisahwa>, 검색일자: 2024. 8. 30.

U.S. Federal Data Strategy 웹사이트, <https://strategy.data.gov/proof-points/2019/05/28/improving-data-access-and-data-management-artificial-intelligence-generated-metadata-tags-at-nasa>, 검색일자: 2024. 8. 10.

C4ISRNET, <https://www.c4isrnet.com/cyber/2024/07/08/pentagon-zero-trust-office-aims-to-start-data-tagging-labeling-in-24>, 검색일자: 2024. 8. 31.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en.wikipedia.org/wiki/Tripitaka_Koreana, 검색일자: 2024. 9. 1.

특집

+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업적

강신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업적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shinkang@kipf.re.kr

I. 서론

본고에서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¹⁾ 수상자 대런 애쓰모글루(Kamer 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의 연구업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4년 10월 14일,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Kungliga Vetenskaps-Akademien;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은 수상자들의 연구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국가의 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밝힘으로써, 왜 일부 국가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반면 많은 다른 국가들이 그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힌 것을 기려서 위 경제학자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들의 연구를 자세하게 소개함에 앞서서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학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기에 이를 간략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한 마디로 “좋은 제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로 출발한다. 각각의 단어가 경제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경제성장’에서 경제를 살펴보자. 오늘날에는 경제를 국내총생산 혹은 1인당 국민소득 등으로 정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정의하기 전까지 국가의 부

1) 정식 명칭은 스웨덴 국립은행 경제학상(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으로 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대중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노벨경제학상 명칭을 활용하였다.

는 국가 혹은 왕가가 축적한 금은보화 등의 양으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산업혁명과 함께 국가의 부는 생산성, 즉 국가에서 국민들이 생산과 소비 거래를 얼마나 활발히 하는지로 정의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총생산 혹은 국민소득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즉 경제성장이라 함은 국민들의 산출하고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질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아담 스미스 이후에 경제가 정의된 후, 경제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추정하는 방법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산업혁명 당시, 1785~1890년 영국 연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0.5 ~ 1.4% 수준인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²⁾ 2000년 대에도 미국 1인당 GDP 성장률이 약 2%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근대와 오늘날의 경제성장은 유의미하게 크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경제성장을 이해하는 데 흔히 먼저 거론되는 이론은 대학교 거시경제학 교과서에도 다루지는 로버트 솔로(Robert Solow)의 솔로 성장 모형 이론이다. 198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가 제시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자본축적이었다. 저축과 투자가 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면서도 정연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1인당 GDP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술진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를 흔히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외생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솔로 성장 이론은 어떻게 선진국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왜 그들이 점차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차츰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지를 잘 설명하였다. 하지만 고성장 국가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왜 저소득 국가가 저소득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선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였다.³⁾ 즉,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 이유로 밝혀진 질문, “왜 국가 간 번영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솔로 성장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왜 이미 성장한 국가들조차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서 유지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솔로 성장 이론 이후 후속 연구는 어떻게 선진국들이 부분적으로 수확체증,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요소를 가질 수 있는지를 혹은 갖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가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로버트 루카스(Lucas, 1988)와 내생적 기술진보를

2) Crafts and Harley(1992)와 Broadberry, et al.(2015) 등 참조

3)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갖고, 고소득 국가가 낮은 경제성장률로 정착하면서 경제성장을 시작한 저소득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고소득 국가와 유사한 경제성장률을 갖게되는 것을 흔히 수렴 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이는 기술적으로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생산함수가 생산요소가 증가할수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낮아지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 수렴 가설은 OECD 일부 선진국들의 성장률 추세를 잘 설명하지만 본문에 서술한 고소득 국가가 어떻게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지, 많은 저소득 국가가 왜 계속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설명한 폴 로머(Romer, 1990)이다.⁴⁾ 이들의 이론은 어떻게 고소득 국가가 내생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이 경제(비)성장을 설명하는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후속 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했다. 첫째, 솔로, 루카스, 로머 연구의 주요 요소인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경제성장과 동행하는 요소에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했다. 둘째, 앞선 인적자본 이론과 내생적 기술진보 모두 이미 발전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하는 것에는 용이하지만 왜 대다수 저소득 국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저소득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위 두 가지 질문, 무엇이 경제성장을 야기하고 왜 모든 국가가 성장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상자들이 밝혀낸 경제성장의 원인은 ‘좋은 제도’이다. 제도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정의를 갖고 있기에 경제학에서 주목하기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들은 이에 대해 정량화가 가능하도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좋은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한다. 제도는 모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만 사람마

다 각자 다른 정의를 가질 수 있다. 수상자들의 논문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5)에서는 North(1990)의 “제도란 사회에서의 게임의 규칙이며, 더 엄격히 말하자면 인간에 의해 고안된 인간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제약”⁵⁾이며 “결과적으로 제도는 사람들 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교환에서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정의를 차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하에서 수상자들은 좋은 경제제도를 보편적인 대중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강조된 부분은 재산권보다도 ‘보편적인 대중’이다. 일부 소수 집단만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닌, 보편적인 사람들의 재산권이 보장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해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경제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좋은 정치제도가 필요하며, 좋은 정치제도는 유사하게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가 아닌 대중들에게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나쁜 정치제도와 나쁜 경제제도는 그 반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기반하여 좋은 제도를 수상자들의 연구, 특히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대중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좋은 제도를 포용적 제도, 비효율적인 제도를 착취적 제도라고 명명하였다. 수상자들의 초기 연구는 바로 이 제도의 좋음과 나쁨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념적·실증적 정의를 제공하고, 경제발전론에서 많이 다뤄졌던 문화나 지리적 요소보다

4) 로버트 루카스는 1995년에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반한 거시경제모형을 발전시켜서 경제정책 효과의 이해를 넓힌 점에 기여한 바로, 폴 로머는 2018년에 바로 그 내생적 성장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각각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수상자들의 연구가 인적자본과 제도가 상호배타적인 개념임을 시사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원문: “Institutions are the rules of the game in a society or, more formally, are the humanly devised constraints that shape human interaction(North,1990, p. 3)”

제도의 좋고 나쁨이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함을 보였던 것이다.⁶⁾

만약 좋은 제도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면, 왜 오랫동안 저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가 고소득 국가의 제도를 모방하여 경제성장을 통해 모두의 후생이 개선되도록 하지 않은가? 즉, 왜 혹은 어떻게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들이 지속적일 수 있는가? 혹은 좋은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소수 엘리트들은 왜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였던 것인가? 수상자들은 착취적 제도가 지속되는 이유와 개혁이 일어나는 조건 모두를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⁷⁾

마지막으로 수상자들의 연구는 포용적인 정치제도가 더 나은 경제제도를 만들어 결국 경제성장으로 이끈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과 실증적인 근거를 같이 제시하였다. 특히 Acemoglu, Naidu, Restrepo and Robinson(2019)에서 민주주의의 도입이 1인당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하락에 선행하지만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로 전환한 국가의 1인당 GDP가 증가하는 실증근거를 제시하였다.

본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과 제Ⅲ장에서는 수상자들의 연구업적을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정책함의점을 논의하며 결론을 맺었다.

Ⅱ. 제도가 번영에 미친 영향⁸⁾

본 장에서는 수상자들의 연구 중 제도가 번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연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의 연구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분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경제제도가 경제성장과 중요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직관적이지만 제도가 번영에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답해야 하는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첫째, 먼저 경제제도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더 중요하게는 제도의 폭넓은 개념 중 어떤 개념에 집중하여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지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설령 제도를 정량화하는 데 성공하여도 실증분석에서 늘 우려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정립된 제도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제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고소득 국가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역인과관계와 같은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 경제환경과 무관하게 외생적으로 제도가 세워진 준실험적 환경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지리와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제도가 경제발전에도 같이, 혹은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더 중요한 요소임을 설득해야 하였다.

6)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5)에서 소개한 개괄적인 조직도를 <부록> [부도 1]에 수록하였다.

7)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은 경제적 환경을 구축한 모형에서 수학적으로 해당 명제를 증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은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2024)에서 다뤄진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앞서 소개한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 동 저자들의 저서 『좁은 회랑』(2020)과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의 저서 『권력과 진보』 등과 같이 수상자들의 번역된 대중 서적도 있으며 이 서적들은 그들의 연구결과를 쉽게 전달하였다. 본고에서는 그들의 책을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았으며, 인정된 연구업적과 관련된 학술논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1.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유럽이 식민지화한 지역에 도입 된 제도가 번영에 미친 영향

수상자들의 두 연구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2002)은 해당 문제들을 다루었다. 먼저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에서는 경제성과와 무관한 제도를 식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럽이 식민지화하였던 국가들에 주목하였다. 유럽은 식민지화하였던 지역들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는데, 시행하였던 제도들은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하도록 설정되었다. 만약 식민지에 자국민이 대거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새로운 식민지에 정착한 자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착취하여 자국에 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벨기에가 식민지화하였던 콩고가 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서술한 식민지의 초기 조건 중 수상자들이 강조한 요소 중 하나는 질병 환경이었다. 정착민들이 면역이 약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았던 지역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고 이로 인해 유럽 자국민의 식민지 지역으로의 유입률이 높지 않았다. 반면에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경우, 질병이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제도가 시행되었을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에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가 각 지역

에서의 유럽인 사망률이었다. 그들의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의 유럽인 사망률이 해당 지역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식민지화되었던 지역의 당시 인구 규모였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유럽인 입장에서 식민지화되었던 지역의 인구규모가 컸다는 것은 식민지화하고 해당 지역의 자원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유럽인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당시에는 인구와 경제규모 간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인 입장에서는 수탈할 자원이 많다는 의미가 된다. 즉, 유럽인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착취적 제도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의 기본 가정, 해당 지역에서의 유럽인 사망률이 해당 지역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유럽의 식민지화 경험을 겪었던 지역에서의 유럽인 사망률은 적합한 도구변수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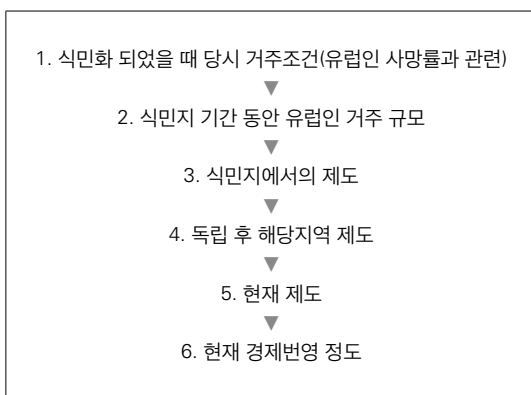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에서는 경제제도를 1985~1995년까지의 ‘재산 몰수에 대한 보호수준’이라는 지표 평균(Average protection against expropriation risk, 1985~1995 이하 PAR)을 대리변수로 측정하였다. 해당 자료는 Political Risk Services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표로써, 0(가장 불안전)부터 10(가장 안전)까지 재산몰수에 대해 안전한 정도를 나타낸다.⁹⁾ 연구에서는 PAR을 설명변수로, 1995년 1인당 GDP

9) 사실 해당 지표는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에서 처음 활용된 자료는 아니며, 해당 논문에서는 Knack and Keefer(1995) 논문에서 처음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으로 추정한 결과는 둘 간에 강력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며 회귀분석의 설명정도를 의미하는 R^2 (R-squared) 값은 약 50% 이상임을 보였다.¹⁰⁾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이 식민지화되었을 때 세워졌던 제도가 독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수상자들의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제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진 못하였다. 대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량화되진 않았지만 Young(1994)의 분석과 같이 사례 관찰 결과에 근거하여 유럽 식민지화 당시 제도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가 제시한 인과관계의 논리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인과관계 도식화



출처: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2024, p. 13, Figure 2

2단계 도구변수(Two-Stage Least Squares) 추정 결과, 기준모형에서 0 ~ 10 척도인 1985 ~ 1995년 평균 PAR이 1단위 증가하면 자연로그 1인당 GDP가 다른 지역에 비해 0.94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추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로 나이지리아와 칠레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요소가 고정되어 있고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1인당 GDP 격차가 대략 7배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p.1387). 해당 연구에서는 위도와 같은 지리적 요소를 같이 고려하였지만, 해당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함을 보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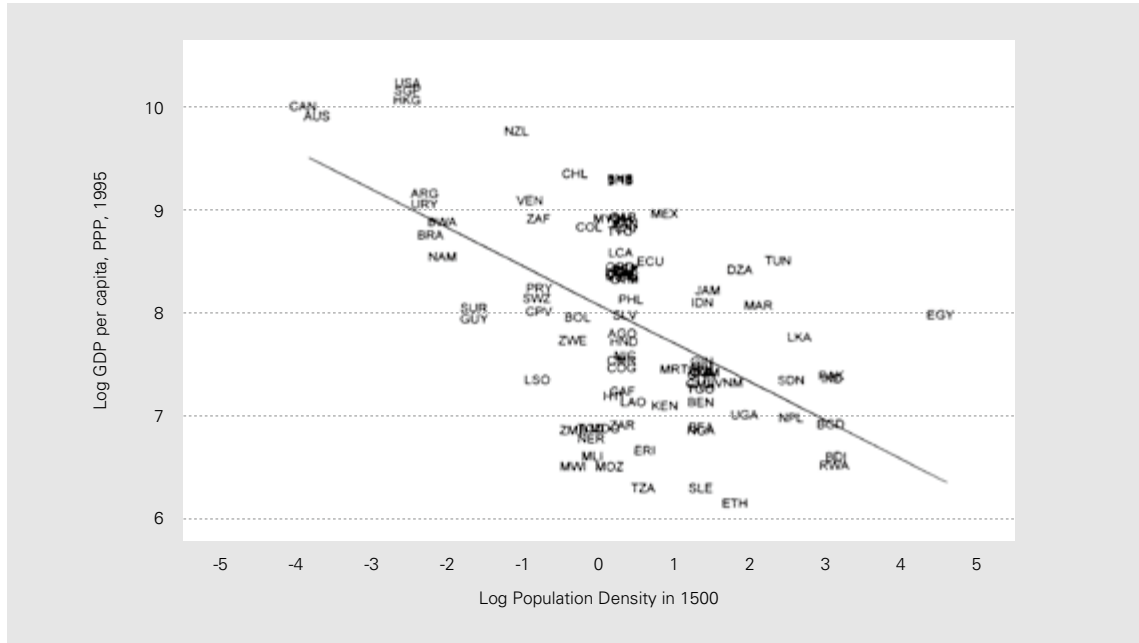
2.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2): 부의 역전현상을 통해 살펴보는 지리와 제도의 역할

유사한 연구인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2)에서는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와 유사하게 유럽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경제발전이 있어서 지리적 조건보다 제도가 중요함을 부의 역전 현상(Reversal of Fortune)을 통해 보였다. 해당 지역에서의 유럽인 사망률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면 유럽이 식민지화한 지역에서의 제도를 경제 성과에 영향받지 않는 외생적 변이로 활용할 수 있음을 수상자들의 2001년 연구 설명에서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1500년대에는 무갈(Mughal), 아

10) 국가 간 제도 차이가 국가 간 1인당 GDP가 다른 정도를 선형적으로 50% 이상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11) Glaeser et al.(2004)과 같이 인적자본이 제도보다 좋은 지표라고 분석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그림 2] 1500년대 인구밀도와 1995년도 1인당 GDP 간 관계



주: 가로축은 1500년대 자연로그 인구밀도를, 세로축은 구매력으로 정규화한 1995년 자연로그 1인당 GDP를 나타냄
 출처: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2. 1차 출처: 1인당 GDP는 World Bank 자료를, 인구밀도는 McEvedy and Jones(1978)에서 활용함

즈텍(Aztec), 잉카(Inca) 제국들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은 국가들보다 자원적으로 더욱 풍부하고 발전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500년대 경제번영 척도 중 하나인 자연로그 인구밀도와 1995년 자연로그 1인당 GDP 간 차이에는 명백한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역전현상은 인구밀도 외에도 1500년대 도시화(urbanization) 지수로 살펴보았을 때도 나타난다. 즉, 유럽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 중에서 1500년대에 도시화가 더 진행된 국가일수록 현대 1인당 소득은 적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경제발전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왔던 지리적 요건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고려하면 중요한 시사점을 갖

는다. 만약 지리적 요건이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식민지화 되었던 당시 부유했던 지역들이 더 심한 자원적 수탈을 당했더라도 독립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 - 식민지화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 을 이용해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상자들의 논문에서는 지리적 요소보다 경제제도가 경제발전에서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인 것이다.

부의 역전현상이 존재하였음을 보인 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과 유사하게 1995년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1985 ~ 1995년 평균 PAR을 설명변수로, 유럽인 사망률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면서 도시화 지수와 인구밀도를 같이

통제하여 제도가 1인당 GDP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았다. 추정계수는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OLS 추정결과와 유사한 약 0.52였으며,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2단계 도구변수 추정결과에서의 0.94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PAR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도시화 지수와 인구밀도 모두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같이 보여주었다.

참고로 문화적 요소의 경우,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5, pp. 400~402)에서 문헌을 인용하면서 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수상자들은 문화를 종교적 신념 혹은 도덕적 친족주의 문화 개념과 연관된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단, 수상자들의 연구에서 다뤄진 것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볼 수 있으며, 문화적 요소와 지리적 요소가 제도와 상호배타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¹²⁾

3. 이후 후속 실증연구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2002) 이후 후속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후속 실증연구에서는 어떤 특정 제도가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Banerjee and Iyer(2005)는 영국의 토지 제도가 인도의 독립 후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Acemoglu et al.(2011)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독일 내 제도 개혁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음을 제시하였으며, Acemoglu, Reed and Robinson(2014)은 시에라리온(Sierra Leone)¹³⁾에서 정치 지도자 간 경쟁이 보건 및 문해력과 같은 부분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이를 포함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경제변영에 미친 영향을 보다 폭넓게 분석하고자 한 연구(식민지역의 교육투자,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또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상자들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계량경제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의 역사적 요소 등 보편적인 경제학 연구에서 고려되는 것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의 지식과 이해를 요구한다. 그렇기에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2002) 두 연구가 정연한 논리와 결과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국가에는 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상자들의 후속 연구와 같이 살펴보면 수상자들의 연구는 단순히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 제도와 경제제도 간 상호작용을 통한 동학을 바탕으로 제도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12)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와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mond)는 각각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Sachs(2012)와 Diamond(2012)를 통해 내면서 경제발전에서 지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13) 아프리카 대륙 서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나라. 1961년 영국에서 영연방 왕국으로 독립하였으며 1971년 공화국으로 전환하였다.

III. 제도는 어떻게 유지되고 변하는가

앞선 연구들에서는 ‘좋은 제도’를 정의하고 측정한 제도의 좋은 정도를 활용하여, 준실험적 환경에서 좋은 제도가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 실증분석 중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에서 유럽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독립 이후에도 지배 당시의 제도가 존속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해보자. 자연스럽게 왜 그들이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였는지, 즉 “왜 저소득 국가들이 좋은 제도를 모방하여 보편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후생 증대를 누리하고자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수상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정치제도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상자들의 연구는 발견과 그 발견에 이어지는 새로운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위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역사적으로 정치제도 변화 과정은 결코 단조적이지 않았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착취적 제도가 존속적으로 이어졌던 반면에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나 미국 남북전쟁 등에서는 투표권 등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도 정치제도는 변해왔다. 즉, 비효율적인 제도가 존속되는 것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수립과 참정권 확대와 같이 민주주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수상자 중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연구는 위 질문들에 대하여 게임이론 모형을 통하여 답하고자 하였다. 추상적인 단어로 정리하면, 그들의 답은 “공약에 대한 신뢰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이해충돌(Limited commitment problem through social conflict)”이다. Acemoglu(2003)에서는 소수 집단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고 착취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경우, 포용적 제도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이 후생증대를 누리게 되더라도 자신들의 렌트(rent)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는 사회적 이해충돌(social conflict)이 착취적 제도의 영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적모형 혹은 1회성 게임(one-shot game)에서는 이와 같은 균형을 쉽게 도출할 수 있지만 반복게임 혹은 동적 모형(repeated game or dynamic model)에서는 이것이 자명하지 않을 수 있다. 수상자들의 학술적 업적은 이를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균형의 조건을 도출했다는 것에 있다.

다음으로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정치제도가 기존 소수 집단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대중에게 참정권이 확대되는 방향, 즉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이유 역시 변화 전 소수 권력집단의 유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론 모형을 통해 주장하였다. 후에 상술하듯이,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의 재분배가 소득과 불평등 간 관계를 나타내는 쿠츠네츠 곡선(Kuznets Curve)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Acemoglu and Robinson, 2000; 2002).

1. 제도의 영속성: Acemoglu(2003; 2006), Acemoglu and Robinson(2008)

먼저 Acemoglu(2003)의 연구 “Why not a political Coase theorem? Social conflict, commit-

ment, and politics”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왜 비효율적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더 중요하게는 비효율적인 제도가 시행되는 국가에서 소수 권력집단이 왜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지 않는지를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뒤에 소개하는 Acemoglu and Robinson(2000) 연구보다 나중에 출판되었지만 먼저 제도의 지속성을 살펴보는 것이 뒤에 소개하는 연구들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먼저 소개한다.

논문 제목에서의 코즈 정리(Coase theorem)는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널드 코즈(Ronald Harry Coase)가 제시한 개념으로써, 만약 재산권이 잘 정의되어 있고 경제주체들의 거래 간에 거래비용이 없다면 상호계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Acemoglu(2003)은 만약 정치경제학적 측면으로 확장한 코즈 정리가 정치제도 설립과정에서도 성립한다면 비효율적인 정책과 제도는 결국 권력집단과 대중,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간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제도를 결국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하지만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2002) 연구에서 보였듯이, 우리는 현실에서 비효율적인 제도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관측하고 있다. 그렇기에 해당 논문은 무엇이 코즈 정리를 성립하게 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

가 영속되는 이유를 보이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이 제시한 답은 제한된 확약(limited commitment)인데, 이는 후에 논의하는 다른 논문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다뤄진다. 본고에서는 수식을 활용하지 않고 모형의 핵심 요소와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모형 경제에는 통치자(ruler)와 선택가 동일한 시민들(citizens)이 존재한다. 시민들은 통치자가 정하는 조세제도하에서 생산이 더 효율적이지만 과세가 되는 시장재화(market product)와 과세가 되지 않지만 생산성이 낮은 비시장재화(non-market product)¹⁴⁾ 중에서 자원을 배분하여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한다. 해당 경제를 운영하는 통치자는 생산에 기여하지 않지만 시민들에게 조세를 거둬들일 권력을 갖고 있다. 통치자는 매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조세를 대신 거두게 하고 시민들로부터의 이전지출(transfer)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를 민주화(democratization)로 명명하였다.

논문에서는 수학적 증명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균형을 도출하였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치자와 시민들 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즉 계약 수립 후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를 서로가 믿을 수 있는가이다. 코즈 정리에서 암묵적으로 가정되었던 것은 서로 다른 주체들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적으로 서로가 이를 파기하지 않고 지키고, 사전적으로 서로가 계약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다. 논문에서의 모형 경제에서는 통치자가 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하더

14) 가내수공업(home-production)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punishment)이 가능한지 등)이 부재한 경우 통치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며, 시민들은 이럴 것을 알기에 통치자에게의 이전지출 수준 약속 혹은 생산성 높은 시장재화에 자원을 배분하는 대신 비효율적인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다는 것이 모형의 주요 결론이다. 논문에서는 6가지 명제를 정리하였는데 그 중 주로 논의했던 두 가지 명제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¹⁵⁾

- 1) 통치자와 시민들이 미래 행동에 대해 서로 약속(commit)할 수 없는 경우,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할 유인이 없는 유일한 균형은 시민들은 오로지 비시장재화만 생산하고 통치자는 과세 가능한 모든 산출물에 100% 과세할 것을 시사한다.
- 2) 통치자와 시민들이 미래 행동에 대해 서로 약속(commit)할 수 있는 경우 중 코즈 정리가 성립되는 경우: 시민들은 모든 자원을 시장재화만을 생산하는데 배분한다.

나머지 명제를 축약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들의 모형은 시민들이 혁명(revolution) 등을 통해 통치자를 위협할 수 있는 방아쇠 전략(trigger strategy) 등을 활용할 수 있게되는 경우, 1)의 균형에서 점차 2)의 균형에 더 가까운 자원배분이 발생하게 됨을 예측한다.

Acemoglu(2006) “Modeling Inefficient Insti-

tutions”에서는 비효율적인 제도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매커니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었다. 추가적으로 Acemoglu and Robinson(2008)에서는 민주주의하에서도 소수 엘리트가 그들에게 유리한 경제제도를 채택하는 상황이 균형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남부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농장, 저임금 비숙련 노동과 노동 탄압과 같이 남북전쟁 이전 농업 시스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2. 제도의 변화:

Acemoglu and Robinson(2000)

역사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가 영속되는 사례가 있었던 반면, 동시에 우리는 영국의 1932년, 1867년, 1884년에 걸친 참정권 확장 사례, 프랑스의 1830년과 1848년의 혁명으로 인한 참정권 확대, 독일의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도입, 스웨덴의 1918년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도입 등 정치권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로 확장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Acemoglu and Robinson(2000) “Why Did the West Extend the Franchise Democracy, Inequality, and Growth in Historical Perspective”에서는 19세기 서구의 정치개혁을 설명하고자 하면서 Acemoglu(200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소수 권력집단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유인이 있다면 참정권이 확대되는 방

15) 해당 명제는 Acemoglu(2003) Proposition 1과 Proposition 2에 해당한다.

향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Acemoglu and Robinson(2000)은 Acemoglu(2003)와 유사하게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참정권 확대로의 정치제도 개편은 엘리트 혹은 소수 권력집단과 시민들 간 상호 전략적 행위의 균형 결과임을 보였다. Acemoglu(2003)의 게임이론 모형에서 시민들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더 명확하게 다룬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Acemoglu and Robinson(2000)에서 보인 참정권 확대, 즉 소수 권력집단으로부터 대중들로의 권력 이양 역시 Acemoglu(2003)와 유사하게 제한된 확약으로 인한 균형 결과에 해당한다. 모형 환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경제에는 시민과 엘리트가 존재하며, 시민이 엘리트보다 많다고 가정하였다. 재화는 시장재화와 비시장재화가 존재하며, 시장재화의 생산성이 비시장재화보다 높다. 비시장재화는 이론적으로 엘리트로 하여금 세율을 결정할 때 100% 과세하면 시민이 비시장재화만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내생적으로 100% 과세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모형에서 시민들은 매기 혁명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혁명을 하게되는 경우, 자본이 파괴되면서 $(1 - \mu_t)$ 비율만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어 남은 기간 동안 영원히 μ_t 비율만큼의 생산량을 시민들과 나누어 갖게된다. 혁명이 경제 전반적 자

본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는 엘리트들의 효용(생산량)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트들은 통치를 유지하면서 세율을 조정하고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가능하기에 혁명까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행위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엘리트들은 재분배 정책이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시민들을 확신시킬 수가 없다. 당기에는 세율을 낮추고 재분배 정책을 확장해도 미래에 이를 지키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은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호의적인 제도가 시행되어도 영속적일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엘리트는 시민들이 혁명을 실제로 일으키게 되는 경우 그들의 생애효용이 민주주의를 시행했을 때보다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균형이 존재한다. 물론, 수학적으로 모형을 풀이하였을 때 조건에 따라 재분배 정책으로 정권이 유지되는 균형도 존재하며, 논문에서는 명제 1 (Proposition 1, p. 1175)에서 조건과 함께 가능한 균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¹⁷⁾

그리고 저자들은 논문에서의 이론을 쿠츠네츠 곡선(Kuznets curve)과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쿠츠네츠 곡선은 197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츠네츠(Simon Smith Kuznets)가 소득과 불평등 간에 역U자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16) Acemoglu(2003)에서는 시민들이 시장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아무런 자원을 배분하지 않더라도 천연자원 등을 통해 양(+)의 수준의 시장재화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17) Olson(1965)에서와 같이 구성원의 이익이 어떻게 내면화(internalization) 되었는지에 따라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본 연구도 존재한다. 저자인 맨서 올슨(Mancur Olson)은 '로빙 밴딧(roving bandits)'과 '스테이셔너리 밴딧(stationary bandit)'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스테이셔너리 밴딧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반면, 로빙 밴딧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제시한 가설이다.¹⁸⁾ 논문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평등이 증가하고,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재분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논문에 제시한 이론에 기반하면) 영속적인 재분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불평등이 감소하기에 쿠츠네츠 곡선을 설명하는데 참정권 확대가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 해당 논문에서는 모형을 추정하거나 캘리브레이션하여 정량적으로 쿠츠네츠 곡선을 설명하고자 하지는 않았으며, 논문 저술 당시 불평등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참정권이 확대된 국가가 많았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¹⁹⁾

3. 정치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cemoglu et al.(2019)

마지막으로 Acemoglu et al.(2019)의 연구 “Democracy Does Cause Growth”를 소개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들은 게임이론에 기반하여 이론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영속하고 또한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게임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부록 1]에서와 같이 정치적 권력 구조가 경제제도를 형성하여 그것이 분배와 자원배분, 그리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이론연구에서 수상자들의 모형이 시사하는 효율적인 정치제도를 이끄는 것 중 하나는 처벌 등을 통해 다수가 정치적인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이론 모형에서 시사하는 좋은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와 같이 참정권이 대중들에게 있는 경우를 시사한다. 그렇기에 좋은 정치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cemoglu et al.(2019)에서는 수상자들의 초기 연구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2002)와 유사하게 효율적인 정치제도를 민주주의 정도로 정의하여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Acemoglu et al.(2019)은 세계은행과 Freedom House에서의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75개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주의 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효율적인 정치제도를 민주주의, 참정권이 다수에게 있는 경우로 정의한 것이다.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Acemoglu and Robinson(2000) 연구 결과는 이론적으로 혁명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과 경제성장 간에 비단조적(non-monotonic)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cemoglu et al.(2019)의 논문은 [그림 3]을 보고 하면서 그들의 분석을 시작한다. [그림 3]에서는 민주화 전에 국민소득의 감소가 선행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그림 3] 자체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간 관계 역시 Acemoglu,

18) 정치경제학과 환경경제학에서도 쿠츠네츠 곡선과 같이 처음에는 환경오염 혹은 정치적 평등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수준이 되면 감소한다는 가설 혹은 실증적 근거들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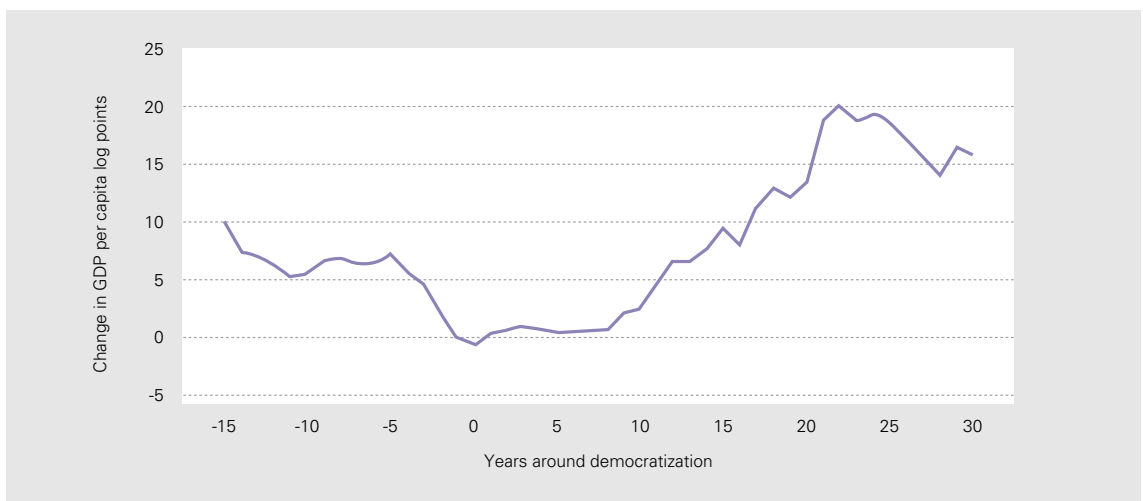
19) <부록>에 최근까지의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와 Freedom House에서 접근 가능한 정치적 상황과 시민권을 지수화한 자료를 활용하여 Acemoglu and Robinson(2000; 2002)에서 제시한 이론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단, 해당 자료들은 단순히 자료들 간 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본 고에서는 각 변수 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모두 검정하고자 하지 않았다. Freedom House 자료는 Acemoglu, et al.(2019)에서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활용한 자료다.

Johnson and Robinson(2001; 2002) 연구와 유사하게 내생성이 우려되며,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 2002) 과는 달리 Acemoglu et al.(2019)에서는 민주주의가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도입된 준실험적 환경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진 못하였다. Acemoglu et al.(2019)은 패널자료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fixed-effect) 모형, GDP의 이전 기 변수를 고려한 동적패널(Dynamic Panel)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도구변수 추정법 등을 활용하였다. 도구변수는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2001)에서의 도구변수인 유럽인 사망률이 당시 식민지 경제상황과는 무관하면서 제도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야 하였듯이, 민주화 도입과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경제성장과는 무관해야 한다. 도구변수 추정법이란 거칠게 요약하면 서술한 성격을 가진

변수를 찾은 뒤에 이 변수를 민주화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에 투영시켜서 내생성을 갖는 부분을 도려낸 정보만을 종속변수와 회귀분석에 활용하는 것이다. Acemoglu et al.(2019)는 지역적으로 민주화가 확산되는 현상에 기반한 지역적 민주화 물질 지수를 주요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는 민주화가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을 근거로, 특정 국가가 민주화될 가능성이 지역 내 민주화 경향에 의해 경제환경과 무관하게 외생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것에 기반한다. 또한 특정 국가의 초기 정치체제와 지역적 특징(예: 식민지 유산 또는 냉전 구도의 영향)을 반영하여, 민주화와 비민주화가 특정 지역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 간 민주화가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Acemoglu et al.(2019)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그림 3] 민주화와 자연로그 1인당 GDP 변화 간 관계



주: 가로축은 민주화가 도입된 연도를 0, 도입되기 전에는 음수 값을, 도입된 후에는 양수 값을 가짐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1인당 GDP 변화의 로그 포인트 값을 나타냄

출처: Acemoglu, et al., 2019, p. 49, Fig. 1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 이후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약 20 ~ 25% 증가하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민주화의 영향을 즉각적이지 않으며 영향이 완전하게 실현되기까지는 약 2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들은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제도 개혁은 교육 수준 개선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 아동 사망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함께 논의하였다.

4. 후속연구

에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연구 이후, 이들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제한된 확약(limited commitment) 문제를 고려한 민주주의와 재분배에 대한 더 정교한 내생적 제도 이론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민주주의와 소득 불평등 간 상호관계, 즉 쿠츠네츠 곡선과 민주주의를 결합한 연구가 역시 다수 이루어졌다.

먼저 게임이론적 접근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Powell(2004)은 이러한 모형에서는 경제환경 변화나 혁명이 성공할 확률의 변화 등으로 협상력에 큰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정보가 완전한 상태에서도 협상이 결렬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엘리트가 대중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적 행동을 취하는지 등을 같이 고려하였다. Powell(2004; 2006; 2024)에서는 이러한 매커니즘이 최근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그는 이를 ‘Acemoglu and Robinson’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에쓰모글루와 로빈슨이 이론적으로 제안한 매커니즘은 이론 모형에서 전반적으로 확약 문제가 있는 동적 게임을 분석

하는 것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관련 연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참정권 확대의 미시적 기반(micro-foundation)을 분석한 연구로는 Jack and Lagunoff(2006)과 Gieczewski(2021) 등이 있다.

그리고 지니계수를 사용한 소득 불평등이 민주주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많은 후속 연구가 있었다. 관련 연구로는 Gassebner, Lamla and Vreeland(2013), Knutsen(2015) 등이 있다. 또한 반대 방향의 연구, 즉 민주주의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들도 수행되었으며, 관련 연구로는 Ansell and Samuels(2014), Knutsen(2015), Acemoglu et al.(2015), Dorsch and Maarek(2019) 등이 있다.

IV. 결론

올해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되기 전, 노벨 물리학상은 제프리 힌턴(Geoffrey Everest Hinton)과 존 홉필드(John Joseph Hopfield)에게, 노벨 화학상은 데미스 허사비스(Demis Hassabis), 존 M. 쥘퍼(John Michael Jumper),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에게 주어졌다. 노벨 물리학상 두 명의 수상자와 노벨 화학상 중 데미스 허사비스는 인공지능의 선구자들이었기에 올해 노벨상은 인공지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리고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대런 에쓰모글루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시장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저명한 연구자였기에 대런 에쓰모글루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관련 경제학 연구업적이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이 기대되었다. 사실 대런 애쓰모글루가 경제학에 기여한 바는 하나 같이 중요하고 동시에 광범위하기에 그가 노벨상을 받지 여부보다 받는다면 어떤 주제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될지가 더 큰 관심사였던 차였다. 결과적으로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대런 애쓰모글루를 포함한 사이먼 존스, 제임스 A. 로빈슨에게 제도와 경제성장 간 동학을 밝혀낸 연구업적을 기리며 수여되었다.

왜 경제성장인가? 경제성장이 인류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72의 법칙'이다. 72의 법칙에 따르면 연간 성장률이 2.4%인 국가와 1.2%인 국가가 소득이 두 배로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기에 따라서는 고작 1.2%p 차이지만 각각 30년과 60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로버트 루카스가 1985년 12월 마셜 강연(Marshall Lectures)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수치를 대표적인 가능성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인도 경제가 인도네시아나 이집트처럼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만약 없다면 대체 인도의 어떤 특성이 인도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인간의 복지에 미치는 결과는 엄청나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 힘들 지경이다.”²⁰⁾

해당 강연 이후 29년이 지난 올해 2024년에는

루카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은 제도가 중요하다고 보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를 밝혀내었다.

수상자들이 제시한 제도와 경제성장 간 상호작용 및 제도의 변천과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제도는 결국 인간의, 인간을 위한 그리고 인간에 의해 생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는 더없이 내생적으로 결정되지만 동시에 지리적 요소나 문화와 같이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경우 또한 많다. 수상자들의 연구에서 보였듯이, 정치 및 경제제도와 경제성장이 서로 선순환과 악순환 모두 가능하며, 선순환 궤도에 올라타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25 전쟁 이후, 우리는 분명 시작점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선순환 궤도에 올라탈 수 있었다. 하지만 선순환이 영속적인 성격을 갖더라도 완전히 영속적이진 않을 것이며,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순간에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올바른 선택과 노력이 꼭 수상자들이 제시한 이론대로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상자들이 기존 이론을 바꿔 나갔듯이, 후속 연구는 그들의 이론을 지속해서 수정·보완하면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왔다. 올바른 선택과 노력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의견을 나눈다면 더 나은 선순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IP

20) 당시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1.4%, 이집트는 3.4%였다. 단, 이는 1985년 연설 당시며 인도 2023년 ~ 2024년 3월 기준 경제성장률은 8.2%, 이집트 2023년 경제성장률은 4.1%(국제통화기구(IMF) 추정치)임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데이비드 워시, 『제17장. 타자기, 도시, 그리고 세계(3) 국부의 차이, 불평등한 세계』, 『지식경제학 미스터리』, 김민주·송희령 역, 2008, p. 313.

참고문헌

- 대런 애쓰모글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2012.
- 대런 애쓰모글루, 사이먼 존슨, 『권력과 진보』, 생각의 힘, 2023.
-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좁은 희망: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시공사, 2020.
- 데이비드 워시, 『지식경제학 미스터리』, 김영사, 2008.
- Acemoglu, Daron, “Why not a political Coase theorem? Socialconflict, commitment, and politic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2003, pp. 620~652.
- _____, “Modeling Inefficient Institutions,” *Advances in Economics and Econometrics: Theory and Applications, Ninth World Congress*, 2006, pp. 341~380.
-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 “Reversal of Fortune: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2, pp. 1231~1294.
- Acemoglu, Daron, Davide Cantoni,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 “The Consequences of Radical Reform: The French Revol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2011, pp. 3286~3307.
-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2001, pp. 1369~1401.
-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Robinson., “Institutions as Fundamental Causes of Long-Run Growth,” *Handbook of Economic Growth*, 2005, pp. 385~472.
- Acemoglu, Daron, Suresh Naidu, Pascual Restrepo, and James A. Robinson., “Chapter 21 - Democracy, Redistribution, and Inequality,”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2015, pp. 1885~1966.
- Acemoglu, Daron, Suresh Naidu, Pascual Restrepo, and James A. Robinson., “Democracy Does Cause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19, pp. 47~100.
- Acemoglu, Daron, Tristan Reed, and James A. Robinson., “Chiefs: Economic Development and Elite Control of Civil Society in Sierra Leon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014, pp. 319~368.
-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Why Did the West Extend the Franchise? Democracy, Inequality, and Growth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00, pp. 1167~1199.
-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Persistence of Power, Elites, and Institu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2008, pp. 267~293.
- Ansell, Ben W, and David J. Samuels., *Inequality and Competition: An Elite Compet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Banerjee, Abhijit, and Lakshmi Iyer., “History,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Legacy of Colonial Land Tenure Systems in India,” *American Economic Review*, 2005, pp. 1190~1213.
- Broadberry, Stephen, Bruce M. S. Campbell, Alexander Klein, Mark Overton, and Bas van Leeuwen.,

- British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1270~1870.
- Crafts, Nicholas Francis Robert, and Clarence Knick Harley., "Output Growth and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A Restatement of the Crafts-Harley View," *The Economic History Review*, 1992, pp. 703~730.
- Diamond, Jared., "What Makes Countries Rich or Poor?," 2012.
- Dorsch, Michael T and Paul Maarek., "Democratization and the Conditional Dynamics of Income 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19, pp. 385~404.
- Gassebner, Martin, Michael J. Lamla, and James Raymond Vreeland., "Extreme Bounds of Democracy,"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013, pp. 171~197.
- Gieczewski, Germán., "Policy persistence and drift in organizations," *Econometrica*, 2021, pp. 251~279.
- Glaeser, Edward L, Rafael La 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 Andrei Shleifer., "Do Institutions Cause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2004, pp. 271~303.
- Grossman, Gene M, and Alan B. Krueger., "Environmental Impacts of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BER Working Paper*, 1991.
- Jack, William, and Roger Lagunoff., "Dynamic enfranchis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06, pp. 551~572.
-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1995, pp. 207~227.
- Knutsen, Carl Henrik., "Reinvestigat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s and Institutions*: 2015.
- Lucas, Robert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88, pp. 3~42.
- McEvedy, Colin, and Richard M. Jones. *Atlas of World Population History*, Puffin, 1978.
- North, Dougla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Powell, Robert, "The Inefficient Use of Power: Costly Conflict with Complete In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4, pp. 231~241.
- _____, "War as a Commitment Probl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2006, pp. 169~203.
- _____, "Power sharing with weak institution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024, pp. 186~211.
- Romer, Paul M.,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0, S71-S102.
- Smith, Adam., *The Wealth of Nations*. W. Strahan and T. Cadell, London, 1776.
- Sachs, Jeffrey D., "Government, Geography, and Growth: The True Drivers of Economic Development," *Foreign Affairs*, 2012, pp. 142~150.
- Solow, Robert M.,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56, pp. 6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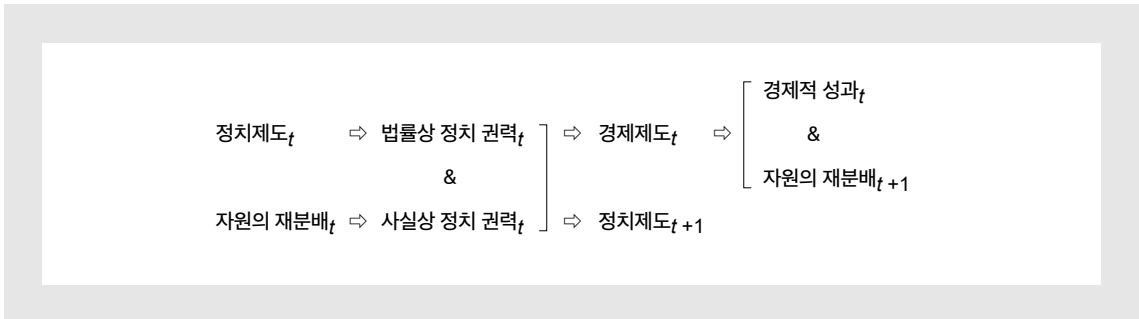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Scientific Background to the Sveriges Riksbank Prize in Economic Sciences in Memory of Alfred Nobel 2024*, 2024.

Young, Crawford., *The African colonial state in comparative perspective*, Yale University Press, 1994.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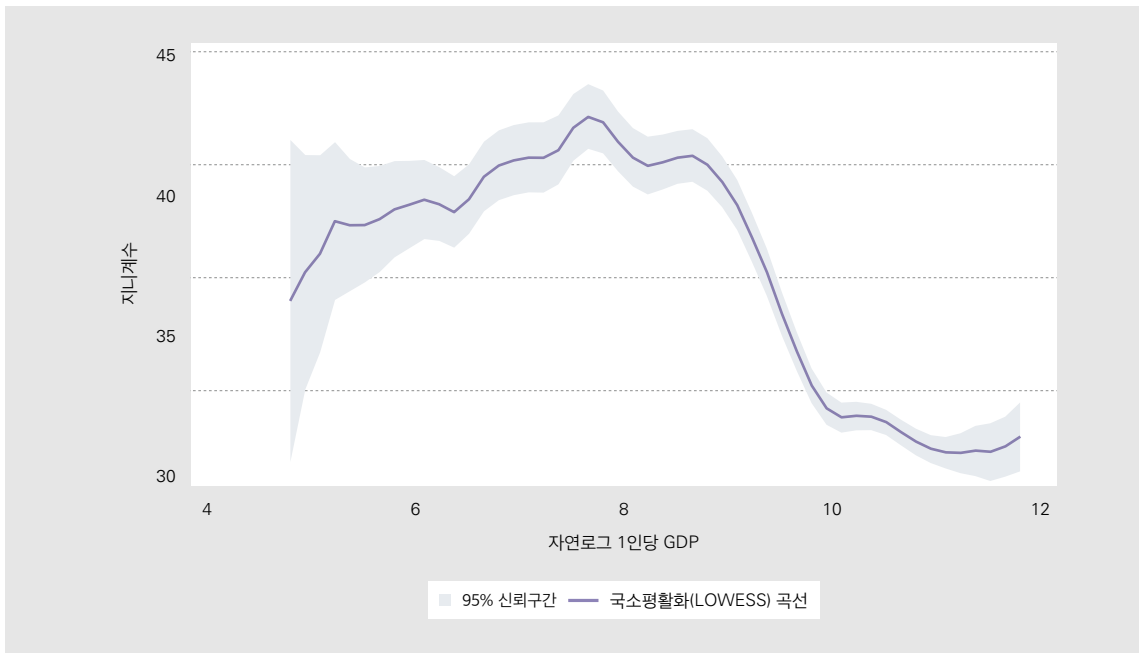
1. 순서도와 소득, 불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정도 간 관계

[부도 1] 정치제도, 경제제도, 자원 분배 간 관계



출처: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5, p. 392. 저자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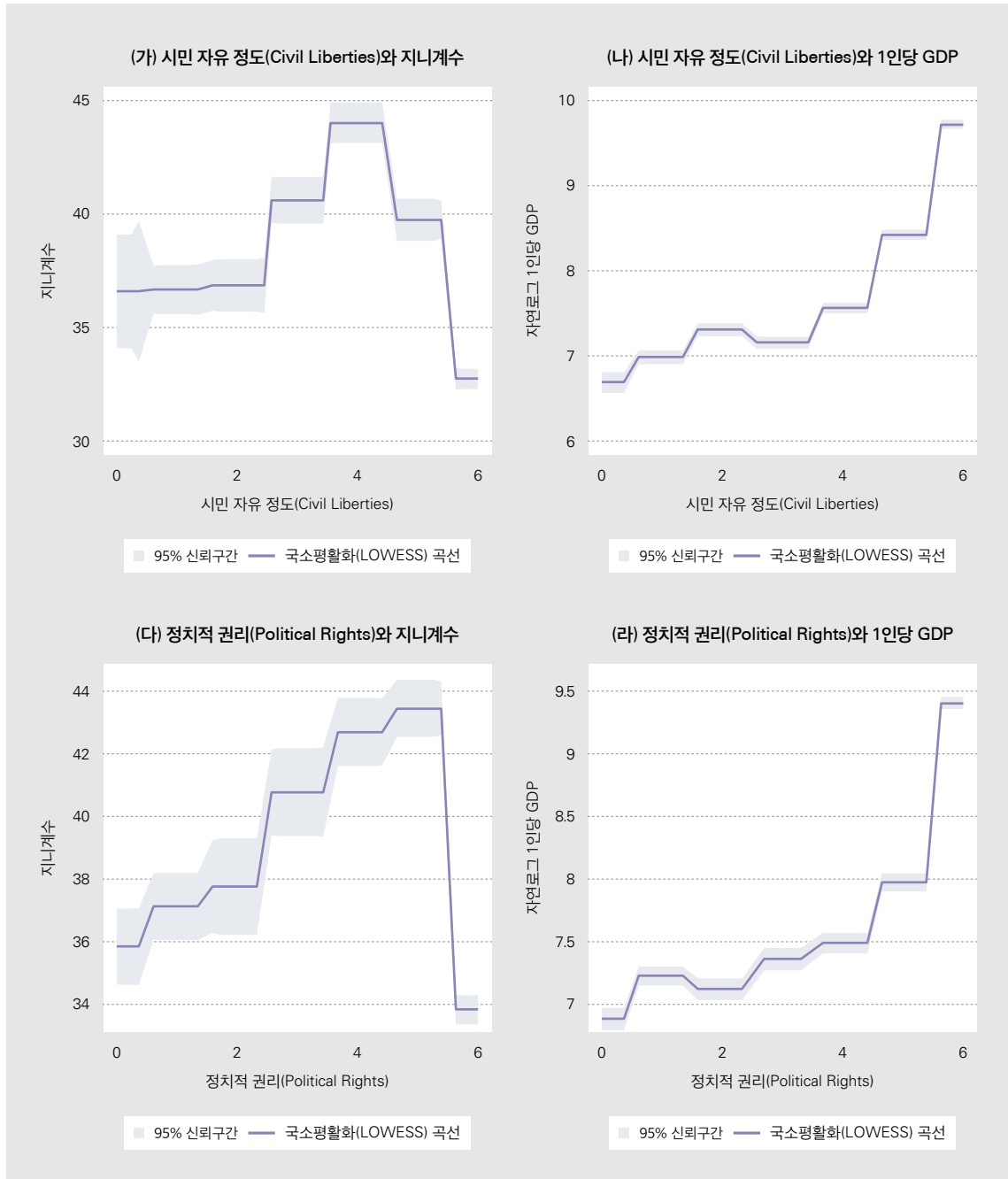
[부도 2] 쿠츠네츠 곡선: 1990~2023년



주: 국소평활화 곡선은 기준 Bandwidth 0.8을 활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출처: World Bank

[부도 3] 시민 자유 정도와 정치적 권리에 따른 지니계수와 1인당 GDP



주: 1. 국소평활화 곡선은 기준 Bandwidth 0.8을 활용함. 시민 자유 정도는 0 ~ 6까지 척도로써 커질수록 자유 정도가 커짐을 시사함. Freedom House에서 제공하는 지수는 반대로 작아질수록 자유 정도가 커짐을 시사하며, 저자가 직관적이도록 역순서를 갖도록 수정함

2. 국소평활화 곡선은 기준 Bandwidth 0.8을 활용함. 정치적 권리는 0 ~ 6까지 척도로써 커질수록 권리 정도가 커짐을 시사함. Freedom House에서 제공하는 지수는 반대로 작아질수록 권리 정도가 커짐을 시사하며, 저자가 직관적이도록 역순서를 갖도록 수정함

출처: World Bank(지니계수) 및 Freedom House

2. [부도 2] ~ [부도 3] 활용자료

[부도 2] ~ [부도 3]에서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 제공하는 시민 자유 정도(Civil Liberties, CL)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PR)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프리덤 하우스는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로서,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Acemoglu et al.(2019)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하였다.

CL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평가하며, 표현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언론, 집회,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의 지배, 개인 권리 정도로 측정된다. PR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조건을 평가하며, 선거과정, 정치적 다원주의와 참여, 정부 기능 등의 항목으로 측정된다. 원자료에서는 두 지수 모두 1~7까지 척도를 갖는 자료로써 1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7이 가장 자유도가 낮은 국가로 측정하였다. 데이터에서는 국가를 자유국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그리고 자유롭지 않은 국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부도 2] ~ [부도 6]에서는 자료의 가독성을 위해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유도가 높도록 0이 가장 자유도가 낮고 6이 가장 자유도가 높도록 변환하였다.²¹⁾

21) 정확하게는 $-x + 7$ 로 변환하였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법인 대체 최저한세(CAMT) 관련 제안 규정 발표]

■ 미국 국세청(IRS)은 2024년 9월 12일, 법인 대체 최저한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이하 CAMT)에 관한 제안 규정(proposed regulations)을 발표함¹⁾

- CAMT는 조정된 회계상 이익(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 이하 AFSI)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AFSI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부과함
 - 2022년 12월 3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AFSI를 계산함
 - CAMT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음
 -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실제 도입에 앞서 납세자들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의견을 낼 수 있고 2025년 1월 16일에

열릴 청문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음²⁾

- 해외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Foreign Parented Multinational Group, FPMG)의 경우, 그룹 전체의 AFSI가 10억달러를 초과하고 미국 지사의 이익(profit)이 1억달러 이상이면 CAMT 부과 대상이 됨³⁾
- 이번 발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CAMT 납부를 위한 AFSI 관련 규정, CAMT의 외국납부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에 관한 규정, 그리고 연계된 법인들이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⁴⁾
- 미국 국세청은 2024년 9월 12일, 공지 2024-66을 추가로 발표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과세 연도에 대해 계산상의 착오로 CAMT 납부액에 미달한 경우, CAMT 도입 과도기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 납부를 면제한다고 함⁵⁾
 -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Form 2220을 작성해서 연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해야 함
- 미국은 OECD 필라 2의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CAMT는 미국이 세수 확보와 세액

1) IRS, "IRS issues proposed regulations for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2024. 9. 12.,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proposed-regulations-for-corporate-alternative-minimum-tax>, 검색일자: 2024. 10. 15.

2)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leases Proposed Rules for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to Address Significant Corporate Tax Avoidance By Companies with \$1 Billion Or More In Annual Profit," 2024. 9. 1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574>, 검색일자: 2024. 10. 17.

3) Wolters Kluwer, "Minimum tax regulation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U.S: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CAMT) vs. BEPS Pillar Two," 2024. 5. 7., <https://www.wolterskluwer.com/en/expert-insights/minimum-tax-regulations-for-us-corporations-camt-beps>, 검색일자: 2024. 10. 17.

4) Federal Register,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Applicable After 2022," 2024. 9. 13.,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9/13/2024-20089/corporate-alternative-minimum-tax-applicable-after-2022>, 검색일자: 2024. 10. 17.

5) IRS, "Notice 2024-66," 2024. 9. 12., <https://www.irs.gov/pub/irs-drop/n-24-66.pdf>, 검색일자: 2024. 10. 15.

의 형평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것임⁶⁾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10월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비과세법인(Tax-Exempt Organization)^{7, 8)}은 2023년 과세 연도에 대해 CAMT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함^{9, 10)}

- 단, 비과세법인이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 또는 사업에서 얻은 AFSI에 한해서 CAMT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임¹¹⁾

<자료수집 및 조사: 김현정 변호사>



캐나다

[미국과의 분쟁 해결 협의에 대한 성명 발표]

-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2024년 8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요청한 분쟁 해결 협의에 대해 성명을 발표함^{12, 13)}

-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DST(Digital Service Tax)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기업을 우대하는 것이므로 DST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함¹⁴⁾

- 이에 캐나다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든 공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 캐나다는 2024년까지 다자간 협약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2024년부터 DST를 시행할 예정이었음

- 또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DST를 시행하고 있어 캐나다는 이러한 국가에 비해 불리한 입장임

- 캐나다는 미국 관계자들과 수년 전부터 DST 시행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6) Bloomberg Tax, "Treasury Proposes Rules on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2)," 2024. 9. 12., Updated: 2024. 9. 1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BNA%2000001855a41dc75ada77edb2de30001?bna_news_filter=daily-tax-report&bc=W1siU2VhcmNolCYgQnJvd3Nl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ZgvcmlvZDc1NzQ5MGFmNTlhMWlxOGRmNzZmOCJdXQ-2d93b27320de38ef9e1565b8ba79df8fa915b4ae&criteria_id=b383fb065c4757490af59a1b18df76f8, 검색일자: 2024. 10. 15.

7) 예시로 자선 단체, 종교 단체, 선거 관련 단체 등이 있음

8) IRS, "Exempt organization type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exempt-organization-types>, 검색일자: 2024. 10. 25.

9) IRS, "Treasury, IRS grant filing exception for tax-exempt organizations from filing new Form 4626, Alternative Minimum Tax - Corporations," 2024. 10. 23., <https://www.irs.gov/newsroom/treasury-irs-grant-filing-exception-for-tax-exempt-organizations-from-filing-new-form-4626-alternative-minimum-tax-corporations>, 검색일자: 2024. 10. 25.

10) IBFD, "IRS Grants Tax-Exempt Organizations Exemption from Filing CAMT Form for Tax Year 2023," 2024. 10.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24_us_3.html, 검색일자: 2024. 10. 25.

11) id.

12) Government of Canada,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Canada on international tax reform," 2024. 8. 30.,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4/08/statement-by-the-government-of-canada-on-international-tax-reform.html>, 검색일자: 2024. 10. 15.

13) IBFD, "Canada Reaffirms DST Stance Following US Dispute Settlement Consultation Request," 2024. 9.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6_ca_1.html, 검색일자: 2024. 10. 15.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4-09호, 2024. 9., p. 5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힘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아일랜드

[2025년 예산안 발표]

■ 아일랜드 정부는 2024년 10월 10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함^{15), 16)}

- 금번 예산안에는 지분면세제도 도입, R&D 세액공제 확대, 개인소득세 관련 세액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법인세) 법인세 측면에서는 지분면세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분면세제도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EU/EEA 및 조세조약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특정 외국 배당 및 분배소득에 대해 적용됨
- R&D 세액공제의 연 한도 금액을 5만유로에서 7만 5천유로로 확대함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개인소득세 세액공제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소득세 관련 세액공제를 강화함

- 소득 표준세율 구간을 미혼 개인의 경우 4만 2천유로에서 4만 4천유로로 인상함
- 미혼 개인에 대한 개인 세액공제(personal tax credit)를 1,875유로에서 2천유로로 인상하였으며, 기혼 부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3,750유로에서 4천유로로 인상함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환급 한도를 1,875유로에서 2천유로로 인상함
- 또한, 가정 간병인 세액공제(home carer tax credit)를 1,800유로에서 1,950유로로 인상함

■ (기타) 이외의 세목에 대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앤젤 투자자(angel investors)를 위한 자본이득 세금 감면을 시행하며, 앤젤 투자자의 최대 감면 금액을 300만유로에서 1천만유로로 확대함
- 가스 및 전기 공급품(gas and electricity supplies)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9%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추가적으로 6개월 연장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로 적용함
- 필라 1 Amount B(즉, 특정 마케팅 및 유통 계약의 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간소화된 이전가격 접근방식)를 도입하였으며 관련 조항에 포함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거래에

15) IBFD, "Budget 2025 in Depth: Draft Finance Bill Details Previous Announcements, Including Participation Exemption, Angel Investor Relief," 2024. 10.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4_ie_1.html, 검색일자: 2024. 10. 21.

16) 아일랜드 국세청, "BUDGET 2025 SUMMARY," 2024. 10. 2., <https://www.revenue.ie/en/corporate/press-office/budget-information/current-year/budget-summary.pdf>, 검색일자: 2024. 10. 21.

대한 정상가격은 필라 1 Amount B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함¹⁷⁾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독일

[전기 자동차 인센티브 추가 발표]

■ 독일 연방 내각(Bundesregierung)은 세법 개정안(Steuerfortentwicklungsgesetz) 초안에 전기 자동차 세제 혜택을 추가 발표함^{18), 19)}

- 2024년 9월 중 독일 정부는 2024년 7월 중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에 전기자동차 수요 촉진을 위하여 전기차 구입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추가하여 발표함
- 전기차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였을 때 구매가의 40%를 첫해에 감가상각액으로 상각할 수 있으며 해당 감가상각률은 이후 6년에 걸쳐 구매 가격이 전액 상각될 때까지 적용됨
- 전기차에 대한 비과세 혜택(Benefit in kind)은 차량 구매액의 25% 금액인 7만유로²⁰⁾ 미만에서 2024년 7월 이후 취득한 회사 차량의 경

우 9만 5천유로²¹⁾ 미만까지 확대함

- 이러한 혜택은 순수 전기차(Electric vehicles) 및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에 한함
- 또한, 해당 세제 혜택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정효림 세무사>



프랑스

[2025년 예산안 발표]

■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0월 10일, 2025년 예산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을 발표하고 하원에 제출함^{22), 23)}

- 프랑스 내 매출액이 연 10억유로²⁴⁾를 초과하는 기업(약 440개)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첫 회계연도 동안 특별 부담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을 부과하며,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1/2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함

17) IBFD, "Government Proposes Changes to Pillar Two Global Minimum Tax, Application of Amount B Under Pillar One,"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1_ie_1.html, 검색일자: 2024. 10. 21.

18) IBFD, "Government Adds Incentives for E-Vehicles to Draft Tax Bill," 2024. 9.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09_de_1.html, 검색일자: 2024. 10. 17.

19) Tax note, "Germany Launches New Tax Incentives for EVs," 2024. 9. 16., p. 1872.

20) 2024년 10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377만원임

21) 2024년 10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085만원임

22) IBFD, "Finance Bill for 2025 Proposes Corporate Income Tax Surcharges, Tax on Share Buybacks, Minimum Taxation of High-Income Earners,"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1_fr_1.html, 검색일자: 2024. 10. 14.

23) Assemblée nationa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l17b0324_projet_loi.pdf, 검색일자: 2024. 10. 14.

24)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4,800억원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연 매출액이 10억유로 이상 30억유로²⁵⁾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에는 20.6%,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두 번째 회계연도에는 10.3%로 특별 부담금 비율이 설정됨
- 연 매출액이 30억유로 이상인 기업의 경우 위 비율은 각각 41.2%와 20.6%임
- 연 소득이 25만유로²⁶⁾를 초과하는 개인, 50만유로²⁷⁾를 초과하는 부부 및 평균세율이 20% 미만인 납세자(약 6만 5천명)에게 최소 2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2024년 과세소득부터 2026년 과세소득까지 적용되는 ‘고소득자 특별 부담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 sur les Hauts Revenus, CEHR)’을 도입함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를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의 폐지를 연기하며, 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규정을 둠
- OECD CARF와 관련하여 2023년 개정된 EU 디지털자산 관련 조세정보교환 지침(2023/2226)을 프랑스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정보교환의무 및 벌금 등을 규정함
-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

업부가가치분담세를 2027년에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2030년으로 연기함²⁸⁾

-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 목적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개인이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프랑스 거주자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규정을 둠

■ 예산안에 포함된 위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및 기타 신규 조치는 각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임

- 개인소득세의 경우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에 적용됨
- 법인소득세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소득세에 적용됨
- 기타 신규 조치의 경우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관련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네덜란드

[2025년 세법 개정안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4년 9월 17일, 2025년 세법개정안(2025 Tax Plan)을 발표함²⁹⁾

25)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4,539억원임

26)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7,090만원임

27)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억 4,195만원임

28)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업부가가치분담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여 2027년 전면 폐지할 예정이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 동향」, 23-10호, 2023, p. 9.)

29) IBFD, “2025 Tax Plan Highlights ATAD GAAR, Relaxed Interest Deductions and More Attractive Expat Regime,” 2024. 9.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17_nl_2.html, 검색일자: 2024. 10. 21.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buse Rule, GAAR) 시행, 보다 완화된 EBITDA 기반 이자공제한도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동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GAAR 시행 등이 있음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 2016/1164)에 따라 GAAR을 시행함
- 2025년부터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세 부과 계획은 시행되지 않을 예정임
- EBITDA 기준 이자공제 한도를 완화하여 이자비용의 최대 25%까지 공제가 가능(현재 20%)하게 됨
-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이익공제 혜택이 축소되어 2024년 13.31%에서 2025년 12.7%로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수익에서 12.7%의 중소기업 이익 면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됨

■ (개인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Box 1 세율 인하 및 Box 3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있음

- Box 1³⁰⁾에 적용되는 첫 번째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6.93%에서 35.82%로 인하하고, 최고세

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적용 대상 금액을 기존 7만 5,624유로에서 7만 6,817유로로 인상함

- Box 2 최고세율을 33%에서 31%로 인하하고, Box 3에 적용되는 세율을 36%로 유지함

■ (기타) 이외의 세목에 대해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숙박(호텔) 및 특정 문화 상품 및 서비스(미디어, 서적, 스포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9%에서 표준세율인 21%로 인상함
-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10.4%에서 8%로 인하함
- 도박 세율을 2024년 30.5%에서 2025년 34.2%, 2026년 37.8%로 인상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룩셈부르크

[2025년 예산안 발표]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4년 10월 9일,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함^{31), 32)}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CO₂ 조세가 인상됨에 따라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소득 구간의 납세자에게 인상된

30) 네덜란드의 소득세는 세 가지 범주(Box)로 구분되며,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름. Box 1은 근로, 사업, 주택 소유로 인한 소득을 다루며, Box 2는 5% 이상의 회사 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Box 3는 저축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다룸

31) IBFD, "Budget 2025: Government Changes CO2 Tax Credits, Implements Measures to Revive Housing Market," 2024. 10.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1_lu_1.html, 검색일자: 2024. 10. 14.

32) Chambre des Députés, "Projet de loi relative à la programmation financière pluriannuelle pour la période 2024-2028,"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49/120/299201.pdf>, 검색일자: 2024. 10. 1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개인사업자의 연 소득이 936유로³³⁾에서 4만 유로³⁴⁾인 경우 공제액을 168유로³⁵⁾에서 192유로³⁶⁾로 인상함
- 개인사업자의 연 소득이 4만 1유로³⁷⁾에서 7만 9,999유로³⁸⁾인 경우 특정 공식(세액공제액 = $192 - (\text{순이익} - 40,000) * 0.0048$)에 따라 산출된 공제액은 192유로에서 0유로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순이익이 연 8만유로³⁹⁾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0임
- 근로자 및 연금 수급자⁴⁰⁾에 대한 공제액 산출 방식은 위와 동일하며, 총급여액 또는 총연금이 연 8만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0임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부동산 등록세·등기세(impôt sur les droits d'enregistrement et de transcription) 과세표준의 일시적 경감 및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도입함
- 구매자-투자자가 임차인 거주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구매자가 거주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등기세의 과세표준은 50%

가 일시적으로 감면되고,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의 공증 서류가 요구됨

- 구매자-투자자가 임차인 거주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등기세에 대해 임대차 세액공제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공증 서류가 요구됨
- 주택 세액공제 혜택을 3만유로⁴¹⁾에서 4만유로로 일시적으로 인상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공증 서류가 요구됨
- 2024년 10월 1일부터 법률 발효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관할 과세당국에 서면 신청을 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해야 하며, 세무조사관의 입회하에 조세 특례 조건 수락 신고서에 서명해야 함
- 소비세와 관련하여 상업적 소비를 위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 코크스 및 갈탄에 대한 세율은 1천 kg당 115유로⁴²⁾이며, 제조 담배의 경우 최소 세율은 1kg당 296유로⁴³⁾임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33)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8만 7,292원임

34)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28만 6,000원임

35)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 9,086원임

36)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8만 4,530원임

37)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28만 7,482원임

38)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55만 2,198원임

39)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55만 4,400원임

40) 다만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 수금액이 300유로에서 4만유로인 경우 공제액이 192유로임

41)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53만 8,900원임

42)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만 472원임

43) 2024년 10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만 8,781원임



스위스

[노령유족연금(AHV)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금융 거래세 제정 반대]

■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2024년 10월 9일, 노령유족연금(Alters- 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 AHV)^{44), 45)}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거래세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함⁴⁶⁾

- 이미 기존의 금융거래세를 통해 대략 연 15.5억 스위스프랑⁴⁷⁾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는 각각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 금융거래세를 통해 얻는 수입보다 더 많은 액수임⁴⁸⁾
- 연방평의회는 기존의 금융거래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금융거래세를 제정하는 것은 스위스 주식 시장과 스위스 금융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봄^{49), 50)}

-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미 더 높은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금융거래세는 노령유족연금(AHV)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현정 변호사>



스페인

[DAC8 시행을 위한 초안 발표]

- 스페인은 2024년 9월 17일, 2011년 행정협력지침에 대한 개정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DAC8 초안을 발표함^{51), 52)}
 - 암호자산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사, 기록보관, 정보보고 의무를 부여함
 - 실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벌

44) 노령유족연금(AHV)은 스위스 사회 보험의 일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고령,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죽음, 장애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국가에서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급함

45) The Information Centre OASI/DI,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검색일자: 2024. 10. 21.

46) IBFD, "Federal Council Opposes Enacting Financial Transaction Tax to Finance AHV System," 2024. 10.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0_ch_1.html, 검색일자: 2024. 10. 18.

47) 2024년 10월 18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조 4,522억원임

48) Peter, Alexander F., Swiss Cabinet Snubs New or Higher Financial Transaction Taxes,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116, Tax Analysts, 2024.

49) id.

50) Bloomberg Law News, "Swiss Government Opposes New Taxes on Financial Transactions," 2024. 10. 9.,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6I2QSC4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l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mlvZDw0cy8wZjg5NDY1MmM3ZTU4NjEzMTk0ZmUyMjdiYzFlnzY0NCJdXQ-4bde2dd027b38e71357ffe26247cee78909c5836&criteria_id=0f894652c7e58613194fe227bc1e7644&search32=D4GnvdnmNBa71TAyUV2SXRQ%3D%3DbNrP2FfM5ZpdAfD8Spf6_uKypbHC38ynMjZcdLXtsT2UfE2Wk2FmMck1kfBa3Np-FkVJ3JezdLWtJmCznmKTVg%3D%3D, 검색일자: 2024. 10. 18.

51) IBFD,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Draft Bill to Implement DAC8 Rules," 2024. 9.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19_es_1.html, 검색일자: 2024. 10. 15.

52) IBFD, "MoF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Draft Bill to Implement DAC8," 2024. 9.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30_es_1.html, 검색일자: 2024. 10. 15.

금 제도를 도입함

- 일반적인 벌금은 법인당 200유로임
- 사용자와 통제 법인이 공급자에게 부정확하거나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반으로 보아 3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실사, 기록보관, 정보보고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는 개발될 예정임
- 암호화폐 자산과 지불 기관, 전자화폐 사업체가 보유한 자금을 압수 대상 자산으로 인정함
- 현재 일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사용되는 ‘virtual currency’ 용어를 ‘crypto-asset’ 용어로 대체함
- (소멸시효에 따른 납세 책임) 책임 있는 당사자(responsible party)의 납세 책임에 대해 두 가지 행정 권한인 ① 신고 권한과 ② 기신고된 금액에 대한 납부 요구 권한을 인정함
 - 이러한 행정 처분이 연대 책임 당사자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보조 책임 당사자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소멸시효를 도입함
-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는 2024년 10월 9일까지 진행됨
 -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소멸시효에 따른 납세 책임’은 관보에

계재된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이탈리아

[2024년도 일부 세법 개정안 승인]

- 이탈리아 의회는 거주 이전 고액 자산가 대상 대체 세금 인상, 일부 부가가치세 감면 추가 등을 포함한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일부 승인하여 2024년 10월 9일부로 시행함⁵³⁾
 - 이탈리아 의회는 2024년 8월 10일 이후 이탈리아로 거주지를 이전한 적격 고액 자산 보유자가 유리한 세제 혜택을 선택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단일 대체세(Flat Substitute Tax)를 기존 10만유로⁵⁴⁾에서 20만유로⁵⁵⁾로 인상함
 - 이는 이탈리아 내 투자를 강화하고 이탈리아로 고액 자산가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거래되는 비식품용 살았는 말의 공급과 동계 스포츠 강습⁵⁶⁾에 부가가치세율⁵⁷⁾ 5%를 적용함(단,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함)

<자료수집 및 조사: 정호림 세무사>

53) IBFD, “Parliament Enacts Increase in Lump-Sum Tax for New High-Net-Worth Residents, Amendments to VAT Rates,” 2024. 10.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10_it_2.html, 검색일자: 2024. 10. 17.

54) 2024년 10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825만원임

55) 2024년 10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9,655만원임

56) 이탈리아 국가올림픽위원회(CONI)가 인정하는 동계 스포츠 연맹등록 회원이 제공하여야 하며 적용할 수 있는 스포츠에는 스키, 스노보드 등이 포함됨

57) 기존 이탈리아 부가가치세는 22%임



핀란드

[TV세 및 공영방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개정안 공개 협의 개시]

- 핀란드 재무부는 2024년 9월 4일, TV세⁵⁸⁾ 및 공영 방송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개정하는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함⁵⁹⁾
 - 이 조치는 핀란드 공영방송(Yleisradio, 이하 YLE)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에 맞춰 세수를 늘릴 것을 권고하는 국회 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한 것임
 - 개인의 경우, TV세가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1만 4천유로⁶⁰⁾에서 1만 5,150유로⁶¹⁾로 1,150유로⁶²⁾ 인상되고, 부과세액 최대한도는 기존 163유로⁶³⁾에서 160유로⁶⁴⁾로 3유로⁶⁵⁾ 인하될 예정임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YLE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부과되는 부가가

치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10%가 아닌 14%의 감면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이해관계자는 2024년 10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2025년 예산안 의회 제출]

- 핀란드 재무부는 2024년 9월 23일, 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⁶⁶⁾
 - 개인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1~3번째 구간의 기준액을 3.28~3.4% 인상하고, 세율은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나 5~6구간의 세율은 소폭 조정함
 - 소득구간별로 기본소득세가 부과되고, 최저 소득기준 초과액에 대해서는 구간별 누진세율이 추가 적용됨
 - 근로소득공제(työtulovähennys) 최대금액을 기존 2,140유로⁶⁷⁾에서 3,225유로⁶⁸⁾로 1,085유로⁶⁹⁾ 인상함

58) 핀란드는 2013년부터 TV 수신료에 더하여 YLE세의 명칭으로 별도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일정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및 기업에게 부과됨
 59) IBFD, "Finance Ministry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TV Tax, VAT on Broadcasting Services," 2024. 10.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08_fi_1.html, 검색일자: 2024. 10. 16.
 60)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82만원임
 61)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53만원임
 62)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1만원임
 63)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만원 2,387원임
 64)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만원 7,926원임
 65)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61원임
 66) IBFD, "Government Presents 2025 Budget to Parliament," 2024. 9.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24_fi_1.html, 검색일자: 2024. 10. 16.
 67)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8만 1,623원임
 68)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9만 4,736원임
 69)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1만 3,113원임

<표 1> 핀란드 2025년 소득세 소득기준 및 누진세율 변화

(단위: 유로, %)

소득구간	종류	2024년	2025년	변화
1	과세소득	0 ~ 20,500	0 ~ 21,200	3.4
	세율	12.64	12.64	-
2	소득기준	20,500 ~ 30,500	21,200 ~ 31,500	3.28
	세율	19	19	-
3	소득기준	30,500 ~ 50,400	31,500 ~ 52,100	3.37
	세율	30.25	30.25	-
4	소득기준	50,400 ~ 88,200	52,100 ~ 88,200	-
	세율	34	34	-
5	소득기준	88,200 ~ 150,000	88,200 ~ 150,000	-
	세율	42	41.75	-0.25%p
6	소득기준	150,000 초과	150,000 초과	-
	세율	44	44.25	+0.25%p

출처: "Finland ~ Individual Taxation sec. 1.9. Rates,"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16 October 2024).

- 다만, 순 근로소득이 약 12만 5,200유로⁷⁰⁾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 OECD의 최저한세 모델규정에 관한 행정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한세법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이행함
- 덴마크가 OECD의 Amount B 보고서에서 따른 정치적 공약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규칙을 조정함
- 그룹 이전가격 산출 근거에 대한 문서화 요건을 완화하고, 혼성기업과 관련된 투자자에 관해서는 OECD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역혼성기업에 대한 법인세법 조항을 조정함

 덴마크

[2024/25년 정부 입법프로그램 발표]

■ 덴마크 정부는 2024년 10월 1일, 2024/25년 의회의 입법 프로그램을 발표함⁷¹⁾

- 조세분야에는 20개의 입법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주주 및 법인 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OECD의 최저한세 모델규정에 부합하도록 최저한세법 및 이전가격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노하우 및 특허권의 즉시 감가상각 폐지,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액 인상, 비과세 포트폴리오 주식에 대한 배당금 과세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입법 프로그램에 발표된 제안 중 일부는 2022년

70)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611만원임

71) IBFD, "Government's Legislative Programme for 2024/25 Includes Changes to Minimum Taxation, Transfer Pricing Provisions to Align With OECD's Rules," 2024. 10.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02_dk_1.html, 검색 일자: 2024. 10. 16.

12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플랫폼 ‘덴마크에 대한 책임’의 후속 조치이며,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진행상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스웨덴

[2025년 예산안 의회 제출]

■ 스웨덴 정부는 2024년 9월 19일, 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⁷²⁾

- 노동소득 및 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감면 폐지, 출퇴근 비용 공제 한도 상향, 투자 저축 계좌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도입, 무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공제 축소, 풍력 터빈에 대한 재산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음
 - (노동소득 및 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주로 저소득 및 중위소득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기본 세액공제를 상향하여 세금을 감면할 것을 제안함
 - (근로소득 세액공제 감면 폐지) 현행 근로소득 세액공제, 고령자 대상 근로소득 세액공

제 및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증가된 기본 세액공제 등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출퇴근 비용 공제 한도 상향) 출퇴근 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1천크로나⁷³⁾에서 1만 3천크로나⁷⁴⁾로 2천크로나⁷⁵⁾ 인상함
- (투자 저축 계좌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도입) 투자 저축 계좌, 양로보험 및 개인연금상품(Pan-European Personal Pension, PEPP)의 저축 계약을 보유한 자연인에 대한 비과세 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한도는 2025년 1월 1일에는 15만크로나,⁷⁶⁾ 2026년 1월 1일에는 30만크로나⁷⁷⁾임
- (무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공제 축소) 무담보 대출의 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주택, 유가증권, 차량, 보트,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의 공제율을 50%로 제한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풍력 터빈에 대한 재산세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풍력 터빈에 대한 재산세를 평가액의 0.2%에서 0.5%로 0.3%p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예산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72) IBFD, “Government Presents Budget Proposal for 2025 – Detailed Measures,” 2024. 9.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9-23_se_1.html, 검색일자: 2024. 10. 16.

73)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4만 1,770원임

74)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0만 3,910원임

75)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만 2,140원임

76)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66만원임

77) 2024년 10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33만원임



호주

[대규모 납세자 대상 신규 GST 보증 신고 관련 지침 제공]

■ 호주 국세청은 2024년 10월 3일, 대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GST 보증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⁷⁸⁾

- 본 신고는 납세자가 연중 주요 GST 관리 방식과 변경 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 사항 검토 시 자원의 소모를 줄일 수 있게 함

■ GST 보증 신고는 보증 보고서를 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작하며, 2024년 6월 30일 이전까지 다음 중 하나를 받은 경우 2024-25 회계연도에 대한 GST 보증 신고 대상이 됨

- 상위 100위까지의 GST 보증 보고서(GST Assurance Report)
- GST 보증 등급이 포함된 상위 1,000위까지의 결합 보증 검토(Combined Assurance Review) 보고서
- 상위 1,000위까지의 간소화된 GST 보증 검토(GST Streamlined Assurance Review)

■ 호주 국세청은 새로운 신고서 작성의 보증 검토를 위해 납세자 일부에게 신고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할 예정임

- 응답 대상은 상기한 상위 100위권과 1,000위권 납세자 중 소수에 해당함
- 보증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납세자가 최근의 GST 보증 검토에서 설명한 권장 사항, 낮은 보증 분야 또는 위험 신호에 대해 호주 국세청과의 상호 작용 등을 포함하여 취해진 조치
 - 납세자가 GST 관리 수준을 유지 혹은 향상시켰는지 여부, 마지막 GST 보증 검토 이후 GST 통제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사업 또는 시스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감사 재무제표와 연간 사업활동 명세서 간의 조정 사항의 존부
 - 납세자가 해당 기간 실질적으로 GST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입장을 취하였는지 여부
 - 납세자가 해당 기간 실질적인 GST 관련 오류를 발견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오류가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기간과 관련된 실질적인 금액의 세액공제를 해당 기간에 청구했는지 여부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뉴질랜드

[독립계약자 지위 관련 「고용관계법」 개정 계획 발표]

■ 뉴질랜드 노동부 장관은 2024년 9월 15일, 2025년

78) Australian Taxation Office, Compliance and governance, "Supplementary annual GST return," 2024. 10. 3.,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corporate-tax-measures-and-assurance/large-business/compliance-and-governance/supplementary-annual-gst-return>, 검색일자: 2024. 10. 15.

「고용관계법」 개정안 도입을 통해 독립계약자의 지위를 명확히 할 예정임을 발표함⁷⁹⁾

- 독립계약자 계약에 명시적으로 서명한 근로자가 나중에 고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 및 ACT주의 2차 협정에 따른 결과임

- 2024년 8월 26일 운전자가 계약서에 독립계약자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 해석에 따라 직원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의 판결⁸⁰⁾에 따라 발표됨

- 킥(gig) 경제 관련 사업체 내에서 근로자 혹은 독립계약자의 신분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과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행정상의 의의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함

- 근로자가 독립계약자임을 명시한 서면 계약이 존재함
- 특정 사업체가 근로자가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음
- 사업체는 근로자에게 하루 중 특정 시간이나 특정 요일 또는 최소 근무 시간 동안 일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또한 근로자는 작업을 하청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나 계약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일본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개정 제언]

■ 일본 금융청(FAS)은 러시아가 조세조약의 특정 조항 적용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완화를 제안함⁸¹⁾

- 일본은 러시아와 유효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러시아는 2023년 8월 8일 법령 제585호에서 일본, 한국을 포함한 38개의 비우호적 국가에 대하여 조세조약 일부 조항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함⁸²⁾

- 러시아의 조세조약 일부 조항 적용 중단 결정에 따라 일본-러시아 조세조약은 계속 유효하나, 제5-21조(고정사업장 및 대상소득), 제23조(차별금지), 제26조 제1-3항(조세징수협조) 규정의 적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는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 소득에 대한 감세율에 영향을 미침

- 현행법에 따르면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납부세

79) Beehive.govt.nz, "Increased certainty for contractors coming," <https://www.beehive.govt.nz/release/increased-certainty-contractors-coming>, 검색일자: 2024. 10. 16.

80) Rasier Operations BV & Ors v. E Tü Incorporated & Anor [2024] NZCA 403 (26 August 2024)

81) IBFD,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gency Proposes Amending Foreign Tax Credit Rules in Response to Russia's Suspension of Tax Treaties," 2024. 9.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9-13_jp_1, 검색일자: 2024. 10. 15.

82) IBFD, "Russia Temporarily Suspends Certain Provisions of 38 Tax Treaties with 'Unfriendly' States," 2023. 8. 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08-08_ru_2%23tns_2023-08-08_ru_2, 검색일자: 2024. 10. 1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 계열사로부터 대출이자를 받는 일본 금융기관들은 러시아 과세당국에 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일본 과세당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함

- FAS는 2024년 8월 30일 조세조약의 일부 조항이 상대국에서 정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정안을 제출함⁸³⁾

<자료수집 및 조사: 문교현 세무사>

- VSV제도는 2024년 7월 22일 현재 계류 중인 조세 불복 사건에 대하여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제도임⁸⁵⁾

- 인도 CBDT는 2024년 9월 19일 103/2024에서 VSV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9월 20일 104/2024에서 VSV제도 시행에 관한 세부적 지침을 발표함^{86), 87)}

- 동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CBDT가 2024년 9월 30일 발표한 4/104 규정에 따라 신고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⁸⁸⁾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그 이후 제출분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임

<자료수집 및 조사: 문교현 세무사>



인도

[직접세 세금 조정 제도(VSV) 시행]

- 인도 중앙 직접세 위원회(Th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이하 CBDT)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직접세 세금 조정 제도(Direct Tax Vivad Se Vishwas Scheme, 이하 VSV)를 시행함⁸⁴⁾

83) 일본 재정부, 「国際情勢を考慮した国際租税に係る所要の措置」,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5/request/fsa/07y_fsa_k_06.pdf, 검색일자: 2024. 10. 24.

84) IBFD, “India Publishes Effective Date and Rules for Tax Amnesty Scheme for Settling Disputes,” 2024. 10.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0-02_in_1.html, 검색일자: 2024. 10. 14.

85) 인도 재정부, “THE FINANCE (NO. 2) BILL, 2024,” https://www.indiabudget.gov.in/doc/Finance_Bill.pdf, 검색일자: 2024. 10. 14.

86) 인도 재정부, “S.O. 4016(E).—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ub-section (2) of section 88 of the Finance (No. 2),” 2024. 9. 19., <https://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notification/notification-103-2024.pdf>, 검색일자: 2024. 10. 14.

87) 인도 재정부, “G.S.R. 584(E).—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ection 99 of the Finance (No. 2) Act, 2024 (15 of 2024),” 2024. 9. 20., <https://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notification/notification-104-2024.pdf>, 검색일자: 2024. 10. 14.

88) 인도 재정부, “Procedure for making declaration and furnishing undertaking in Form-1 under Rule 4 of The Direct Tax Vivad Se Vishwas Rules, 2024,” 2024. 9. 30., <https://incometaxindia.gov.in/communications/notification/notification-no-4-2024-25.pdf>, 검색일자: 2024. 10. 14.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의회, 2025년 EU 예산 수정안 채택(2024. 10. 23.)¹⁾

※ EU 연례 예산은 EU 차원의 자원을 통해 회원국들의 국가 예산을 보완하여 농촌·저개발 지역 개발, 환경 보호, Erasmus+ 등 교육·연구 지원, EU 국경 보호, 국제 개발 촉진, 인권 증진 등을 지원. EU 집행위원회는 7년간의 장기 예산인 다년도 재정체계에서 합의된 지출 우선순위와 한도 내에서 매년 연례 예산을 편성하고 EU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 순으로 차년도 EU 예산이 확정됨²⁾

- (방향) EU 의회는 보건, 교육 및 연구, 기후 대응에 초점을 맞춘 EU 예산을 요구
 - 건강 문제 대응, 청년 지원, 농업·농촌 지원, 자연재해 피해 지원, 기후 행동 강화, 이주 및 안보 관리, 지정학적·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한 EU 지원 필요
- (수정안) EU 의회 예산 수정안 규모는 승인 기준³⁾ 2,010억유로, 지급 기준 1,535억유로

- (집행위 대비) 2024년 6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예산초안⁴⁾의 법적 한도인 승인 기준 1,997억유로에 비해 12.4억유로 증액한 2,010억유로로 수정
- (이사회 대비) 2024년 7월 이사회 수정안에서 삭감한 15.2억유로를 복원하여 지급 기준 1,535억유로로 편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출 상황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두 배 높아진 점에서 EU 이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인 Erasmus+, R&D 등의 분야 예산을 삭감함
- (주요 내용) 보건 1.1억유로, Erasmus+⁵⁾ 프로그램에 7천만유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보호 4,200만유로, 농업 9,600만유로, 인도주의 지원에 1.2억유로, 동남부 지역 지원에 1.1억유로 등 추가 증액 요구
- (향후 일정) EU 의회와 이사회 입장 조정을 위해 3주간(10월 29일~11월 18일)의 협상이 이뤄질 예정

1) EU 의회, "EU budget for 2025 to focus on research, health, education, and climate action," 2024. 10. 2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1017IPR24737/eu-budget-for-2025-to-focus-on-research-health-education-and-climate-action>, 검색일자: 2024. 10. 24.

2) European Union, "How the EU budget is adopted," https://european-union.europa.eu/institutions-law-budget/budget/how-eu-budget-adopted_en, 검색일자: 2024. 10. 14.

3) 승인 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혹은 그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지급 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4년 6월호, p. 2~5, 2024. 5. 13.,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14>, 검색일자: 2024. 10. 28.' 참조

5) Erasmus 프로그램은 1987년에 설립되어 대학생 해외 유학 및 교직원 교류 등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지원 중심의 EU 프로그램이었으나 2014년부터 Erasmus+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예산 규모를 늘리고, 교육, 직업 훈련, 청소년, 스포츠로 영역을 넓혀 EU의 다양한 국제 협력 및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첫 번째 주기를 진행하였고(지난 7년간 250만명에 대해 해외에서의 학업, 훈련, 자원봉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두 번째 주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은 약 262억유로로 첫 번째 주기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됨(EU 집행위원회, "Erasmus to Erasmus+: history, funding and future," <https://erasmus-plus.ec.europa.eu/about-erasmus/history-funding-and-future>, 검색일자: 2024. 10. 30.)

<표 1> EU 연간 예산 일정

시기	주체	내용
2월	EU 이사회 및 의회	예산편성 지침 채택
3월	EU 이사회 및 의회	우선순위 제시, 주요 일정 합의
통상 5월 말	EU 집행위	예산초안 작성 후 EU 이사회 및 의회에 제출
7월	EU 이사회	예산초안에 대한 입장 발표
9월	EU 이사회	입장 채택 및 의회에 송부
42일 이내	EU 의회	이사회로부터 입장 전달 받은 후 42일 이내 의회는 이사회 입장 승인 혹은 수정안 채택
10월	EU 이사회	의회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소집되고, 21일간 공동성명(Joint text)에 합의할 수 있는 기간 부여
	EU 집행위	다음 해 최신 예측으로 예산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수정 서한 제출
11월 이후	(조정위원회 합의) 이사회와 의회	14일 이내에 승인 → 예산 채택
	(조정위원회 합의 결렬) 집행위	새로운 예산 초안을 제출
새해 초		새해 초에도 연간 예산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 임시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1/12 규모의 예산을 매월 할당

출처: EU 이사회, "Infographic - EU budget timing," 2024. 2. 8.,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budget-timeline/>, 검색일자: 2024. 10. 31.

■ EU 통계청, 2024년 2분기 재정통계 발표(2024. 10. 22.)⁶⁾

- 2024년 2분기 유로지역⁷⁾의 일반정부 계절 조정 재정적자는 1분기와 동일한 GDP 대비 3.0%, EU 27개국은 1분기에 비해 0.2%p 증가한 3.1%
 - (유로지역) 2024년 2분기 정부 총수입은 GDP 대비 46.2%로 정부 수입 증가와 명목 GDP 상승으로 1분기 대비 0.4%p 증가
 - 유로지역 2024년 2분기 정부 총지출은 전 분기에 비해 약 250억유로 증가하여 1분

기보다 0.4%p 증가한 GDP 대비 49.2%로 나타남

- (EU) 2분기 정부 총수입은 220억유로 증가하여 GDP 대비 45.7%(1분기 45.6%)
 - 정부 총지출은 1분기에 비해 340억유로 증가하여 1분기 GDP 대비 48.5%에서 2분기 48.9%로 0.4%p 상승
- 2024년 2분기 말 유로지역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88.1%로 전 분기 87.8%에 비해 0.3%p 증가하였고, EU도 81.3%에서 81.5%로 0.2%p 상승

6)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0%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1% in the EU," 2024. 10. 22.,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0%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1% in the EU, 검색일자: 2024. 10. 24.; "Government debt at 88.1% of GDP in euro area," 2024. 10.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102024-bp>, 검색일자: 2024. 10. 24.

7)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2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표 2> 유로지역 20개국 및 EU 27개국의 2024년 2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Q2	2024Q1 ¹⁾	2024Q2 ¹⁾
유로지역 20개국			
재정수지	-3.3	-3.0	-3.0
정부수입	45.7	45.8	46.2
정부지출	49.1	48.8	49.2
정부부채	88.8	87.8	88.1
EU 27개국			
재정수지	-3.3	-2.9	-3.1
정부수입	45.3	45.6	45.7
정부지출	48.6	48.5	48.9
정부부채	81.9	81.3	81.5

주: 1.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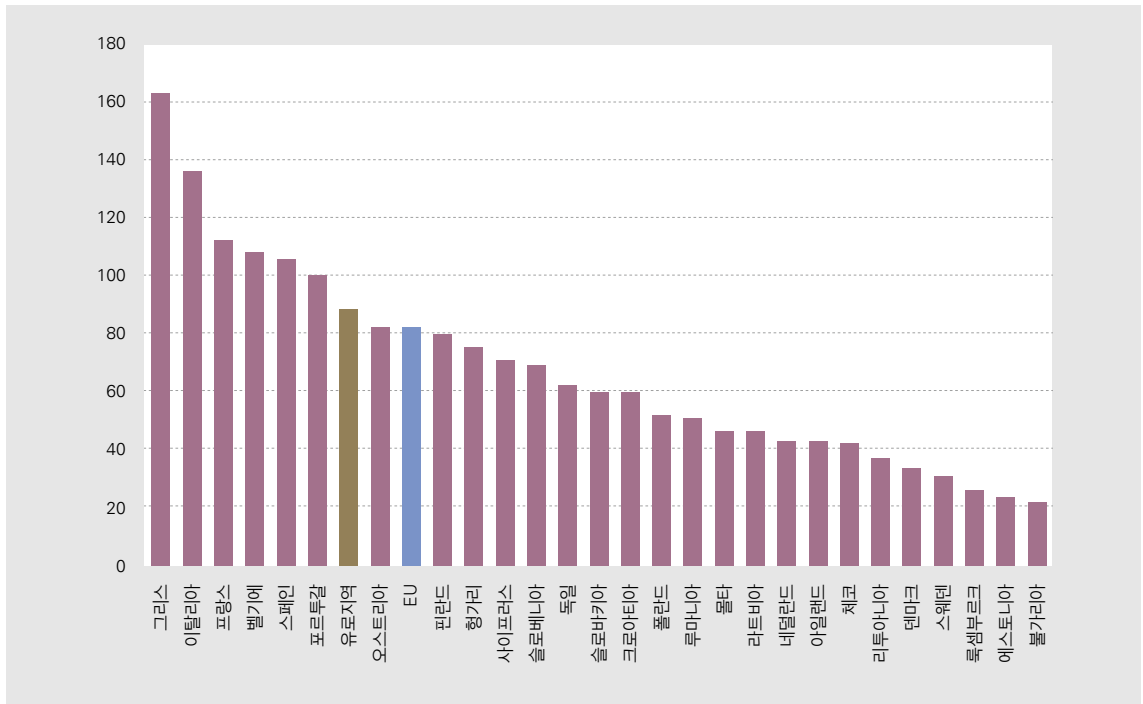
2.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

3.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 수치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0%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1% in the EU," 2024. 10. 22., 검색일자: 2024. 10. 24.; "Government debt at 88.1% of GDP in euro area," 2024. 10.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102024-bp>, 검색일자: 2024. 10. 24.

[그림 1] 2024년 2분기 말 EU 회원국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



출처: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at 88.1% of GDP in euro area," 2024. 10. 22.,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22102024-bp>, 검색일자: 2024. 10. 2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전년 동기와 비교 시 유로지역은 88.8%에서 88.1%로 0.7%p 감소하였고, EU에서는 81.9%에서 81.5%로 0.4%p 감소
- 2024년 2분기 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그리스(163.6%),⁸⁾ 이탈리아(137.0%), 프랑스(112.2%), 벨기에(108.0%), 스페인(105.3%), 포르투갈(100.6%) 순으로 높음
- 불가리아(22.1%), 에스토니아(23.8%), 룩셈부르크(26.8%) 순으로 부채 비율이 낮음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인하 결정(2024. 10. 17.)⁹⁾

- (정책금리) 10월 23일부터 세 가지 주요금리를 각각 0.25%p 인하 결정
 - 기준금리 3.65→3.4%, 한계대출금리 3.9→3.65%, 수신금리 3.5→3.25%로 인하¹⁰⁾
- 2024년 6월에 이어 9월 경제 약세 및 물가 상승률 하락 전망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
 - 2024년 9월 기준 2024년 경제성장률 0.8%, 2025년 1.3%, 2026년 1.5%, 유로 지역 물가상승률 2024년 2.5%, 2025년

2.2%, 2026년 1.9% 전망

- (경제) 제조업과 수출 약세로 경제가 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분기 가계 저축률은 15.7%로 팬데믹 이전 평균인 12.9%를 상회하나, 가계 지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력적이고 8월 실업률은 6.4%로 최저치를 나타냈으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 성장이 둔화되고 노동 수요가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물가) 유로지역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1.7%로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었고 연간 에너지가격 변화율은 -6.1%로 급격히 낮아짐
 - 에너지가격 하락이 물가상승률 둔화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면서 향후 몇 달간은 물가상승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식품 물가상승률은 2.4%로 소폭 상승했으며, 상품은 0.4%로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3.9%로 소폭 하락함

8) 2024년 10월 그리스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5~2028년 중기재정구조계획의 순지출 경로 변화율은 2024년 2.4%, 2025년 3.7%, 2026년 3.6%, 2027년 3.0%, 2028년 3.0%로 부채 지속가능성 요건을 준수면서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고, 중기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기준 값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EU 규정을 충족함. 이러한 순지출 경로 약속을 준수하는 경우 GDP 대비 구조적 적자는 2024년 1.48%,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는 1.1 ~ 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 비율은 2024년 GDP 대비 153.1%에서 2025년 149.1%, 2026년 143.1%, 2027년 138.0%, 2028년 133.4%로 매년 상당 비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9)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 10. 17.,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1017-aa366eaf20.en.html>, 검색일자: 2024. 10. 21.; Monetary policy statement (with Q&A), 2024. 10. 17.,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monetary-policy-statement/2024/html/ecb.is241017-59ad385bab.en.html, 검색일자: 2024. 10. 21.

10)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는 은행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수신금리(Deposit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예치 시 적용받는 금리

<표 3> EU 정책금리 인상 경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9월	11월	12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1월	6월	9월	10월	
기준금리	0.50	1.25	2.00	2.50	3.00	3.50	3.75	4.00	4.25	4.50	4.50	4.50	4.25	3.65	3.40	
한계대출금리	0.75	1.50	2.25	2.75	3.25	3.75	4.00	4.25	4.50	4.75	4.75	4.75	4.50	3.90	3.65	
기준금리 및 한계대출금리 변동폭(%p)	+0.50	+0.75	+0.75	+0.50	+0.50	+0.50	+0.25	+0.25	+0.25	+0.25	-	-	-0.25	-0.6	-0.25	
수신금리	0.00	0.7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4.00	4.00	3.75	3.50	3.25	
변동폭(%p)	+0.50	+0.75	+0.75	+0.50	+0.50	+0.50	+0.25	+0.25	+0.25	+0.25	-	-	-0.25	-0.25	-0.25	

출처: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4. 10. 21.;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 10. 17.,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1017~aa366eaf20.en.html>, 검색일자: 2024. 10. 21.



IMF

■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2024. 10. 15.)¹¹⁾

- (전망) 세계 공공채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24년에 100조달러(GDP 대비 93%)를 초과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100%에 가깝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미국이 채무 증가를 주도할 것임
- (위험) 지난 30년간 정치적 담론이 재정지출 증가 방향으로 기울었으며, 재정정책의 불확실성 증가와 녹색 전환, 인구 고령화, 안보 문제 등의 지출 압력이 높아져 채무 전망에 대한 상방 위험이 큼
 - 'Debt-at-Risk' 접근법¹²⁾에 따르면 극단적으

로 불리한 시나리오에서의 세계 채무 수준은 2026년에 GDP 대비 1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준 시나리오 전망보다 약 20%p 높은 수치임

- 이자율-성장률 차이, 재정 적자, 환율 변동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확인 채무(Unidentified debt)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채무가 예상보다 높아지는 주요 요인임
- (정책권고) 채무를 안정시키거나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현 계획보다 훨씬 더 큰 재정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통화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지금이 재정 완충장치를 재건할 적기임
 - (조정 규모 식별)¹³⁾ 2029년까지 중위국가

11)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4/10/23/fiscal-monitor-october-2024?cid=ca-com-homepage-AM2024>

12) Debt-at-Risk는 경제적, 금융적, 정치적 충격에 따른 GDP 대비 채무 비율의 극단적 상승 위험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채무 수준이 95th 백분위에 속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측정함.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Value-at-Risk(VAR) 접근법과도 일관성을 유지함

13) 재정조정이 채무 전망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줄이고 채무를 안정화하거나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IMF의 Sovereign Risk and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SRDSF)에 기반한 확률론적 접근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개선 측면에서 선제적(proactive) 재정조정의 규모를 정량화함

<표 4>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재정수지							
세계경제	-4.7	-5.0	-4.5	-4.2	-3.9	-3.9	-3.8
G20 선진국	-5.6	-5.8	-5.3	-4.8	-4.5	-4.5	-4.4
캐나다	-0.6	-2.0	-1.0	-1.0	-0.9	-0.7	-0.6
유로지역	-3.6	-3.1	-3.1	-2.9	-2.8	-2.7	-2.7
프랑스	-5.5	-6.0	-5.9	-5.8	-5.9	-5.9	-5.9
독일	-2.6	-2.0	-1.7	-1.0	-0.8	-0.7	-0.5
이탈리아	-7.2	-4.0	-3.8	-3.5	-3.2	-3.1	-3.1
스페인 ¹⁾	-3.5	-3.0	-2.8	-2.9	-3.0	-2.8	-2.8
일본	-4.2	-6.1	-3.0	-2.8	-2.9	-3.5	-4.0
영국	-6.0	-4.3	-3.7	-3.5	-3.4	-3.4	-3.3
미국 ²⁾	-7.1	-7.6	-7.3	-6.7	-6.2	-6.2	-6.0
한국	-0.7	-0.5	-0.1	0.0	0.0	0.0	0.0
신흥시장국 및 중진국	-5.4	-5.7	-5.6	-5.4	-5.3	-5.3	-5.3
채무							
세계경제 ³⁾	108.7	109.4	111.0	112.0	112.8	113.6	114.2
G20 선진국	118.2	119.2	121.4	122.7	123.7	124.8	125.6
캐나다 ⁴⁾	107.5	106.1	103.2	101.2	99.5	97.9	96.3
유로지역	87.8	88.1	88.4	88.5	88.8	88.9	89.0
프랑스	109.9	112.3	115.3	117.6	119.8	121.9	124.1
독일	62.7	62.7	62.1	60.9	59.9	59.0	57.8
이탈리아	134.6	136.9	138.7	140.2	141.4	142.0	142.0
스페인	105.0	102.3	100.7	99.6	99.1	98.0	97.1
일본	249.7	251.2	248.7	246.9	245.7	244.8	245.0
영국	100.0	101.8	103.8	104.9	106.1	107.3	108.3
미국 ⁴⁾	118.7	121.0	124.1	126.6	128.4	130.2	131.7
한국	51.5	52.9	54.3	55.4	56.3	57.2	58.2
신흥시장국 및 중진국	69.4	70.8	73.0	75.0	76.9	78.8	80.6

주: 1) 금융지원 포함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국의 지출 및 재정수지는 미적립 연금 채무에 대한 귀속 이자 및 피고용자보수를 제외하도록 조정되며, 2008년 채택된 국민 계정 시스템(GNA)의 지출을 따르므로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3) 채무 평균에는 EU에서 발생한 NGEU 패키지 보조금의 채무는 불포함되며, EU에서 발행하여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용자는 회원국의 채무 데이터 및 지역별 집계에도 포함

4)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국민 계정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호주, 캐나다, 홍콩 SAR,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보고한 총 채무 수준에서 공무원의 미적립 연금 채무를 제외하도록 조정

출처: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4, 2024. Table A1, A7, A9, A15 참고하여 재구성

- (median country) 기준으로 GDP 대비 1%의 누적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면 채무가 안정화되거나 감소할 확률이 60%이며, GDP 대비 3~3.5%의 조정은 채무 안정화 확률을 80%까지 높일 수 있어 조정 규모가 커질수록 채무안정화 확률이 더욱 높아짐
- (조정 구성 설계) 재정조정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신중한 재정조정 설계를 통해 국가가 장기적인 저성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선진국은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복지지출 개혁을 진행하며,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선진국은 간접세를 통해 세입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함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조세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공식 부문을 줄여 세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 부문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공공투자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채무 감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조정 속도 조절) 점진적(gradual)이나 지속 가능한 재정조정을 통해 채무 취약성을 억제하면서도 민간수요의 활력을 유지하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음
 - (신뢰 구축)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현대적 공공재정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신중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강력하고 독립적인 재정 감독이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

- (재정 거버넌스 강화) 각국은 잠재적 채무를 평가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미확인 채무를 방지해야 하며, 지출통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금자산 관리를 통해 과도한 지출을 억제해야 함
- (채무 위기 대응) 채무 위기에 직면하거나 채무가 지속 불가능한 국가의 경우 적시에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최근 IMF의 채무 및 대출 프레임워크 개혁과 글로벌 국가채무 원탁회의(GSDR)가 국가채무 재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함

■ IMF, 『세계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Policy Pivot, Rising Threats” 발표 (2024. 10. 22.)¹⁴⁾

- (경제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3.2%로 지난 4월과 7월에 발표된 전망치와 거의 동일하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경제전망이 상향 조정된 반면, 주요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은 하향 조정됨
- 중기적으로는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률이 3.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 200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3.8%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자재 생산

14)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2024. 10. 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4/10/22/world-economic-outlook-october-2024>, 검색일자: 2024.10.23.

- 과 운송의 차질, 특히 석유, 분쟁, 사회적 불안,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전망이 하향 조정
- 반면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신흥 아시아의 경제전망은 상향 조정
- (물가) 올해 초부터 경기적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의 경제 활동이 잠재 산출량(potential output)에 근접함
 - 이 조정은 국가 간 물가상승률 격차를 줄이고 세계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년 6.7%에서 2024년 5.8%, 2025년 4.3%로 하락할 전망
 - 선진국이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보다 먼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상품가격은 안정화되거나 일부 하락했으나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 가격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통화정책을 부문별로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이 여전히 우세이며 정책 불확실성이 높음
 - 금융시장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특히 단기적인 외부 금융 수요가 큰 개발도상국의 투자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새로운 원자재 가격 급등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저해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를 방해할 수 있음
- 중국 부동산 부문 수축이 예상보다 심각하거나 장기화되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경우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전 세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우려가 있음
-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강화는 무역 긴장을 악화시키고 시장효율성을 저하시켜 공급망에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
- (정책권고) 세 가지 주요정책인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의 전환(Triple Pivot)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정되고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통화정책)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2024년 6월 이후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실업률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됨
 -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중기적으로 공공채무의 지속가능한 경로를 보장하고 재정여력을 재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시급하며, 조정 속도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함
 - (구조개혁) 중기 경제전망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은 유지할 것을 권고
 - (다자간 협력)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채무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수적임

<표 5> 2024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단위: %, %p)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4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4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세계 경제	3.3	3.2	3.2	0.0	-0.1	0.0	0.0
선진국	1.7	1.8	1.8	0.1	0.0	0.1	0.0
미국	2.9	2.8	2.2	0.2	0.3	0.1	0.3
유로지역	0.4	0.8	1.2	-0.1	-0.3	0.0	-0.3
독일	-0.3	0.0	0.8	-0.2	-0.5	-0.2	-0.5
프랑스	1.1	1.1	1.1	0.2	-0.2	0.4	-0.3
이탈리아	0.7	0.7	0.8	0.0	-0.1	0.0	0.1
스페인	2.7	2.9	2.1	0.5	0.0	1.0	0.0
일본	1.7	0.3	1.1	-0.4	0.1	-0.6	0.1
영국	0.3	1.1	1.5	0.4	0.0	0.6	0.0
캐나다	1.2	1.3	2.4	0.0	0.0	0.1	0.1
기타 선진국 ²⁾	1.8	2.1	2.2	0.1	0.0	0.1	-0.2
한국	1.4	2.5	2.2	0.0	0.0	0.0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4	4.2	4.2	0.0	-0.1	0.1	0.0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5.7	5.3	5.0	-0.1	-0.1	0.1	0.1
중국	5.2	4.8	4.5	-0.2	0.0	0.2	0.4
인도 ³⁾	8.2	7.0	6.5	0.0	0.0	0.2	0.0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3.3	3.2	2.2	0.0	-0.3	0.1	-0.6
러시아	3.6	3.6	1.3	0.4	-0.2	0.4	-0.5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2.2	2.1	2.5	0.3	-0.2	0.2	0.0
유럽연합	0.6	1.1	1.6	-0.1	-0.2	0.0	-0.2
아세안 ⁴⁾	4.0	4.5	4.5	0.1	-0.1	0.1	0.0
저소득 개도국	4.1	4.0	4.7	-0.2	-0.4	-0.5	-0.4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0.8	3.1	3.4	0.0	0.0	0.1	0.1
수입							
선진국	-0.7	2.1	2.4	-0.3	-0.3	0.1	-0.4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3.0	4.6	4.9	0.4	0.1	-0.3	0.8
수출							
선진국	1.0	2.5	2.7	-0.1	-0.2	0.0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0.6	4.6	4.6	0.4	0.5	0.9	0.7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⁵⁾	-16.4	0.9	-10.4	0.1	-4.4	3.4	-4.1
비연료(세계 원자재 수입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5.7	2.9	-0.2	-2.1	-1.8	2.8	0.2
소비자 물가⁶⁾	6.7	5.8	4.3	-0.1	-0.1	-0.1	-0.2
선진국 ⁷⁾	4.6	2.6	2.0	-0.1	-0.1	0.0	-0.1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8.1	7.9	5.9	-0.1	0.0	-0.3	-0.2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4년 7월 30일 ~ 2024년 8월 27일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순서는 경제규모순으로 나열.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조정

1) 2024년 4월 WEO 업데이트 및 2024년 7월 WEO 예측에 대해 반올림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

2) G7과 유로존 지역 제외

3)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며, 2011년 이후의 GDP는 2011-12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함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 영국 브렌트유(Brent), 두바이 파테유(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23년 배럴당 평균 가격은 80.59 달러. 선물 시장 기준으로 가정한 가격은 2024년 81.29달러, 2025년 72.84달러

6) 베네수엘라 제외

7) 2024년과 2025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유로존 2.4%, 2.0%, 일본 2.2%, 2.0%, 미국 3.0%, 1.9%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2024. p. 10 Table 1.; 한국의 수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2023, Table A2. 참고하여 재계산



OECD

■ OECD, 2024년 2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 (2024. 10. 15.)¹⁵⁾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년 2분기에 각각 70.2%, 74%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각각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38개 OECD 국가 중 13개국¹⁶⁾에서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두 지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OECD 국가의 2/3에서 고용률이 OECD 평균(70.2%)보다 높게 나

타남

- 전 분기 대비 고용률이 증가한 국가 18개국 중 에스토니아(75.3→76.5%), 그리스(62.7→63.9%), 아이슬란드(83.8→85.3%)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코스타리카(60.2→59.6%), 핀란드(73.4→72.9%), 슬로베니아(74.1→73.1%)에서 가장 큰 감소를 기록
-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2024년 8월 기준 4.9%이며, 2022년 4월 이후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5.9%, 6.4%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

<표 6>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Q4			Q1	Q2	Q3	Q4	Q1	Q2
OECD 전체	68.9	67.7	69.3	69.8	70.0	70.1	70.1	70.2	70.2
G7	72.3	71.1	72.4	72.8	73.0	73.0	73.1	73.0	73.0
유럽연합	68.0	68.3	69.8	70.2	70.4	70.4	70.6	70.7	70.9
유로지역	68.5	67.8	69.4	69.8	70.1	70.0	70.2	70.3	70.6
호주	74.1	74.6	76.9	77.2	77.2	77.2	77.1	76.9	76.8
캐나다	74.6	73.5	75.6	76.2	76.0	75.7	75.4	75.0	74.8
프랑스	66.7	67.3	68.1	68.4	68.5	68.4	68.4	68.7	69.0
독일	75.8	75.6	76.7	77.1	77.2	77.2	77.3	77.4	77.4
이탈리아	59.0	58.3	60.2	61.0	61.4	61.5	62.1	62.1	62.0
일본	78.1	77.9	78.5	78.6	78.9	79.0	79.2	79.1	79.3
한국	67.0	66.5	68.5	68.8	69.3	69.4	69.5	69.5	69.5
스페인	63.4	62.6	64.3	64.6	65.4	65.7	65.7	65.7	66.1
영국	76.1	75.1	75.3	75.3	75.2	74.8	75.0	74.5	74.5
미국	71.7	69.4	71.3	71.8	72.0	72.0	72.0	72.0	71.9

출처: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5 October 2024," p. 4, Table 1 일부 발췌

15)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stable at record highs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2024. 10. 15.,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10/labour-market-situation-updated-october-2024.html>, 검색일자: 2024. 10. 22.

16) 프랑스, 독일, 칠레, 그리스, 헝가리,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한국,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표 7〉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Q4			Q1	Q2	Q3	Q4	Q1	Q2
OECD 전체	72.9	72.2	73.1	73.5	73.7	73.7	73.8	73.9	74.0
G7	75.5	75.1	75.6	76.0	76.2	76.2	76.3	76.3	76.4
유럽연합	73.0	73.6	74.5	74.8	75.0	75.0	75.2	75.4	75.4
유로지역	74.1	73.6	74.5	74.9	75.0	75.0	75.2	75.4	75.5
호주	78.3	78.7	80.0	80.1	80.2	80.2	80.3	80.0	80.1
캐나다	79.1	79.5	79.8	80.3	80.3	80.2	80.0	79.8	79.9
프랑스	72.7	73.0	73.6	73.7	74.0	73.9	74.0	74.3	74.6
독일	78.2	78.5	79.3	79.6	79.7	79.7	79.9	80.1	80.1
이탈리아	65.4	64.5	65.6	66.2	66.6	66.7	67.1	67.0	66.7
일본	80.0	80.3	80.7	80.8	81.1	81.2	81.4	81.3	81.5
한국	69.6	69.0	70.5	70.8	71.1	71.3	71.4	71.5	71.5
스페인	73.8	73.7	74.0	74.1	74.4	74.7	74.6	74.6	74.8
영국	79.2	78.7	78.3	78.5	78.6	78.1	78.1	77.9	77.8
미국	74.4	73.4	74.0	74.5	74.6	74.8	74.8	74.9	74.9

출처: OECD,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15 October 2024," p. 5, Table 2 일부 발췌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예산처(CBO),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 (2024. 10. 8.)¹⁷⁾

- (세입) 202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4조 9,180억달러 추정
 - 세입 증가분의 일부는 연방 재난 지역에 속한 납세자들의 2023년 세금 납부 기한을

2024회계연도로 연기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세입 최종 규모¹⁸⁾는 CBO가 6월에 예상한 수치 대비 300억달러 더 견힌 것으로 집계

- 증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세¹⁹⁾는 전년 대비 11.4%(2,490억달러) 증가한 약 2조 4,250억달러로 사회보험 급여세*와 합할 경우 전년 대비 약 9.1% 증가

* 사회보험급여세는 전년 대비 5.9%(950억달러) 증가한 1조 7,090억달러

● 환급액(refunds)을 제외한 개인소득세와

17)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4," 2024. 10. 8., <https://www.cbo.gov/publication/59544>, 검색일자: 2024. 10. 24.

18) 환급금 제외

19) 참고로, 개인 소득세의 경우, 환급(tax refunds) 규모가 전년 대비 21%(770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고용유지 세액 공제에 대한 신규 청구를 일시적 중단(2023년 9월~)했기 때문이며, IRS는 강화된 조치(enhanced compliance measures)를 통해 청구를 처리(2024년 1월까지 접수된 청구를 대상으로 함)할 것이라고 8월에 발표함. 이로 인해 2024회계연도의 개인소득세 환급 규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침

<표 8> 미국 FY2023 & FY2024 재정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Y2023 실적 (A)	FY2024 예비결산 (B)	증감 (B-A)	증감율 (B-A)/A
재정 수입	4,439	4,918	479	10.8
재정 지출 ¹⁾	6,135 (6,126 ¹⁾)	6,752 (6,824 ²⁾)	617 (699)	10.1 (11.4)
재정 수지	-1,695 (-1,686)	-1,834 (-1,906)	-139 (-220)	-8.2 (-13.0)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s) 조정(exclude)을 반영한 결과값

1) 6,126bn = 6,135bn - 63bn(2023회계연도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 2022회계연도에 지급된 규모)

2) 6,824bn = 6,752bn + 72bn(2024회계연도 지급분이 2023회계연도에 지급된 규모)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4," 2024. 10. 8, Table 1, p. 1를 재구성하여 작성

<표 9> 미국 FY2023 & FY2024 수입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Y2023 실적 (A)	FY2024 예비결산 (B)	증감 (B-A)	증감율 (B-A)/A
개인소득세	2,176	2,425	249	11.4
사회보험급여세	1,614	1,709	95	5.9
법인세	420	529	109	26.0
기타 소득	229	255	26	11.4
총계	4,896	4,918	479	10.8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4," 2024. 10. 8, Table 2, p. 3를 재구성하여 작성

- 사회보험급여세를 합한 수입 규모²⁰⁾는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소득(wages)과 정규직 근로자 소득(salaries) 모두 증가한 것에 기인
- 실업보험(사회보험급여세의 한 종류)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 감소
- 법인세는 전년 대비 26.0%(1,090억달러) 증가한 5,290억달러

- 법인세 증가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재난 재해에 영향 받은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 2023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 기한을 IRS가 2023년 11월²¹⁾까지 연기한 것에 일부 기인
- 기타 주요 수입 중 관세수입은 전년 대비 30억 달러(3%) 감소, 연준으로부터 전출된 잉여금²²⁾ 수입은 30억달러 증가

20) 환급액(refunds)을 제외한 원천징수(withheld)된 수입 규모: 4조 1,340억달러(개인소득세 + 사회보장급여세) - 환급액(7,960억달러) = 3조 3,380억 달러

21) 2024회계연도: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22) FAS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P.L. 114-94)법은 연방준비은행(FRB)의 잉여금이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재무부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출) 2024회계연도 세출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6조 7,520억달러 예비 추정

* Timing shifts²³⁾ 조정(exclude)을 반영할 경우, 전년 대비 약 11.4% 증가한 6조 8,240억 달러

- (주요 감소 분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코로나바이러스 환급형 세액공제, 연금급여 보장공사(PBGC)²⁴⁾ 예산 등이 전년 대비 큰 감소율을 보임

- 연방예금보험공사 예산은 전년 대비 56.5% 감소한 370억달러 집계

* 연방예금보험공사 예산²⁵⁾은 2023년 봄에 발생한 은행 파산²⁶⁾ 사태 해결을 위해 전년 대비 1,010억달러 증가한 920억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2024회계연도에는 추가로 4개의 은행 파산 건을 해결하면서 370억달러 지출 기록

- 일시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환급형 세액공제*(U.S. Coronavirus refundable credits²⁷⁾)는 전년 대비 98.1% 감소한 10억 달러 집계

* 예) 근로자의 병가 및 가족 휴가 비용, 직원 유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보험 지속 지원 등

- 연금급여보장공사 지출은 전년 대비 70.0%

하락한 120억달러 집계

* PBGC 지출 하락은 특정 다고용주연금계획(multi-employer pension plans)²⁸⁾에 대한 특별 재정 지원 프로그램(Special Financial Assistance Program)²⁹⁾에 따른 일회성 지급 지원의 감소에 기인

- (주요 증가 분야) 채무 순이자 지출을 포함한 주요 의무지출(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 모두 증가

- 교육부 예산은 전년(-410억달러*) 대비 3,080억달러 증가한 2,670억달러³⁰⁾

* 2022년에 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영향으로 2022회계연도에 3,790억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했으나,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³¹⁾로 동 정책이 실제 이행되지 않아 3,330억달러의 지출 감축(outlay savings)³²⁾ 발생으로 인해 전년도 수치가 마이너스로 집계됨

- 사회보장지출은 수혜자 및 생계비(cost of living) 조정에 따른 평균지급금액(average benefit payment)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8.0%(1,070억달러) 증가
- 메디케어는 가입자 수 증가와 수혜 금액 상승으로 순액 기준 약 9%³³⁾ 증가, 메디케이드*는 인당 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6% 증가

23) 지급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수입 지출의 이동이 직전 회계연도로 잡히는 경우

24) PBGC: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 「고용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P.L. 93-406)」에 근거하여 1974년에 설립된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 민간 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ension Plans)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역할을 수행함(단,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s)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5) FDIC 예산 연도별 실적 추이: (FY2022) - 90억달러 → (FY2023) 920억달러

26)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3월호, 2023. 4.' 참고

27) recovery rebates,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tax credits 등과는 다른 세액공제임

28) PBGC는 단일 고용주(single-employer) 연금 계획 및 다고용주(multi-employer) 연금 계획 등을 보장

29) 2021년에 입법된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의해 도입된 기존 연금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제도로, 해당 재정지원은 단일고용주 연금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일고용주 연금 계획은 다른 보호 장치(예, 자금 유연성을 위한 분할 상환 등)로 적용

30) 2023회계연도의 지출 감축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24회계연도 교육부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가 아닌 220억달러 감소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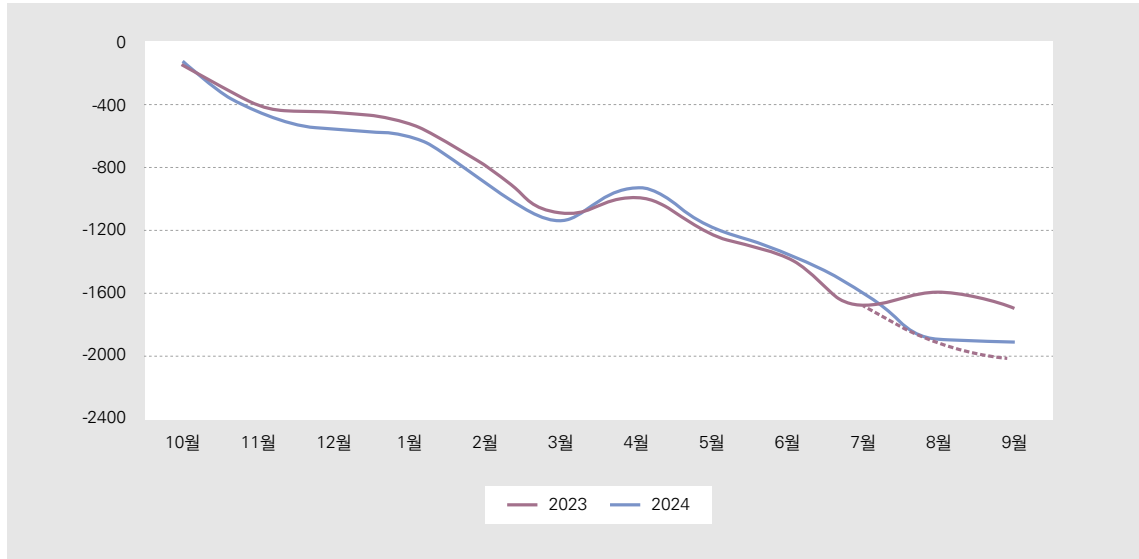
31)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7월호, 2023. 8.' 참고

32)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2023년 지출 감축분(3,330억달러)이 2022회계연도에 적자로 기록된 3,790억달러와 같지 않고 작은 이유는 2023년 6월에 최종 변경된 학자금 상환 정책(new Income-Driven Repayment plan)에 기인

33) timing shift 제외(exclude)한 경우의 증가율

[그림 2] 미국 월별 재정적자 누적 추이

(단위: 십억달러)



주: 1. 월별 수치는 기간(주말 등) 일정으로 인한 수입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s) 조정(exclude)
 2. 점선: 2023년 점선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의한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지출 감축 영향을 배제할 경우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4," 2024. 10. 8, p. 2

* 메디케이드의 경우 코로나 대유행 대응 입법³⁴⁾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대상 자격을 확대한 규정에 기인하여 2023회계연도에도 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확대가 2024회계연도에 종료(2024년 3월 31일)³⁹⁾되면서 1% 미만의 증가율을 보임

* Timing shifts 조정할 경우,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조 8,340억 달러

- 채무 순이자지출은 9,500억달러로 2023 회계연도에 특히(significantly) 높았던 고금리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
-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 8,340억달러 추정

-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수정예산안(MSR, 2024년 7월 발표) 전망 수치(1조 8,740억달러) 대비 2.1% 감소

■ 의회, 2025회계연도 임시 세출예산법안(Continuing Resolution; H.R. 9747)^{36), 37)} 발의 2차 시도(2024. 9. 23.)³⁸⁾에서 최종 확정(2024. 9. 25.)³⁹⁾

34)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
 35) 2023회계연도 정규 세출예산법(P.L. 117-328; 2022년 12월 29일 입법 발효)에서 규정
 36)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37) P.L. 118-83
 38)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Cole on CR: Congress is Responsible to Act," 2024. 9. 23.,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cole-cr-congress-responsible-act>, 검색일자: 2024. 9. 25.
 39)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9747," 2024. 9. 2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09/26/press-release-bill-signed-h-r-9747/>, 검색일자: 2024. 10. 29.

- (배경) 2025회계연도 임시예산에 대한 법안 표결(1차 시도: 2024년 9월 18일)⁴⁰이 부결된 후, 하원 공화당 세출위원장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2차 시도에서 가결된 것임
- (규모 및 만료시한) 동 임시 세출예산법안은 전년도(FY2024)에 준하는 규모로 만료 시한은 1차 시도 기간 대비 3개월 감축된 2024년 12월 20일까지(약 3개월)로 규정⁴¹
- (향후 전망) 대선 직후(2024년 11월 5일) 개편될 의회 구성과 다수당 확보 여부에 따라 정규 세출예산 또는 임시 세출예산의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임
 - 불가피한 이슈로 인해 의회가 12월 20일 자정까지 임시 세출예산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섯다운(government shutdown)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존재

원들이 연방 채무 및 재정적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당적(Bipartisan) 대응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 명령 연설(Special Order Speeches)⁴⁴에 참가

- (주요 내용)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 재정 절차의 개혁도 권고

- (긴급 지출) 재량 지출 한도(caps on discretionary spending)⁴⁵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

재량 지출을 긴급 지출로 분류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밝히고 의회예산처(CBO)의 예산 전망 시 긴급 지출의 비용 반영 방법을 지적

• 긴급 지출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소재 골프장 관개수로 재배치 비용 660만달러, 뉴욕주 마이너리그 야구경기장 재건축 비용 1,200만달러, 푸에르토리코 관광 마케팅 활성화 자금 7,000만달러를 언급

• 긴급 지출을 의회예산처(CBO)의 예산 분석에서 제외하여 예산 중립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

* 의회 예산처의 예산 전망은 관련 법⁴⁶에 의거 일회성 지출인 긴급 지출을 최초 지출 이후 10년 동안 발생 가정 및 물가 상승 반영하여 활용하므로 예산전망 기준선(Base-line)의 과다 추계 우려가 연설에서 제기됨

[기타]

- 미국 의회 하원 초당적 재정 포럼(BFF)⁴² 급증하는 연방 채무 문제의 해결 촉구 연설(2024. 9. 24.)⁴³
 - (개요) 2024년 9월 24일에 개최된 미국 하원 본회의(floor)에서 초당적 재정 포럼 소속 의

40) CRFB, "Appropriations Watch: FY2025," 2024. 9. 19., <https://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25>, 검색일자: 2024. 9. 23.

41) 해당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4년 9월호, 2024. 10.'을 참고하여 작성

42) Bipartisan Fiscal Forum, 2023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 기초하에 결성되었으며 연설 당시 87명의 하원 위원이 소속되어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됨

43) 미국 의회 하원, "Unsustainable Crippling Federal Deficit And Debt," Congressional Record Vol.170. No.149, 2024, 2024. 9. 24., <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cord/volume-170/issue-149/house-section/article/H5736-2>, 검색일자: 2024. 10. 17.

44) 특별 명령 연설은 의정활동이 종료된 후 회의 마지막에 진행되는 자유 연설로, 하원에서 비입법적 토론이 허락되는 드문 기회 중 하나임

45) 「2023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23)」에 의거하여 재량지출에 설정된 지출 한도로, 규정된 상한을 초과하는 지출만큼 강제삭감(Sequestration)이 이루어짐

46)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절차 개선) 지출과 수입을 포괄하는 예산 법안의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예산 결의안 및 예산안의 통과 절차의 효율화 제안

- 현재 의회의 의결(투표)하에 통과되는 예산(재량 지출)은 전체 재정 지출의 23%에 불과함을 강조하며, 모든 지출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결할 수 있도록 확대 제안

- 2003년 이후 의회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한 바 없음을 강조하며 예산 절차의 효율화 제안

* 예산 결의안과 예산안을 모두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킨 최근 해는 1977년임

- (예산 중립성 확보) 세입 감소나 지출 확대를 유발하는 정책 추진 시 세입 증대 혹은

지출 감소에 기여 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적 악영향을 상쇄하는 페이고(PAY-GO)절차의 중요성을 회부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노토반도 지진 복구 및 부흥 관련 예비비 사용 예정 내역 발표 (2024. 10. 11.)⁴⁷⁾

- 이번 발표된 예비비 사용 예정 내역에서는 노토반도 지진 복구 및 부흥과 관련하여 509억 엔 규모의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
- 긴급임시주택 복원 및 피난소환경 개선 26억

<표 10> 일본 노토반도 지진 재해자의 생활과 생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 관련 예비비 사용 내역

(단위: 억엔)

구분	금액			
	2024년 4월 23일	2024년 6월 28일	2024년 9월 10일	2024년 10월 11일
긴급임시주택 제공	683	282	-	-
긴급임시주택 복원, 피난소환경 개선	-	-	-	26
복지·개호(간병)서비스 제공 체제 긴급 정비 사업	16	-	-	-
재해폐기물 처리	-	226	-	155
지역복지추진지원 임시특례교부금 ¹⁾	-	-	53	-
농림수산업 종사자 지원	44	21	75	-
공공 토목 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등	647	867	960	328
합계	1,389	1,396	1,088	509

주: 1) 이시카와(石川)현 노토반도(能登半島) 6개 지역에서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반파 이상 피해가 발생한 고령자 또는 장애인 거주 세대 등에 대해 주택 재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출처: 이시카와 임시특례교부금 홈페이지, <https://ishikawarinjitokurei-kyufukin.com>, 검색일자: 2024. 10. 21.)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能登半島地震に係る被災者の生活と生業支援のためのパッケージに基づく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4. 23.; 「令和6年能登半島地震に係る被災者の生活と生業支援のためのパッケージに基づく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6. 28.; 「令和6年能登半島地震に係る予備費使用(第6弾)について」, 2024. 9. 10.; 「能登地域の復旧・復興に向けた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10. 11.를 참고하여 작성

47) 일본 재무성, 「能登地域の復旧・復興に向けた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10. 11.,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nt241011.pdf, 검색일자: 2024. 10. 21.

엔, 재해폐기물 처리 155억엔, 공공 토목 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등 328억엔 등을 사용할 예정

- 2024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일반 예비비 1조엔 중 노토반도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예비비의 총액은 4,382억엔 규모(이번에 발표된 예비비 사용 예정 금액 509억엔 포함)이며, 노토반도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사용한 예비비의 누적금액(2023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포함)은 6,640억엔 규모



독일

[예산·결산 등]

-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7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⁴⁸⁾ 결과 발표(2024. 10. 24.)⁴⁹⁾
 - 제167차 세수추계는 연방 정부의 2024년 가을 전망 거시경제적 주요 수치를 기반으로 하며, 전체 세입은 5월 세수추계의 추정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0.2%, 2025년

<표 11> 독일의 제167차 세수추계 결과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방 정부	금액	356.0	372.2	389.7	397.3	410.3	425.8
	전년 대비 증감률	5.6	4.5	4.7	2.0	3.3	3.8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3.4	0.7	-3.0	-4.3	-2.6
주 정부	금액	382.6	392.1	406.3	422.3	438.2	453.4
	전년 대비 증감률	-0.5	2.5	3.6	4.0	3.8	3.5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2.3	-4.7	-4.4	-5.3	-6.2
지방자치단체	금액	141.6	145.2	151.6	159.3	165.4	171.1
	전년 대비 증감률	4.6	2.5	4.4	5.1	3.9	3.4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0.6	-1.0	-0.1	-0.4	-0.6
EU	금액	35.4	32.0	34.9	46.0	49.2	46.8
	전년 대비 증감률	-8.2	-9.6	9.0	31.7	6.9	-4.8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2.4	-7.7	-4.1	-1.7	-4.0
총 세수	금액	915.8	941.6	982.4	1,024.9	1,063.2	1,097.1
	전년 대비 증감률	2.2	2.8	4.3	4.3	3.7	3.2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8.7	-12.7	-11.6	-11.7	-13.4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7.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1," 2024. 10.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7-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6, 검색일자: 2024. 10. 29.; "Ergebnis der 167.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2," 2024. 10.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7-steuerschaetz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6, 검색일자: 2024. 10. 29.

48) 독일은 연 2회 세수추계 결과를 발표함. 재무부를 비롯해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5개 경제연구소, 연방 통계청, 연방 중앙은행, 거시경제자문위원회, 주정부 재무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세수추계를 담당

49)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7. Steuerschätzung" 보도자료, 2024. 10. 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10/2024-10-24-ergebnisse-der-167-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4. 10. 29.; 독일 연방 정부, "Langfristig geringere Einnahmen," 2024. 10. 2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euerschaetzung-oktober-2024-2317500>, 검색일자: 2024. 10. 29.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1.1%, 2026년 1.6%로 예상되며, 향후 외부경제력 강화와 민간 소비 증가가 경제모멘텀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음

- 세수추계 결과, 2024년 총세입은 9,416억유로로 직전 추계(2024년 5월) 대비 87억유로, 2025년은 127억유로 하향조정
 - 연방정부의 세입은 올해 34억유로의 세수결손을 기록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직전추계보다 7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8년까지 전체 주(州)에서의 국세 수입은 약 58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총임금의 증가율은 분 전망과 유사하나, 기업 및 투자 소득은 분 전망보다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주택투자나 매매에 대한 세금 역시 분 추정치 대비 부정적

[기타]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4년 가을 공동 경제 전망(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4)」 발표(2024. 9. 26.)⁵⁰⁾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ifo Institut, 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IfW Kie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IWH), RWI Essen)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 2회 공동 경제전망을 발표해 연방정부의 경제전망에 지침을 제공

- (경제성장률)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0.1%, 2025년에 0.8%, 2026년 1.3%로 전망
 -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4년 봄 경제전망 전망치와 동일하며, 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6%p 하향 조정됨
 - 독일경제는 탈탄소화, 인구 고령화,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회복이 더딘 상태이며, 앞으로 여러 분기에 걸쳐 천천히 회복될 전망
 - 2024년과 2025년의 재정정책은 다소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성장 이니셔티브⁵¹⁾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임
 - (물가) 2024년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2.2%로 예상되며, 2025년과 2026년에는 2.0%로 감소할 전망
 -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4년 2.7%, 2025년 2.4%로 전망
- (노동시장) 2024년과 2025년의 실업률은 6%로 유지될 전망이며, 2026년에 5.7%로 감소
 -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는 유지될 전망
- (재정수지) 202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1%로 감소하고, 2025년과 2026년에

50)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4: Deutsche Wirtschaft im Umbruch - Konjunktur und Wachstum schwach," 2024. 9. 26.,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4/09/26/gemeinschaftsdiagnose-herbst-2024-deutsche-wirtschaft-im-umbruch-konjunktur-und-wachstum-schwach/>, 검색일자: 2024. 10. 14.; Gemeinschaftsdiagnose, "PRESSEMITTEILUNG DER GEMEINSCHAFTSDIAGNOSE 2/2024," 보도자료, 2024. 9. 26.,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4/09/iwh-press-release_2024-26_Gemeinschaftsdiagnose_2-24_de.pdf, 검색일자: 2024. 10. 14.

51) 양질의 일자리 제공, 탈탄소화 구현 등을 통해 독일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9개조치로 구성된 독일의 경제성장 패키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2024년 7월호 및 2024년 9월호 참고

<표 12> 2024년 가을 공동 경제전망(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단위: %, 천명,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1.4	-0.3	-0.1	0.8	1.3
취업자 수(천명)	45,675	46,011	46,176	46,244	46,267
실업률(%)	5.3	5.7	6.0	6.0	5.7
소비자물가상승률(%)	6.9	5.9	2.2	2.0	2.0
일반정부 재정수지(십억유로)	-84.9	-107.5	-92.3	-82.5	-85.8
(GDP 대비 %)	-2.1	-2.6	-2.1	-1.9	-1.9
경상수지(십억유로)	174.5	248.7	283.1	276.9	267.8
(GDP 대비 %)	4.4	5.9	6.6	6.3	5.9

주: 2024~2026년도는 전망치

출처: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4: Deutsche Wirtschaft im Umbruch - Konjunktur und Wachstum schwach," Tabelle 2.4 p. 35 검색일자: 2024. 10. 14.

<표 13> 독일의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합계
지출					
2024년 상반기	285.1	270.6	185.7	428.5	992.9
2023년 상반기	311.7	259.6	167.6	401.8	965.8
2022년 상반기	264.9	250.0	151.0	399.7	874.3
수입					
2024년 상반기	249.5	263.6	168.4	420.0	924.6
2023년 상반기	247.4	259.5	160.3	397.3	889.7
2022년 상반기	219.7	267.8	149.4	395.7	841.4
재정수지					
2024년 상반기	-35.5	-7.1	-17.3	-8.5	-68.4
2023년 상반기	-64.2	-0.1	-7.3	-4.4	-76.1
2022년 상반기	-45.2	17.8	-1.6	-3.9	-32.9

주: 2023년은 잠정치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steigt im 1. Halbjahr 2023 auf 76,1 Milliarden Euro," 2023. 10. 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10/PD23_396_711.html, 검색일자: 2023. 10. 19.

는 1.9%로 더욱 감소할 전망

- (위험요인) 경제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 구조적 변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그리고 세계 경제와의 연관성에서 발생하는 외부 리스크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

■ 연방 통계청, 2024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⁵²⁾ 잠정실적 발표(2023. 10. 4.)⁵³⁾

- (지출) 2024년 상반기 지출은 9,929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
- 연방정부 이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87억

52) 공공부문 총예산은 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법적 사회보험 부문이 통합된 개념임

53)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im 1. Halbjahr 2024 bei 68,4 Milliarden Euro," 2024. 10. 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0/PD24_380_711.html, 검색일자: 2024. 10. 10.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유로(-29.7%) 감소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16억유로(35.9%) 증가
- 49유로티켓(Deutschlandticket)⁵⁴⁾의 도입
으로 2023년 2분기부터 대중교통 회사들이
공공부문 예산 통계에 포함되면서 2024년
상반기 인건비가 크게 증가
- (수입) 2024년 상반기 수입은 9,246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 상반기 공공부문 전체의 조세수입⁵⁵⁾은 약
7,900억유로를 기록해 전년 동기(7,573억유
로) 대비 4.3% 증가
- (재정수지) 2024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의
재정적자는 약 684억유로로 전년 동기(761억

- 유로) 대비 적자 규모가 10.1% 감소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 전 부
문에서 적자를 기록함
- 2024년 상반기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55
억유로로 2023년 상반기 642억유로 대비
크게 감소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4년 가을 경제
전망」 발표(2024. 10. 9.)⁵⁶⁾
- (개요) 독일의 로버트 하백 연방 경제기후보호
부 장관은 10월 9일, 「2024년 가을 경제전망」
을 발표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는 매년 봄과 가

◀표 14> 독일의 2024년 가을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0.3	-0.2	1.1	1.6
가계최종소비	6.3	2.8	3.1	3.1
정부최종소비	4.1	5.2	2.8	3.2
총고정자본형성	-1.2	-3.4	0.7	3.5
설비	-0.8	-6.8	1.4	5.3
건설	-3.4	-3.9	-0.6	2.6
기타	4.7	4.2	3.2	3.0
내수	-0.4	-0.6	1.1	1.7
수출 증가율	-0.3	-0.1	1.7	2.8
수입 증가율	-0.6	-1.2	1.9	3.1
실업률(연방 고용청 기준)	5.7	6.0	5.9	5.5
고용	0.7	0.4	0.3	0.3
소비자물가상승률	5.9	2.2	2.0	1.9

출처: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4," 2024. 10. 9.,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41009-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4.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4. 10. 15.

54) 에너지 가격 급등을 고려해 국민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월 49유로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대중교통 이용권

55) 조세 및 조세와 유사한 수입을 의미

56)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Herbstprojektion: Bundesregierung rechnet mit Belebung der Wirtschaft im kommenden Jahr," 2024. 10. 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10/20241009-herbstprojektion.html>, 검색일자: 2024. 10. 15.;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4," 2024. 10. 9.,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41009-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4.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4. 10. 15.

에 세수 추계, 예산 편성 관련 거시경제 지표 기준, EU 제출 보고서 등의 기초가 되는 경제전망을 발표

- (경제전망) 산업생산, 기업여건 등의 지표를 보면 2024년 하반기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부터 점차 회복될 전망
 - (GDP)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0.2%에서 경제활동 회복을 통해 2025년 1.1%, 2026년 1.6%로 점차 개선될 전망
 -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및 금리 하락, 실질소득 증가, 민간소비, 해외 공산품 수요, 투자활동 등이 회복되고, 연방정부의 성장 이니셔티브 조치에 따른 효과도 발현될 전망
 - 특히, 인금인상, 물가상승률 하락, 세금감면 등으로 인한 가계 구매력 증가로 민간 소비가 다시 확대될 전망
 - (물가)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2%에서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2.0%, 1.9%로 점차 하락할 전망
 - 물가상승률 하락의 요인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 긴축적 통화정책 등이 있음
 - (노동시장) 경기 회복은 노동 수요의 새로운 증가를 동반하고, 성장 이니셔티브 활성화와 함께 2025년부터 노동시장은 역동적으로 발전할 전망

■ 독일 연방 재무부, 「2025년 독일 재정계획안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5)」 발표 (2024. 10. 16.)⁵⁷⁾

- (개요) 독일 연방 재무부는 10월 15일에 ‘독일 재정계획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EU 규정에 따라 유로화 도입 국가들은 매년 EU 집행위원회에 차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
 - 「독일 재정계획안」은 연방정부의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안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주요 변화와 계획을 반영
- (재정전망) 독일의 명목 GDP 성장률⁵⁸⁾은 2024년 3.0%, 2025년 2.8%로 전망되며 2028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 2024년에는 GDP 대비 2.5%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1.75%로 줄어들고 이후 2026~2028년까지도 재정적자는 감소세를 보일 것
 - 에너지 가격 안정화 조치의 만료로 2024년부터 공공재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경제회복에 따라 구조적 재정수지가 2023년 -2%에서 2025년 -1%로 개선
 - 또한 2024년까지 빠르게 증가했던 순지출 증가율은 2025년 약 2.25%로 이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57)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5*, 2024. 10.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5.html, 검색일자: 2024. 10. 17.

58)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0.3%, 2025년 1.0%

<표 15> 2025년 독일 재정계획안의 주요 지표

(단위: GDP 대비 %,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2.6	-2.50	-1.75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2.0	-1.75	-1.00
일반정부 국가채무	62.9	63.25	63.25
순기초지출 증가율	5.0	3.75	2.25

주: 0.25%p를 기준으로 반올림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5*, 2024. 10. 16., table 1; table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5.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4. 10. 17.

은 2024년과 2025년 63.25%를 기록하고, 2026~2028년 동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할 전망

- (안정성장협약 준수) 보고서는 독일이 EU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규정을 준수하며, 재정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SGP의 개정에 따라 구조적 재정수지 대신 총지출 증가율이 주된 재정 지표로 전환

- 독일은 순지출 증가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기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면서 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음

- (지출 증가율 기준) 순기초지출 증가율은 2024년 3.75%에서 2025년 2.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 요건⁵⁹⁾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2024년 GDP 대비 1.75%였던 구조적 적자가 2025년에는 1.0%까지 줄어들어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투자) 2025년 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GDP의 약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2023년 GDP의 2.8%)
- 민간 투자는 총투자의 약 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과 2025년 정부 투자 보조금은 2023년 GDP의 1.5%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프랑스

- 프랑스 재무부, 2025년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PLF 2025) 발표(2024. 10. 10.)^{60), 61), 62)}

59)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 목표치를 기반으로 계산된 순기초지출 증가율 상한 목표로, 순기초지출은 이자지출, 재량적 수입 조치 등을 조정한 지출임
 60)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LF 2025," 2024. 10. 10., <https://presse.economie.gouv.fr/presentation-du-plf-2025/>, 검색일자: 2024. 10. 15.
 61)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et du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pour la Sécurité sociale 2025," 2024. 10. 10.,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presentation-du-projet-de-loi-de-finances-pour-2025-et-du-projet-de-loi-de-financement>, 검색일자: 2024. 10. 15.
 62)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2024. 10. 14., <https://www.vie-publique.fr/loi/295632-budget-2025-projet-de-loi-de-finances-plf>, 검색일자: 2024. 10. 15.

<표 16> 프랑스 2025년 예산법안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GDP(십억유로)	2,822	2,921	3,005
실질 GDP 성장률	1.1	1.1	1.1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0.9	0.7	1.3
수출 증가율	2.5	2.1	3.4
수입 증가율	0.7	-1.1	2.6
소비자물가상승률	4.8	2.0	1.8

출처: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Chiffres clés, p. 13, 2024. 10. 10.**<표 17> 프랑스 2025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정수지(Déficit public)	-5.5	-6.1	-5.0
재정지출(Taux de dépenses publiques (hors CI))	43.2	42.8	43.6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56.4	56.8	56.4
공공채무(Dette publique)	109.9	112.9	114.7

출처: 프랑스 재무부, *Dossier de presse-Projet de loi de finances 2025*, p. 6, 2024. 10. 10.

- (경제전망) 프랑스는 2024년과 2025년 1.1%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4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민간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물가 안정의 영향으로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5년) 내수 확대와 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 증가로 1.1%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는 원자재 가격과 무역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정수지 전망)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6.1%에서 2025년 5.0%로 다소 개선될 전망
 -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6.1%로 2023년보다 0.6%p 악화될 전망
 - (2025년) 프랑스 2025년 예산법안은 2025년 GDP 대비 재정적자 5.0%를 목표로 함
 - 2029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중기 목표로 함
- (공공채무 전망)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5년 114.7%로 2024년 112.9%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감축 조치) 2025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는 총 600억유로로 GDP의 2%에 해당함
 - 600억유로 중 2/3에 해당하는 400억유로는 재정지출 삭감에서 발생
 - 200억유로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수 조치에서 발생
- (재정지출 삭감) 재정지출 삭감 노력은 모든 정부 부문을 통해 시행
 -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약 57%로 유럽 국가 평균이 50% 미만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
 - 중앙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지출 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획 대비 총 215억유로의 지출을 절감

- 사회보장부문에서 의료비 지출 효율성에 대한 비용 절감 노력으로 추세에 비해 약 40억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해 148억유로 절감
- 지방정부는 재정적자 통제를 위한 노력으로 50억유로 절감

- (세수 증대 조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일시적인 세수 조치를 통해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은 2024년 42.8%에서 2025년 43.6%로 증가할 전망
 - (법인세)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수 조치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정됨
 -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출액 10억유로 이상 30억유로 미만 기업은 법인세의 20.6%, 매출액 30억유로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의 41.2%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⁶³⁾ 약 400개 기업이 해당될 전망으로, 이러한 조치로 2025년 80억유로, 2026년 40억 유로의 세수 증대가 예상됨
 - 매출액이 10억유로를 넘는 해운업체에 대해 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9%, 2026년 5.5%의 세율이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2025년 5억유로, 2026년

3억유로 세수 창출

- (소득세) 초고소득자에 대한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증세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
 - 1인가구의 경우 연 소득 25만유로, 부부의 경우 50만유로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최저 소득세율을 20%로 조정⁶⁴⁾

- 프랑스 재무부,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PLFSS 2025) 발표(2024. 10. 10.)^{65), 66)}
 - 2025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는 160억유로 적자로 전망되며, 이는 2024년 180억유로보다 20억유로 개선된 수치
 -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397억유로를 기록하였고, 이후 경제 활동의 재개와 코로나19 관련 비용의 점진적 철폐로 재정적자는 2021년 243억유로, 2022년 197억유로, 2023년 108억유로로 개선됨
 - 2024년에는 물가와 연동되는 연금 급여 지출의 상승으로 2023년보다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
 - 2025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

63) 기본 법인세율은 25%이고, 매출액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기본 법인세 외에 추가 기여세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됨

64) 최소한의 소득세 비율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다양한 소득 공제나 세금 감면을 통해 실제 소득세율이 20% 미만으로 낮아진 가구에 대해 공제를 제한하거나 특정 세율을 더해 실제로 최소 20%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함

65)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et du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pour la Sécurité sociale 2025," 2024. 10. 10.,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presentation-du-projet-de-loi-de-finances-pour-2025-et-du-projet-de-loi-de-financement>, 검색일자: 2024. 10. 15.

66)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4. 10. 14., <https://www.vie-publique.fr/loi/295695-plfss-2025-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 검색일자: 2024. 10. 16.

<표 18> 프랑스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재정수지 전망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강보험(Maladie)	-1.5	-30.5	-26.1	-21.0	-11.1	-14.6	-13.4
산재보험(AT-MP)	1.1	-0.1	1.3	1.7	1.4	0.7	0.2
국립노령연금기금(Vieillesse)	-1.3	-4.9	-1.1	-3.9	-2.6	-6.3	-3.1
가족수당국가기금(Famille)	1.5	-1.8	2.9	1.9	1.0	0.4	0.0
자율연대국가기금(Autonomie)	-	-	0.3	0.2	-0.6	0.9	-0.4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1.6	-2.5	-1.5	1.3	1.1	0.8	0.7
사회보장부문(ROBSS+FSV)	-1.7	-39.7	-24.3	-19.7	-10.8	-18.0	-16.0

출처: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4. 10. 10.

DAM)⁶⁷⁾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2,640억 유로로 설정

- 의료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의료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35억유로의 새로운 조치 시행
- 의료비 지출 효율성 제고 및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 약 40억유로의 예산 절감 효과 예상

● 의료 접근성, 완화 의료, 정신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2024년 12월부터 주치의 진료비를 기존 26.5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
 - 원격 진료 및 이동 진료 버스 개발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

- 완화의료⁶⁸⁾ 강화를 위한 10년 전략 시행
 - 2034년까지 각 지역에 소아 완화 의료 병

동 설립

- 202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완화 의료 병동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완화의료 교육 역량 확대를 통해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완화의료 방식을 더 잘 이해하도록 지원

- 정신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지원

- 심리 치료 프로그램(Mon Soutien Psy)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기존 성인 대상에서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

[기타]

■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신임 총리, 주요 개혁 및 정책 방향 발표(2024. 10. 1.)^{69), 70)}

67)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차년도 건강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의미함

68)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팀이 통증 등 환자의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출처: 서울대학교 암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 http://cancer.snuh.org/board/B034/view.do?bbs_no=3666&searchKey=all&searchWord=&pageIndex=1)

69) 프랑스 정부, "Ce qu'il faut retenir d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e Michel Barnier," 2024. 10. 1., <https://www.info.gouv.fr/actualite/ce-quil-faut-retenir-d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de-michel-barnier>, 검색일자: 2024. 10. 8.

70) 프랑스 정부,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evant le Sénat," 2024. 10. 2., <https://www.info.gouv.fr/actualite/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du-premier-ministre-au-senat>, 검색일자: 2024. 10. 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9월 5일 미셸 바르니에를 신임 총리로 선임함⁷¹⁾ 신임 총리는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개혁 및 조치를 의회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이 있음⁷²⁾

- 프랑스 총리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안전 강화, 이민 문제 해결, 사회적 연대 증진 등 다섯 가지 정부 우선순위를 포함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

- (국민 생활 수준 향상) 주택 임대료 및 교통비 부담 경감, 식량 주권 확보와 농업 지원, 고용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 (공공서비스 개선) 교육 부문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며, 의사 수를 늘리고 원격 의료를 지원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

- (안전 강화) 치안 강화, 범죄 예방 및 법 집행 개선

- (이민 문제 해결) 불법 이주민 추방 명령이 보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민 관리 체계 개혁 및 합리적 통합 정책 추진

- (사회적 연대 증진) 장애인, 빈곤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을 강화

- 현재 GDP 대비 6% 수준인 재정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강조

- 재정지출 증가율 통제 및 보다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노력

-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금 인상

- 생태학적 전환 및 에너지 혁신에 대한 우선순위 강조

■ 프랑스 재무부, 2025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 2025) 발표(2024. 10. 23.)⁷³⁾

* EU 규정에 따라 유료화 사용 국가들은 매년 EU 집행위원회에 차년도 예산 목표, 경제성장률, 재정전망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함

- (경제전망) 프랑스는 2024-2025년 1.1%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4년)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2024년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할 전망

-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물가상승률은 2023년 4.9%에서 2024년 2.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가계 소비 증가로 2025년 경제성장률은 1.1%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 안정이 예상되어 물가상승률은 1.8%로 안정화될 전망

- 고금리와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기업투자와 공공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도 잔존

71) 프랑스 법률 사이트, “Décret du 5 septembre 2024 portant nomination du Premier ministre,” 2024. 9. 6.,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50185112>, 검색일자: 2024. 10. 8.

72) 프랑스 정부, “Qu'est-ce qu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2022. 7. 5., <https://www.info.gouv.fr/actualit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 검색일자: 2024. 10. 8.

73) EU 집행위, “Draft budgetary plan France 2025,” 2024. 10. 23.,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preventive-arm/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5_en?prefLang=sv#france, 검색일자: 2024. 10. 24.

<표 19> 프랑스 2025년 재정계획안 경제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질 GDP 성장률	1.1	1.1	1.1	1.40	1.50	1.50
소비자 물가 상승률	4.8	2.0	1.8	1.75	1.75	1.75

출처: EU 집행위, "Draft budgetary plan France 2025," 2024. 10. 23.

- (재정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6.1%에서 2025년 5.0%로 낮아질 전망
 - (2024년) 전망보다 낮은 세수로 인해 2024년 재정적자는 GDP의 6.1%로 전망
 -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4년 112.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세수 회복과 지출 절감 정책을 반영해 2025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5.0%로 감소할 전망
 - 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 지출 절감 노력을 통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낮추고, 2029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
 - 2025년 GDP 대비 공공채무는 114.7%로 증가할 전망
- (주요 정책) 정부의 정책 전략은 프랑스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장

- 생태학적 전환 및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산 및 소비 수단의 탈탄소화를 추진
- 급여 인상을 장려하고 고용을 촉진해 프랑스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
- 경쟁력, 혁신, R&D를 강화하여 경제 역동성을 강화
-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교육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보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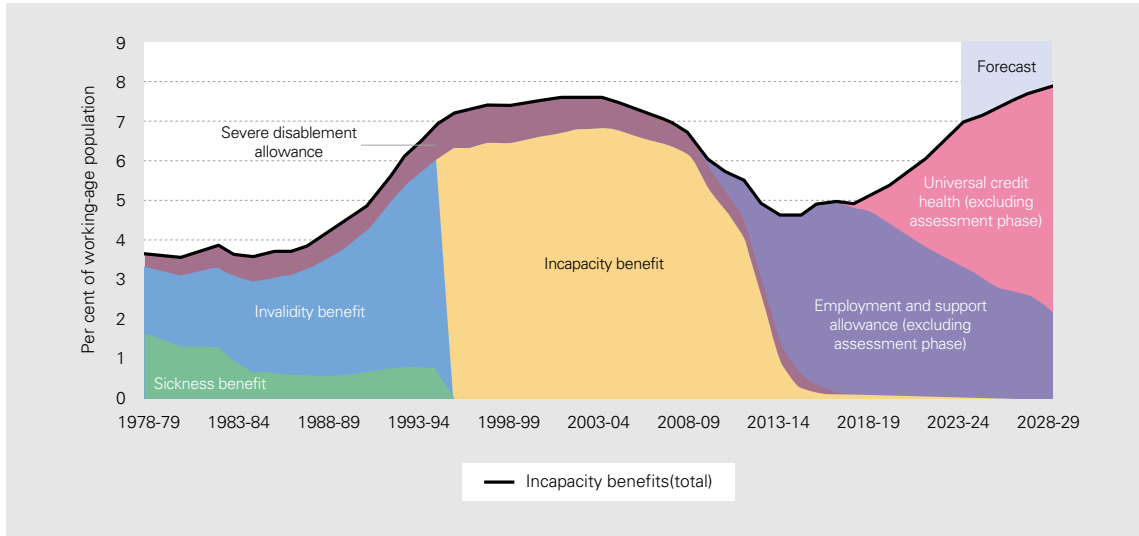
- 영국 예산책임청(OBR), 「2024 복지 지출 보고서 (Welfare trends report - October 2024)」⁷⁴⁾ 발표 (2024. 10. 9.)⁷⁵⁾
 - (개요)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s)의 역사와 2010년 이후 수급자 유입과 유출에 대해 분석
 - 장애급여는 건강 악화로 인해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생산 가능 연령대 사람들을 위한 소득 대체 수단
 - (장애급여 역사) 장애급여는 상병급여(invalidity benefit),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로 변화
 - (1980~1990년대 중반) '상병급여(IVB)' 도입으로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일

74) 재정준칙에 복지 지출 한도(welfare cap)에 대한 규정이 2015년에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복지 지출 추세와 동인에 대한 분석을 예산책임청에 요청하였고, 이에 예산책임청은 2015년부터 1~2년마다 복지 지출 보고서를 발표

75)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Welfare trends report - October 2024," Publications, 2024. 10. 9., <https://obr.uk/wtr/welfare-trends-report-october-2024/>, 검색일자: 2024. 10. 11.

[그림 3]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추이

(단위: %)



주: Severe disablement allowance는 중증 장애수당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출처: OBR, *Welfare trends report - October 2024*, 2024, p. 5, Chart 1.

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단기 병가급여(shorter-term sickness benefit)를 통해 보완

- 1980년대 초반에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보였으나, 1984-85회계연도에 3.6%에서 1994-95회계연도에는 6.9%로 빠르게 증가

- (199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1995년에 상병급여와 병가급여를 대체하는 ‘장애급여 (IB)’를 도입

- 이전 상병급여와 달리 관대성(generosity)이 감소하고 새로운 의료 검사가 도입되면서 수급자격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는 수급자 유입 감소에 기여

- (2000년대 후반~2010년대 후반) 2008년부터 신규 청구에 대해 ‘고용·지원수당’(ESA)이 이전 장애급여를 대체하였고, 기존 장애급여 청구자는 2010년대 초반까지 고용·지원수당 수급자격에 대해 점진적으로 재평가

- 기존 장애급여 수급자의 자격 재평가를 통해 수급자 유출이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8-09회계연도에 6.7%에서 2017-18회계연도에 4.9%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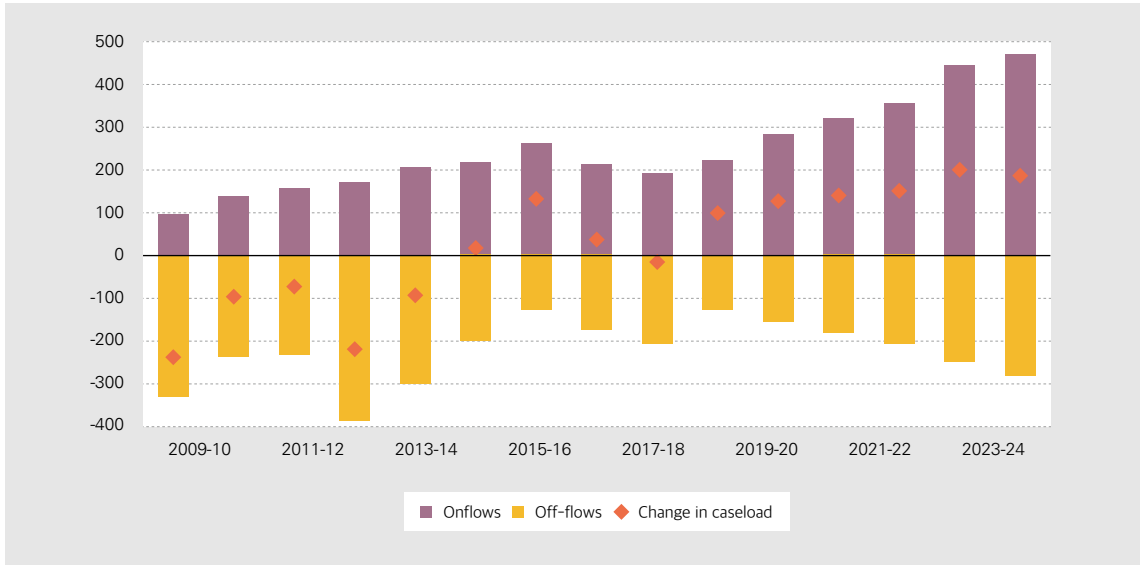
- (2010년대 후반~2020년대 후반) 2016년부터 ‘통합급여(UC)⁷⁶⁾가 고용·지원수당을 대체

- 이전 제도 변경에 있었던 평가 제도, 관대

76) 4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 소득보조, 주거급여)와 2개의 조세급여(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로, 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에 도입

[그림 4] 장애급여 수급자 수와 유입·유출의 연간 변화

(단위: 천명)

출처: OBR, *Welfare trends report - October 2024*, 2024, p. 6, Chart 2.

성 등에서 변화는 없었으나, 2017년에 경
중 장애 그룹에 대한 급여를 삭감

- (장애급여 유입·유출) 2008-09회계연도와 2023-24회계연도 사이에 장애급여 수급자 수는 34만명(13.2%) 증가
 - 2010년대 초반에는 비교적 높은 유출로 인해 수급자 수가 감소(연평균 14만 5천명)
 - 유출 증가는 새롭게 도입된 근로역량평가에 주로 기인하는데, 2011-12회계연도와 2014-15회계연도 사이에 130만건의 수급 자격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5만 명의 청구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평가

- 2018-19회계연도 이후에는 유입이 유출을 넘어서면서 수급자 수가 증가(연평균 16만명)

- 2022-23회계연도 유입 규모는 2018-19회계연도에 비해 27만명 증가하였는데, 유입 증가 요인을 급여 청구 프로세스의 세 단계*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초기 급여청구, 중도탈락(근로역량평가의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철회),⁷⁷⁾ 승인(근로역량평가에서 자격을 인정)

- 영국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 평가 보고서(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4)」⁷⁸⁾ 발표(2024. 10. 10.)⁷⁹⁾

77) 중도탈락의 유형으로 청구 후 최종 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중도 탈락하는 경우,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증빙하는 fit note가 만료되었으나 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청구 후 중간에 건강이 호전된 경우 등이 있음

78) 예산책임청은 2011년부터 「경제·재정 전망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제·재정 전망의 정확성을 매년 평가

79)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4," Publications, 2024. 10. 10., <https://obr.uk/fer/forecast-evaluation-report-october-2024/>, 검색일자: 2024. 10. 1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개요) 2023년 3월에 수행한 2023-24회계연도 경제·재정 전망과 실적치를 비교·분석⁸⁰⁾
- (경제전망 평가) 2023-24회계연도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4.1%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평균 5.7%를 기록
 - 전망 대비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원인은 식품 및 기타 교역재 물가가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였고, 예상보다 높은 명목 소득으로 인해 비교역재 물가상승률이 전망 대비 0.9%p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
 - (노동시장 및 생산성) 총근무 시간 측면에서 전년 대비 노동공급 증가율은 전망과 실적이 대체로 일치(0.0%), 이는 노동시장 상황이 전년 대비 덜 완화되었음을 시사
 - 총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성장률은 -1.5%로 전망하였으나 예상보다 훨씬 높은 3.0%를 기록, 이는 부분적으로 명목 임금 성장률이 높은 물가상승률에 예상보다 더 크게 반응했기 때문
 - (실질 GDP)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전망치(0.2%)와 매우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구성은 다소 상이
 - 전망치는 민간소비 -0.4%p, 기업투자 -0.4%p, 순무역 -1.4%p, 민간 주거용 투자 -0.4%p, 정부 소비 및 투자 1.3%p, 기타 1.4%p로 구성
 - 실적치는 민간소비 0.1%p, 기업투자
- 0.3%p, 순무역 -0.5%p, 민간 주거용 투자 -0.4%p, 정부 소비 및 투자 0.7%p, 기타 -0.2%p로 구성
- (재정전망 평가) 2023-24회계연도 공공부문 순차입 및 순채무의 전망치와 실적치를 비교
 - (순차입) 공공부문 순차입은 1,316억파운드(GDP 대비 5.1%)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1,203억파운드(GDP 대비 4.4%)를 기록하여 112억파운드를 과대 예측
 - 2023년 3월 이후 정책 변경으로 인해 순차입이 85억파운드 증가
 - 피고용자의 사회보험기여금 삭감으로 수입 감소(16억파운드), 국가의료서비스(NHS) 급여 상승으로 지출 증가(69억파운드)
 -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순차입이 149억파운드 감소
 -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명목 소득으로 인한 수입 증가, 가스 및 전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세금 수입 감소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수입이 260억파운드 증가
 - 높은 물가상승률과 이자율로 인한 채무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지출이 111억파운드 증가
 - Onshore 기업⁸¹⁾에 대한 높은 실효세율 반영, 공공부문 총투자 증가 등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순차입이 48억파운드 감소
- (순채무) 공공부문 순채무는 GDP 대비

80) 예산책임청의 전망은 OBR macroeconomic model을 활용하는데, 여기에는 국민계정의 항등성과 정의를 명시하는 방정식, 계량경제학적 방정식, 전망 가정에 기반한 방정식 수식계를 포함(출처: OBR, *The macroeconomic model*, Briefing paper No. 5, 2013. 10.)

81) Onshore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으로, onshore 아웃소싱이란 기업이 동일한 국가 내의 다른 회사에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의미

103.1%로 전망하였으나 실적치는 98.1%를 기록하여 5.0%p 과대 예측

- 전망 대비 높게 나타난 명목 GDP가 예측 오차의 4.7%p를 설명하고, 현금주의 적용에서 0.3%p의 오차 발생



호주

[예산·결산 등]

■ 호주 연방정부, 2023-24회계연도⁸²⁾ 결산보고서

발표(2024. 9. 30.)⁸³⁾

- (현금주의) 2023-24회계연도 일반정부 부문 연방정부의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158억호주달러(GDP 대비 0.6%) 흑자를 기록하여 2024-25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4억호주달러 개선됨
- 2022-23회계연도에 221억호주달러 흑자에 이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 통화정책 지원에 따른 정부의 책임감 있는 예산관리의 결과임을 강조

<표 20> 2023-24회계연도 호주 재정수지 결산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2024-25 예산 편성 당시 2023-24 전망 (A)	2023-24 결산 (B)	(B)-(A)
수취(Receipts)	692.3	688.6	-3.7
(GDP 대비 %)	25.8	25.8	-
지급(Payments) ¹⁾	683.0	672.8	-10.2
(GDP 대비 %)	25.4	25.2	-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9.3	15.8	6.4
(GDP 대비 %)	0.3	0.6	-
순이자지급(Net interest payments) ²⁾	12.3	12.3	0.0
(GDP 대비 %)	0.5	0.5	-
수입(Revenue)	706.9	704.5	-2.4
(GDP 대비 %)	26.3	26.4	-
비용(Expenses)	691.1	685.9	-5.2
(GDP 대비 %)	25.7	25.7	-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15.8	18.6	2.8
(GDP 대비 %)	0.6	0.7	-
순자본투자(Net capital investment)	7.8	6.7	-1.1
(GDP 대비 %)	0.3	0.2	-
재정수지(Fiscal balance)	8.1	12.0	3.9
(GDP 대비 %)	0.3	0.4	-

주: 1) 운영 활동, 비금융자산 구매, 리스부채 원금상환을 위해 지출한 현금 비용과 같음

2) 순이자지급은 이자 지급과 이자 수취의 차이와 같음

출처: 호주 정부, "Final Budget Outcome 2023-24," Table 1.2, 2024. 9. 30. 발취

82) 2023-24회계연도: 2023년 7월 ~ 2024년 6월

83) 호주 정부, 「Final Budget Outcome 2023-24」, 2024. 9. 30., <https://archive.budget.gov.au/2023-24/index.htm#fbo>, 검색일자: 2024. 10. 16.; 호주 재정부, "Labor delivers biggest ever back-to-back surpluses," 2024. 10. 4., <https://ministers.finance.gov.au/financeminister/media-release/2024/10/04/labor-delivers-biggest-ever-back-back-surpluses>, 검색일자: 2024. 10. 21.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수취(receipts)는 예상보다 37억호주달러 감소한 6,886억호주달러(GDP 대비 25.8%)를 기록
- 지급(Payments)은 예상보다 102억호주달러가 감소하여 6,728억호주달러(GDP 대비 25.2%)를 기록
- (발생주의) 재정수지(fiscal balance)는 120억호주달러(GDP 대비 0.4%) 흑자,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는 186억호주달러 흑자를 기록
 - 수입(revenue)은 예상보다 24억호주달러 감소한 7,045억호주달러(GDP 대비 26.4%)를 기록
 - 비용(expenses)은 예상보다 52억호주달러 감소한 6,859억호주달러(GDP 대비 25.7%)를 기록
- (부채) 2023-24회계연도 말 총채무(gross debt)는 9,069억호주달러(GDP 대비 34.0%), 순채무(net debt)는 4,915억호주달러(GDP 대비 18.4%)를 나타냄
 - 순자산(net worth)은 -5,316억호주달러,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은 -7,463억호주달러로 2024-25 예산 전망 대비 감소하

였는데 이는 주로 예상보다 큰 퇴직연금 지급, 기타 고용 부채⁸⁴⁾ 및 충당부채에 기인



네덜란드

-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CPB),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소득과 위험의 연대」 보고서 발표(2024. 10. 15.)⁸⁵⁾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Zorgverzekeringswet, Zvw)에서 소득 연대성과 위험 연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과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담 정도를 분석
 - (개요)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Zorgverzekeringswet, Zvw)는 모든 국민이 소득과 건강 상태에 관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연대성과 위험 연대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도
 -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재정 원천은 소득기반 기여금(Inkomensafhankelijke Bijdrage, IAB), 명목 보험료(nominale premie), 일반 세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구성⁸⁶⁾

84) Leave and other entitlements(휴가 등), Accrued salaries and wages(미지급급여 및 임금), Workers compensation claims(근로자 보상 청구), Military compensation(군인 보상) 등이 하위항목으로 포함

85)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Inkomens- en risicosolidariteit in de Zorgverzekeringswet,” 2024. 10. 15., <https://www.cpb.nl/inkomens-en-risicosolidariteit-de-zorgverzekeringswet>, 검색일자: 2024. 10. 18.

86) 건강보험의 재정은 네 가지 주요 원천에서 마련된다.

- ① 소득기반 기여금(inkomensafhankelijke bijdrage, IAB):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약 50%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기여금에서 충당되며, 이 기여금은 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주를 통해 징수된다.
- ② 명목 보험료: 명목 보험료는 건강보험의 전체 재정에서 약 29%를 차지하며, 이 보험료는 매년 모든 국민에게 개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③ 일반 세금: 일반 세금은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약 15%를 차지하며,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에서 18세 이하 아동은 명목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이들의 의료비는 정부가 일반 세금으로 충당한다.
- ④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일부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다. 현재 본인부담금은 385유로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165유로로 감소할 예정이다.

- (소득 연대성) 소득 연대성은 소득이 높은 가구가 소득이 낮은 가구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원칙
 - (소득기반 기여금 비율의 차이) 소득이 높은 가구는 절대적인 액수로 더 많은 기여금을 내지만, 소득 대비 비율로는 중위소득 가구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중위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9.7%를 건강보험료에 사용하며, 반면 상위 20% 소득 가구는 소득의 약 6.6%를 건강보험료에 사용
 - 기여금은 소득에 비례하지만, 상한선⁸⁷⁾이 존재하여 특정 소득 이상이 되면 더이상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고소득자들의 기여 비율이 제한됨
 - (소득 연대성의 문제) 2019년 기준 KI 지수⁸⁸⁾가 -0.101로 소득 연대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
- (위험 연대성) 위험 연대성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의료비 지출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칙이며, 건강이 나쁜 사람의 의료비 지출이 과하지 않도록 보호
 - (건강 상태에 따른 의료비 부담) 상위 1%의 고비용 환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9만유로의 의료비를 지출하지만, 그들이 건강보험에 부담하는 금액은 평균 6천유로에 불과함
 - 반면, 의료비 지출이 적은 하위 25%의 가구는 건강보험에 평균적으로 5천유로를 부담
 - 이는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 상태에 관계 없이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담된다는 것을 보여주어 위험 연대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 (향후 정책) 2025년 소득기반 기여금(IAB) 비율은 2024년(6.57%)보다 0.06%p 감소한 6.51%, 본인부담금은 385유로에서 165유로로 감소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소득 연대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위험 연대성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짐

<표 21> 기본 모델과 정책 변경에 대한 소득 및 위험 연대성 변화

구분	소득 연대성	위험 연대성		
		모든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기본 모델	-0.101	0.953	1.046	1.033
정책 변경				
소득기반 기여금(IAB) 조정	-0.084	0.942	1.055	1.041
본인부담금 385 → 165유로로 감소	-0.098	0.951	1.064	1.049

출처: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Inkomens- en risicosolidariteit in de Zorgverzekeringswet," 2024. 10. 15.

87) 소득 상한선 2024년 7만 1,624유로, 2025년 7만 5,860유로

88) KI 지수는 Kakwani Index(카크와니 지수)의 약자로, 소득 연대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주로 건강보험 체계에서 소득별 기여의 불평등을 나타낸다. KI 지수는 -2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값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기여의 누진성(progressivity) 또는 역진성(regressivity)을 나타낸다.

- 0에 가까운 값: 소득에 비례한 기여, 즉 모든 소득 계층이 소득에 비례해서 동일한 비율로 기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양수 값: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누진적인 재정 구조를 나타낸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비율로 부담한다.

- 음수 값: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역진적인 재정 구조를 의미한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기여하는 상황이다.



스웨덴

■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스웨덴 경제 보고서 (Swedish Economy Report September 2024)」를 발표(2024. 9. 27.)^{89), 90)}

- (경제성장률) 2024년 말부터 스웨덴 경제는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및 2025년 성장률은 각각 0.7%, 1.8%로 전망됨
 - 2024년 경제성장률의 약화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응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선택한 결과
 - 2025년에는 정부와 민간의 건설, 인프라, 국방 부문 투자 확대 및 수출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출) 2025년 수출은 유럽연합 외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성장예에 힘입어 2024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노동시장) 2024년 4분기부터 경제성장이 고용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도가 낮아 2024년 4분기 및 2025년 고용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⁹¹⁾
- (가계소비) 실질임금 상승 기대와 금리인하로

가계소비는 점차 증가하여 2025년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가계소비 증가율은 2023년 -2.3%, 2024년 0.0%, 2025년 2.4%로 예상됨
- (물가)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하락하며, 2025년까지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가 2% 이하로 유지될 전망
 -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는 에너지, 일부 금속,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이 최고점에서 하락한 것에 기인함
 - 또한 스웨덴 코로나의 강세로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에 수입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금리) 스웨덴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계획을 반영해 2025년 정책금리는 1.75%로 전망
- (재정) 일반정부 총채무는 GDP 대비 35%의 정부 채무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약 1,060억코로나의 재정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는 2024년 33%, 2025년 31.9%로 예상되며, GDP 대비 일반정부 순차입금은 2024년 -1.5%, 2025년 -0.6%로 전망

89)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IER), “Swedish Economy Report September 2024,” 2024. 9. 27., <https://www.konj.se/english/publications/swedish-economy-report/swedish-economy/2024-09-27-swedish-economy-report-september-2024.html>, 검색일자: 2024. 10. 21.

90)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는 거시경제 및 재정변수를 전망하는 스웨덴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연 4회(3월, 6월, 10월, 11월) 스웨덴 경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91) 기업의 기존 인력으로 일정 수준의 생산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률 증가는 제한적일 것을 의미

<표 22> 스웨덴 경제보고서 및 2025년 스웨덴 예산안의 주요 경제 변수 전망치 비교

(단위: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GDP 성장률	-0.2	0.7	0.8	1.8	2.5	3.0	3.2	2.1	2.4
가계소비 증가율	-2.3	0.0	0.3	2.4	2.9	3.9	4.1	2.5	3.1
정부소비 증가율	1.0	1.2	0.7	1.4	1.3	1.3	0.8	1.2	0.0
수출 증가율	3.3	1.7	2.2	2.4	2.8	3.2	3.8	2.8	3.7
수입 증가율	-1.0	0.5	0.4	2.6	2.8	4.2	4.0	3.6	3.7
소비자 물가지수(CPI)	8.5	2.8	2.8	-0.3	0.9	1.5	1.4	2.5	2.1
고정금리 소비자 물가지수(CPIF) ⁹⁾	6.0	1.8	1.9	1.4	1.7	1.8	2.0	2.0	2.0
실업률(15~74세)	7.7	8.3	8.3	8.2	8.3	7.8	7.9	7.4	7.6
일반정부 순차입금(GDP 대비 %)	-0.6	-1.5	-1.7	-0.6	-1.3	0.2	-0.6	0.4	0.4
일반정부 구조적재정수지(잠재 GDP 대비 %)	0.2	-0.2	-0.2	0.7	-0.4	1.1	-0.1	1.8	0.6
일반정부 총채무(GDP 대비 %)	31.7	33.0	33.0	31.9	33.0	30.2	32.5	28.0	31.4

주: 1.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NIER) 2024년 9월 스웨덴 경제보고서 전망치와 2025년 스웨덴 예산안의 주요 경제변수 전망치(이탈릭체)를 비교

2. 2025년 스웨덴 예산안의 일반정부 순차입 및 일반정부 구조적재정수지와 총부채는 2023년 8월 5일 및 2023년 8월 10일까지의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함

1) 고정금리를 적용한 소비자 물가지수

출처: 스웨덴 재무부 홈페이지,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forecast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ministry-of-finance-economic-forecasts/>의 Key indicators forecast 19 September 202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24. 10. 21.;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Swedish Economy Report September 2024," <https://www.konj.se/english/publications/swedish-economy-report/swedish-economy/2024-09-27-swedish-economy-report-september-2024.html>의 Table A2, A6, A12, A18, A1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24. 10. 21.

- 2024년 일반정부 기준 순차입금은 GDP 대비 -1.5%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 침체와 스웨덴 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250억크로나 재정지원에 따른 영향

■ 스웨덴 외교부, 레바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8,350만크로나 증액 발표(2024. 10. 9.)⁹²⁾

- 2024년 스웨덴은 레바논에 총 1억 5,830만크

로나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

-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8,350만크로나의 추가 지원 패키지는 UN 난민기구, 레바논 적십자, 세이브더칠드런, UN 레바논 인도적 기금에 분배될 예정

92) 스웨덴 정부, 국방부, "Sweden increasing humanitarian support to Lebanon by SEK 83.5 million," 2024. 10. 9.,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4/10/the-military-escalation-in-lebanon-has-had-major-humanitarian-consequences.-sweden-is-therefore-increasing-its-humanitarian-support-to-lebanon-by-a-total-of-sek-83.5-million.-the-support-will-be-divided-between-the-un-refugee-agency-unhcr-the-lebanese>, 검색일자: 2024. 10. 23.

재정포럼

2024년 11월호 통권 제341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이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월간 재정포럼

2024년 11월 15일 발행 / 통권 제34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온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